

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22-27

디지털 방송콘텐츠 아카이브의 단계적
구축방안 및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Plan and Operational
Guidelines of Digital Broadcasting Content Archive

강신규 · 최효진 · 이지연 · 김의영

2022. 12.

연구기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이 보고서는 2022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
융합 정책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 견해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디지털 방송콘텐츠 아카이브의 단계적 구축 방안 및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결과로 제출합니다.

2022년 12월

연구기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총괄책임자: 강신규(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최효진(새공공문화유산정책포럼 상임이사)

이지연(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장)

김의영(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차장)

참여연구원: 이경미(서강대학교 박사과정)

김수영(씨네21 기자)

정소현(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

이규범(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과장)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2
제2절 연구방법	4
1. 문헌분석	4
2. 방송사 아카이브 실사	5
3. 전문가 연구반 운영	9
제2장 국내외 아카이브 현황	11
제1절 아카이브 개요	11
1. 방송콘텐츠 공공 아카이브의 개념과 특징	11
2. 방송콘텐츠 공공 아카이브의 범주와 기대효과	23
제2절 국내현황	28
1. 국내 방송사업자들의 아카이브 구축 현황	29
2. 주요 방송사업자들의 아카이브 특징과 문제점	38
3. 방송 외 국내 공공 아카이브 현황	38
4. 소결	57
제3절 해외현황	59
1. 프랑스	59
2. 영국	75
3. 미국	81
4. 호주	86
5. 소결	98

제3장 방송사 아카이브 실시결과	100
제1절 방송사 아카이브 관리 공통 특징	100
1. 아카이브 관리 조직 및 인력	100
2. 아카이브 관리 영역별 이슈	101
3. 소장 콘텐츠 관리 현황	109
4. 아카이브 외부 개방	113
5. 외부 콘텐츠 활용	115
제2절 방송사 아카이브 공적 지원 방향	117
1. 아날로그 매체 디지털화 지원	117
2. 디지털아카이브 운영 지원	119
3. 장기보존 포맷에 저장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지원	119
4. 이중화, 재난복구(Disaster Recovery, DR)시스템 구축	120
5. 아카이브 인프라 공유	120
6. 아카이브 운영 정책 수립 및 활용 컨설팅	121
7. 지역 공공영상 데이터 관리 거점 운영	122
8. 공영 방송콘텐츠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의견	122
제4장 아카이브의 단계적 구축방안 및 운영 가이드라인	128
제1절 구축 및 운영방향	128
1. 목표와 전제사항	128
2. 아카이빙 방식	129
제2절 운영 가이드라인	133
1. 복합문화공간(라키비움) 조성	133
2. 인프라 구축·운영	134
3. 방송콘텐츠 수집	138
4. 방송콘텐츠 복원·보존	139
5. 실시간 방송콘텐츠 수집	140
6. 데이터 관리	142

제3절 단계적 구축방안	145
1. 1단계: 기본 인프라 구축	145
2. 2단계: 보존대상 확대	146
3. 3단계: 본격 운영	147
제4절 법제도 개정방향	151
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51
2.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53
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54
4. 소결	156
제5장 결론	158
제1절 연구내용의 요약 및 제언	158
1. 연구내용 요약	158
2. 제언	160
제2절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162
부록 : 방송사업자 아카이브 현황조사용 사전질문지	164
참고문헌	167

표 목 차

<표 1-1> 지역·중소방송사 아카이브 현황 조사대상(지역별 분포)	7
<표 1-2> 지역·중소방송사 아카이브 현황 조사내용	8
<표 1-3> 전문가 연구반 위원정보	9
<표 2-1>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아카이브’ 와 학술적 의미의 ‘아카이브’	11
<표 2-2> ‘영상문화유산’ 관련 연구와 ‘공공’ 의 개념	13
<표 2-3> 공공 아카이브와 기록관·도서관·박물관 비교	15
<표 2-4> 공공 아카이브의 ‘접근성 보장’ 역할 세분화	18
<표 2-5> 공공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요건	22
<표 2-6> 방송사의 주요 미디어 관리 시스템	29
<표 2-7> 국립국악원 ‘국악 아카이브’	39
<표 2-8> 국립중앙극장 ‘별별 스테이지’	40
<표 2-9> 국립민속박물관 ‘민속 아카이브’	41
<표 2-10>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42
<표 2-11> 국립중앙도서관 ‘OASIS(Online Archiving & Searching Internet Sources)’	43
<표 2-12> 국립중앙도서관 ‘코리아메모리’	44
<표 2-13> 국립한글박물관 ‘디지털한글박물관’	45
<표 2-14>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근현대사 아카이브’	46
<표 2-15> 한국정책방송원 ‘e영상역사관’	47
<표 2-16> 국립극단 ‘국립극단 아카이브’	48
<표 2-17>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아시아문화 아카이브’	49
<표 2-18>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학 다국어 아카이브’	50
<표 2-1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예술기록원’	51
<표 2-20> 아르코예술기록원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	52
<표 2-21>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아리랑 아카이브’	53
<표 2-22> 한국영상자료원 ‘KMDb’	54
<표 2-23> 대통령기록관	55
<표 2-2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56

<표 2-25> 프랑스 방송통신 콘텐츠 공공 활용 관련 법	60
<표 2-26> 프랑스 『문화유산법』 방송납본제 관련 주요 내용	60
<표 2-27> 프랑스 『문화유산법』 웹 납본제 관련 주요 내용	61
<표 2-28> 프랑스 『커뮤니케이션법』 관련 주요 내용	61
<표 2-29> 프랑스 『지적재산법』 저작권 제한 관련 주요 내용	62
<표 2-30> AAPB 콘텐츠 카테고리	85
<표 2-31> 호주 방송통신 콘텐츠 공공 활용 관련 법	86
<표 2-32> 호주 『NFSA법』 주요 내용	87
<표 2-33> 호주 『1968년 『저작권법』』 도서관 및 기록보존소 관련 면책 조항 ·	87
<표 2-34> 호주 『방송서비스법』 목표	88
<표 2-35> 호주 NFSA 컬렉션	89
<표 2-36> NFSA 수집기준이 되는 큐레이션 가치(Curatorial Values)	92
<표 4-1> 방송콘텐츠 아카이브의 아카이빙 방식	129
<표 4-2> 복합문화공간(라키비움)의 세부 기능	133
<표 4-3> 실시간 방송콘텐츠 수집방식	141
<표 4-4> 데이터의 유형	143

그림 목 차

[그림 1-1] 유매틱(3/4인치)테이프(강원영동MBC) 및 1인치테이프(부산MBC)	6
[그림 2-1] ‘공공’ 아카이브의 기능	17
[그림 2-2] 공공 아카이브의 관리 절차와 저작권 보호 역할	21
[그림 2-3] KBS <다큐인사이트- 오월의 기록 편>(2021) 예고 영상 캡처 화면	32
[그림 2-4] MBC 아카이브 저작권 판매 절차	34
[그림 2-5] KTV 개방공유포털사이트 ‘니누리’ 미디어 영상 검색 화면	36
[그림 2-6] INA 수집량 및 활용 범위(2020년 말 기준)	64
[그림 2-7] 2019년 기준 INA 자원 구성	65
[그림 2-8] INA 자체 수익 추이(2019-2020)	66
[그림 2-9] INA 공공서비스 구성과 이용자	67
[그림 2-10] 연구자 대상 열람도구 ‘메디아스코프’ 화면	68
[그림 2-11] INA의 ‘이나미디어프로’ 개별콘텐츠 열람 화면	69
[그림 2-12] INA ‘미디어클립’ 개별 콘텐츠 열람 화면	70
[그림 2-13] INA 선불제 이용권 판매 상품	71
[그림 2-14] INA ‘마들렌(Madelen)’ 서비스 화면	72
[그림 2-15] INA ‘룸니’ 플랫폼 개발 참여 주체	73
[그림 2-16] INA ‘룸니’ 개별 콘텐츠 열람 인터페이스	73
[그림 2-17] INA ‘룸니’ 콘텐츠 클리핑 및 발췌영상 만들기 기능	74
[그림 2-18] BBC 아카이브 인덱스 소개 화면	79
[그림 2-19] BBC 아카이브 소장 자료	80
[그림 2-20] NFSA 2020-2021 연간예산	90
[그림 2-21] NFSA-방송사 간 공조 체계	91
[그림 2-22] NFSA 소장자료 검색화면(키워드 검색)	94
[그림 2-23] NFSA 교육용콘텐츠 개별 콘텐츠 열람 화면 기본정보	95
[그림 2-24] NFSA 이용료 및 라이선스비 요율표	96
[그림 2-25] NFSA NewsCaf 프로젝트 참여 사업자	97
[그림 3-1] 전주MBC 테이프자료 관리	101

[그림 3-2] 강원영동MBC테이프 자료서가	101
[그림 3-3] 광주MBC 테이프자료 검색DB	103
[그림 3-4] KBC광주방송 CMS시스템 내 아이템 단위 기술 현황	105
[그림 3-5] 소니 사 ODA디스크 제조 중단 알림 공문	107
[그림 3-6] 경남MBC ODA디스크	108
[그림 3-7] KBC광주방송 LTO테이프	108
[그림 3-8] 춘천MBC 아카이브 검색대	110
[그림 3-9] 춘천MBC 아카이브 검색 화면	110
[그림 3-10] 춘천MBC 아카이브 사용 가이드	110
[그림 3-11] 춘천MBC 보도 및 제작 부문 ODA디스크	110
[그림 3-12] 부산MBC 16mm필름	112
[그림 3-13] 부산MBC 1인치헬리컬비디오	112
[그림 3-14] 제주MBC 슬라이드 필름 및 16mm필름 자료	113
[그림 3-15] 강원영동MBC 유튜브 채널 '옛날티브이' 재생목록	115
[그림 3-16] KTV <나누리> 포털 개별 아이템 단위 열람 화면	116
[그림 3-17] 국내 방송사(중소지역방송사)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이슈 및 해결방안	117
[그림 3-18] 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절차	121
[그림 3-19] 디지털아카이브 전환 프로세스 1 - 사전조사	125
[그림 3-20] 디지털아카이브 전환 프로세스 2 - 시스템 구축	126
[그림 3-21] 디지털아카이브 전환 프로세스 3 - 테이프 자료 아카이브 구축	127
[그림 4-1] 방송콘텐츠 아카이브 흐름도	131
[그림 4-2] 디지털 방송콘텐츠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흐름: 1단계	135
[그림 4-3] 디지털 방송콘텐츠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흐름: 2단계	135
[그림 4-4] 디지털 방송콘텐츠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흐름: 3단계	136
[그림 4-5] 방송콘텐츠 아카이브 구축 로드맵	149

요 약 문

1. 제 목

디지털 방송콘텐츠 아카이브의 단계적 구축방안 및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2. 연구목적 및 필요성

이 연구는 방송콘텐츠의 체계적 수집·관리를 위한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의 의미를 도출하고, 대중뿐 아니라 관련 산업주체에게도 도움이 되는 아카이브 운영모델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려는 목적에 의거 기획되었다.

방송콘텐츠는 역사적 기록과 기억의 집합체이자 창작자원으로서 문화·사회적 가치와, 관련사업자 채원의 근간이자 창작자원으로서 경제적 가치를 함께 지닌다. 때문에 한 사회의 문화유산으로서 방송콘텐츠를 수집·보존하고 다음세대에 전승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전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그동안 방송콘텐츠 아카이브 구축·운영에 대한 고민은 대부분 개별 방송사 차원에서 이뤄져왔다. 방송사들이 자체적으로 내부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지만, 방송사별 편차가 심하고 외부 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아 체계성·활용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유사시 복구시스템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중소 방송사는 비용 문제로 아카이빙 자체를 하지 못하는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미디어환경 변화와 함께 방송산업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공적 방송콘텐츠 아카이브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방송한류 확대와 함께 한국 방송콘텐츠 원형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점증함에, 과거와 현재의 방송콘텐츠를 찾기 위한 대표적인 경로가 유튜브(YouTube)라는 사실은 아카이브의 중요성과 달리 관련 현실이 어떠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는 글로벌화·상업화되고 있는 미디어환경 하에서 공공재로서 국내 방송콘텐츠가 가진 가치를 보존하고 제고하기 위한 방안마련의 필요로 연결된다. 우리 사회의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갖는 방송콘텐츠의 수집·보존과 활용을 촉진할 공영 아카이브 논의를 재활성화하는 일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그리고 지금 시점

에서는 단순히 방송콘텐츠를 모아 보관하는 것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 지능정보사회의 발전과 함께 인공지능, 머신러닝,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신개념 아카이브 구축·운영방안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개별 방송사가 보유한 방송콘텐츠를 한 데 모으고 체계성을 확보해, 대중과 관련 산업주체들이 폭넓게 활용 가능한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요청된다. ‘저곳에 전시물이 존재하는 박물관’이 아니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접속해 보존된 방송콘텐츠를 체험하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플랫폼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방송사의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보존하는 재난대비 시스템 기능과, 보존환경이 열악한 중소방송사의 콘텐츠를 위탁저장하는 기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은 물론이다. 공영 아카이브 구축방안 논의는, 방송콘텐츠의 공공성과 문화·사회적 가치뿐 아니라, 나아가 한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 관련 산업주체들이 저렴하게 활용 가능한 자료들을 제공함으로써 콘텐츠의 재생산을 지원하고 나아가 방송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이 연구는 다음의 구성을 취한다. 첫째, 연구방법을 설정한다. 둘째, 두 파트로 구성될 관련 현황분석의 첫 파트로, 국내 아카이브 구축 및 관련 입법사례를 다룬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한국에서 어떻게 아카이브가 구축돼 왔는지 살피고, 미래 지향적인 방송콘텐츠 아카이브 구축·운영을 위한 단초를 마련한다. 셋째, 현황분석의 두 번째 파트로, 해외 주요국의 사례들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프랑스, 영국, 미국, 호주 현황을 경유해 한국형 아카이브 구축·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추출한다. 넷째, 방송사 아카이브 실사결과를 분석한다. 한국 방송사 아카이브 관리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은 무엇인지, 각사별 이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내용을 토대로 방송사 아카이브의 공적 지원방향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아카이브의 단계적 구축방안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논의한다. 크게 세 단계로 나뉘어 아카이브를 어떻게 구축·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인프라 구축·운영, 방송콘텐츠 수집, 데이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4. 연구내용 및 결과

1) 국내외 관련 현황분석 결과

(1) 국내현황

일반적으로 공공 아카이브는 ① 입수, ② 관리 및 보존, 그리고 ③ 접근성 보장(공공활용)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 및 제고하는 것과 저작권자들의 저작권 보호 책임 사이의 양대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현재 국내에는 부재한 방송콘텐츠 관련 공공 아카이브는 이러한 일반적인 공공 아카이브가 가져야 할 역할과 기능, 책임의 요건을 전제로 하여 설립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공공 아카이브를 설립함으로써 얻는 기대효과는 창작 활성화 차원, 역사 문화적 차원, 대국민 문화 향유권 제고 차원에서 살필 수 있다.

또한 국내 방송콘텐츠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주요 지상파 방송사(KBS, MBC, SBS, EBS)들과 KTV의 개방 공유 포털 사업, 그리고 중소방송사 및 지역 방송사들의 현황을 검토했다. 주요 지상파 방송사들은 2000년대 중반 이후 HD 제작시스템 도입을 하면서 디지털아카이브를 구축했고 현재까지도 그 운영 및 활용을 지속해오고 있다. 그러나 해당 시스템은 대부분 사내 활용 형태로 제한된 수준의 운영 방식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각 사에서 개설한 유튜브 채널에 해당 자료를 게시함으로써 광고 수입 등의 재원으로 얻거나, 구독 서비스(EBS)나 저작권 사업(MBC), IP 판매 서비스(SBS) 등의 형태로 각 사의 제작 재원을 마련하는 데에 아카이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공공성’ 과 비교했을 때 자사 아카이브를 외부에 공개하고 2차적 활용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례가 드물다 하겠다.

한편, 이와 같은 지상파 방송사의 제한적인 외부개방에 비해 KTV의 ‘KTV 나누리포털’ 구축 사례는 공공 아카이브 구축에 있어 참고할만한 지점이 많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20년 7월 출범한 웹사이트 ‘KTV 나누리포털’ 은 KTV의 콘텐츠들을 미디어 사업자와 정부 공공 기관 등 대략 100여 개에 가까운 기관들이 ‘기관 ID’ 를 발급받아서 자유롭게 자료를 내려받고 이를 제작에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미디어 사업자(지역 MBC 회원사, 지역민방협회 회원사, 지역신문협회 회원사 등) 또한 자사 콘텐츠를 게시할 수 있지만,

해당 콘텐츠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저작권 이슈로 인해 각 사업자들간 콘텐츠에 대한 상호 교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2) 해외현황

프랑스의 경우, 방송·영상산업에 대한 의무제출제도를 운영 중인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인데, 1992년 ‘방송납본제’를 도입, 199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의 방송영상 자료 납본 기관인 국립시청각기구(INA)는 방송 및 영상 콘텐츠 관련 국립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기관으로서 세계 여러 국가들에 참고할만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프랑스 사례에서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법적 토대가 강력한 수준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점으로 꼽을 수 있다. 방송납본제를 위한 근거 외에도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나아가 공공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국내 공공 방송 아카이브 구축에 있어 법제 차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영국은 국가기록원(TNA)을 설립해 공공 기록물에 대한 아카이브 규제 체계를 구축, 운영할 정도로 국가적으로 기록물 수집, 보관, 활용 등에 관심이 높은 편이다. 특히 미디어의 공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공영 및 민영 방송사들의 영상물을 아카이브화하는데 영국영화연구소(BFI)가 힘을 싣고 있다. 영국 사례에서 주목해볼 만한 점은 방송 영상 콘텐츠에 대해 영국 정부가 갖고 있는 관점이다. 영국은 방송 영상 콘텐츠에 대한 공익적 가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그러한 가치, 또는 철학에 기반해 (특히 국영방송사를 중심으로)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은 방송통신 콘텐츠의 수집과 보관과 관련해 정부가 수행 주체로 전면 위치하기 보다는 의회도서관이 이를 수행하고 있고, 납본보다는 기획 수집의 형태로 이뤄지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방송통신 콘텐츠의 경우 방송사들의 사적재산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기록물에 대한 수집 범위 및 방식에 있어 제공자들의 자율적 판단에 비교적 많이 의존하고 있는 편이다. 국내 아카이브 구축 관련 공적 논의가 기존 법제와의 충돌 문제, 그리고 방송 사업자들간의 의견 불일치 등으로 인해 다소간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유연한 방식으로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 또한 참고할만한 지점이 존재한다.

끝으로 호주의 국립영상음성아카이브(NFSA)는 연방 국가기록원(NAA)과 함께 호주 내 시청각 분야의 기록관리 정책기구로서 기능하고 있다. 해당 기구는 각국의 공공 방송통신 콘텐츠(영화, 방송영상, 멀티미디어, 구술채록 녹음자료 등) 영구보존 및 대국민 접근성 보장과 함께, 관련 정책 총괄 역할을 함으로써 공공 아카이브 주요 역할을 수행 중이다. 호주의 사례에서는 아카이브 구축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간 신뢰가 매우 두텁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호주는 콘텐츠에 대한 의무 제출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콘텐츠를 선별해 적극적으로 기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정부의 제작지원사업이 아카이브 수집과 연계되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을 통해 제작 지원을 받고 있는 콘텐츠들을 이 아카이브 시스템과 함께 연계하여 수집, 보존, 나아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2) 방송사 아카이브 실사결과

지역방송사 17개 아카이브를 실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카이브 관리 조직 및 인력 차원이다. 방문한 모든 지역 방송사에서 아카이브 전담 인력 및 조직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았다. 대부분 경영 또는 기술 관련 부서에서 자료관리를 겸직하는 체제이나, 자료관리보다는 주업무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보니 자료관리는 방치되고 있다. 문제적 상황임을 각사에서 인식하고 있지만 회사에서 전담인력 배치를 위해 별도 재원을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다.

둘째, 아카이브 관리 영역별 이슈다. 매체 자료관리에 있어서는 자료 방치, SD/HD 방송 테이프 VCR 장비 부족, 테이프 자료 목록 및 DB 미비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디지털 제작시스템(NPS) 내 데이터 관리의 경우, 데이터 관리 정책 부재, 메타데이터 부실 및 관리 부재, 백업 및 이중화 부재 등이 문제로 꼽혔다.

셋째, 소장 콘텐츠 관리와 관련해서는, 아날로그 매체 및 디지털 데이터 혼재, 아날로그 매체 폐기 위기, 통계자료 미비 등이 발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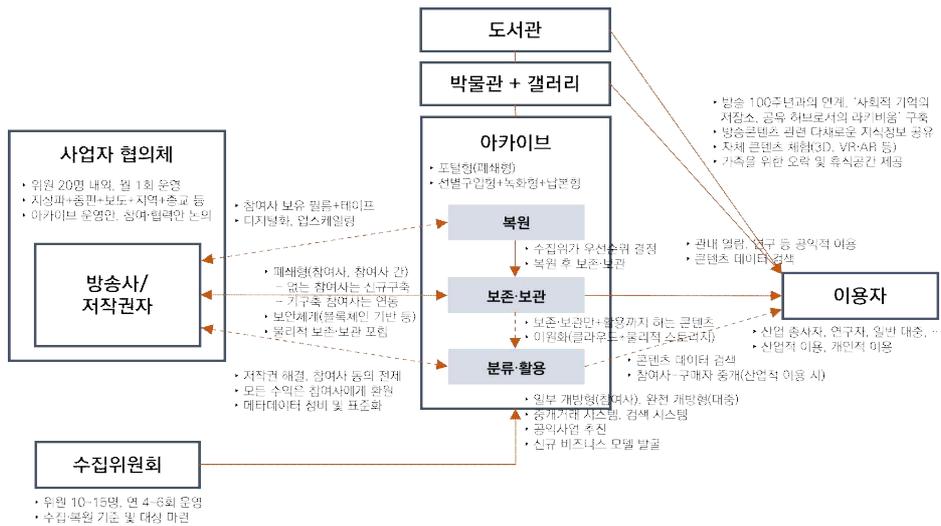
넷째, 아카이브 외부 개방에 있어서는 방송사에 따라 크게 콘텐츠 판매 내규에 따른 판매, 자사 및 플랫폼 활용 공개의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향후 방송사 아카이브를 위한 공적 지원 방향으로는, ① 아날로그 매체 디지털화 지원, ② 디지털아카이브 운영 지원, ③ 장기보존 포맷에 저장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지원, ④ 이중화, 재난복구 시스템 구축, ⑤ 아카이브 인프라 공유, ⑥ 아카이브 정책 수립 및 활용 컨설팅, ⑦ 지역 공공영상 데이터 관리 거점 운영 등을 꼽을 수 있다.

3) 아카이브의 단계적 구축방안 및 운영 가이드라인

(1) 구축 및 운영방향

구축방향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방송콘텐츠 아카이브는 복합문화공간인 라키비움(Larchiveum)이나 글램(GLAM) 형태로 구축한다. 둘째, 수집·보존이 우선이고, 분류·활용은 원하는 사업자에 한해 나중에 행한다. 셋째, 콘텐츠 제공주체, 관련 산업종사자, 대중 모두에게 도움이 가는 방식으로 구축한다.



구축을 위해 전제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 사업자들에게 되도록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수집한다. 수집 제반 비용을 최대한 정부가 지원하고, 추후 법·제도 마련을 통해 수집방식 등을 확정한다. 둘째, 사업자 동의 콘텐츠들에 한해서만 활용한다. 셋째,

사업자 니즈에 맞춘 접근방식을 견지한다. 보존·보관, 복원, 활용 등 사업자별 니즈를 충족시키는 복합형 아카이브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넷째, 앞서 라키비움과 글랩 논의를 했지만, 디지털과 아날로그 인프라가 함께하는 아카이브를 구축한다.

아카이빙 방식은 기본적으로 포털형이나, 라키비움이나 글랩 모델을 취한다고 했을 때 나머지 방식도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이상적이다.

(2) 운영 가이드라인

첫째, 복합문화공간(라키비움) 조성이다. 최근 아카이브 패러다임이 자료의 단순 수집·보관공간에서 복합문화공간으로 이동해감에 따라, 라키비움이나 글랩에 대한 관련주체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가 주목하는 방송콘텐츠 아카이브가 복합문화공간을 지향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라키비움은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기능을 통합하는 수집기관을 가리킨다.

둘째, 인프라 구축·운영이다.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 기능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을 지향하는 아카이브 센터의 인프라는 물리적 인프라(시설·공간·장비 등)와 디지털 인프라(하드웨어·소프트웨어) 모두를 갖춰야 한다. 물론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도 하드웨어를 보관하기 위한 공간이 당연히 필요하다.

셋째, 방송콘텐츠 수집이다. ‘방송자료수집위원회(가칭)’가 독립적으로 각 시대 및 주제에 걸맞는 대표적 콘텐츠를 다양하게 수집한다. 수집시기와 기준 등은 별도로 정한다.

넷째, 방송콘텐츠 복원·보존이다. 기존 방송콘텐츠의 복원 및 화질개선은 아주 큰 과제다. 방송사 소장 아날로그 방송콘텐츠의 디지털 전환 및 업스케일링 후 아카이브 시스템에 보존·축적하는 것이 세부내용이다.

다섯째, 실시간 방송콘텐츠 수집이다. 기 저장된 방송콘텐츠 외에 아카이빙 협약 후 생산되는 콘텐츠의 실시간 자료수집 방식에 대해서도 결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전용회선 통한 연계 > 에어 캐치 > 재송신 방송분 녹화 순으로 한다. 다만 전용회선 통한 연계를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면서, 보도프로그램 등에 한해 에어 캐치나 재송신 방송분 녹화를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데이터 관리다. 방송사별로 보유하고 있는 메타데이터 공유가 여의치 않을 수

있으므로, 최근 방송환경과 각 방송사 상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방송콘텐츠 아카이브가
고유의 메타데이터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

(3) 단계별 구축방안

구분		기본 인프라 구축(1단계)
방식		포털형(폐쇄형)
		기본 인프라 구축과 복원에 초점
인프라 (추가분만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원·저장·관리·데이터 입력시설: 한국광고문화회관 복원장비 - 필름: 필름 검수테이블(리와인더), 필름스캐너, 편집장비, 색보정/마스터링 장비 - 테이프: 디지털 변환장비 보존자료 저장·관리 솔루션(폐쇄형)
주 대상사업자		지역방송사 + 기타 희망사업자 * K, E의 경우 기공개자료 일부
수집	자료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자 제공 방송콘텐츠 일부(기공개자료 등) 복원 지원 콘텐츠 기금 제작지원 콘텐츠
	협의체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협의체 운영: 지상파+종편+보도+지역 등 위원 20명 내외, 월 1회 운영
	수집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 10-15명, 연 4-6회 운영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제도 정비: 수집·보존·활용안, 저작권 등 수집자료 열람·검색서비스 구축방안
복원 / 보존	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지역)사 디지털화를 위한 별도계획 수립·추진 수집위가 우선순위 결정
	콘텐츠 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자 제공 콘텐츠 저장 보안 및 이원화 대책 마련
분류 / 활용	메타데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메타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입력
	중개거래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개거래 시스템(폐쇄형) 구현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자료 정보체계(메타데이터) 표준화 연구

구분		보존대상 확대(2단계)
방식		복합형: 포털형 + 선별구입형 + (녹화형)
		인프라 확장, 복원 및 수집대상 확대
인프라 (추가분만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장·관리시설 확대 저장·관리장비: 서버, 스토리지 + 녹화시스템 등 갤러리, 박물관, 기타 문화시설: 한국광고문화회관
주 대상사업자		기존 + 보도PP + 기타 희망사업자
수집	자료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자 제공 방송콘텐츠 일부(확대) 복원 지원 콘텐츠(계속) 기금 지원 제작콘텐츠(계속)
	협의체 운영	1단계와 동일
	수집위 운영	1단계와 동일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제도 정비(계속)
복원	복원	1단계와 동일

/ 보존	콘텐츠 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사 제공 콘텐츠 저장(확대) · (녹화형 채택시) 참여사 콘텐츠 실시간 수집 · 저장
분류 / 활용	메타데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타데이터 입력(확대)
	중개거래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개거래 시스템(일부 개방형) 구현 · 관내 열람, 연구 등 공익적 이용 허용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자료 정보체계 개선방안 연구

구분		본격 운영(3단계)
방식		복합형: 포털형 + 선별구입형 + (녹화형) + 납본형
		복원 및 수집대상 확대, 제도 안정화, 활용 시작
인프라 (추가분만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장 · 관리시설 확대 · 저장 · 관리장비 확대, 유지보수 · 문화시설 고도화
주 대상사업자		기존 + KBS, EBS + 종편 + 기타 희망사업자 + (저작권자)
수집	자료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사 제공 방송콘텐츠 대부분(납본) · 복원 지원 콘텐츠(계속) · 기금 지원 제작콘텐츠(계속)
	협업체 운영	1, 2단계와 동일
	수집위 운영	1, 2단계와 동일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 제도 정비(계속) · 운영성과 및 발전방안 연구
복원 / 보존	복원	1, 2단계와 동일
	콘텐츠 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사 제공 콘텐츠 저장(확대) · 참여사 콘텐츠 실시간 수집 · 저장(확대)
분류 / 활용	메타데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타데이터 입력 · 메타데이터 활용 신규서비스 개발
	중개거래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 소개 및 방송사에 구매자 정보 중개 · 관내 열람, 연구 등 공익적 이용 허용(계속)
	연구	.

5. 정책적 활용내용

이 연구는 두 차원에서 정책적 활용가치가 있다.

첫째, 실사에 기반해 국내 방송사 아카이브의 현재와 한계를 드러내고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발전적인 아카이브 구축방향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기존 아카이브 논의의 외연을 확장함은 물론이고, 향후 본격적이면서도 실질적인 공영 방송콘텐츠 아카이브 기획 ·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기초자료로 기능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둘째, 정부 차원에서 방송콘텐츠 아카이브 구축 ·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단계적 방안, 그리고 고려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방송사 아카이브에 대한 현실 직시를 바탕으로,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과 의미, 구축 · 운영방향에 대해 사업자의 목소리를 청

취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아카이브를 향한 다양한 사업자들의 니즈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아카이브 상을 제시해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논의를 진행했다.

6. 기대효과

공영 방송콘텐츠 아카이브 구축·운영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들의 접근과 그에 따른 참여가 강조되는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공공성을 구체화하고, 더 나아가서 디지털 공유지를 형성할 수 있다.

둘째, 다양한 성격의 이용자 집단들 중에 특히 영상창작자들을 대상으로 제작비 절감을 통한 창작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

셋째, 방송산업 영역에서의 가치를 넘어 우리 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함으로써 이를 다음 세대에 전승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넷째, 재난 및 국가 주요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방송콘텐츠 백업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

다섯째, 공공 아카이브에 다양한 방송사업자 및 미디어 주체들이 참여했을 때, 참여 주체들의 콘텐츠 부가가치는 더욱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그리고 궁극적으로 공공 아카이브가 추구하는 최종 목표는 이 공공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을 통해 대국민 문화복지의 수준을 상승을 이끄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시민들이 공공 아카이브를 통해 오늘날 매일 제작되고 방영되고 있는 방송콘텐츠를 좀 더 쉽고 편하게 시청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확대하는 것이다.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1. 연구배경

방송콘텐츠는 역사적 기록과 기억의 집합체이자 창작자원으로서 문화·사회적 가치와, 관련사업자 재원의 근간이자 창작자원으로서 경제적 가치를 함께 지닌다(정희경·김희경·최효진, 2021; 정희경·유영식·박춘원·최효진, 2019a, 2019b). 이에 따라, 한 사회의 문화유산으로서 방송콘텐츠를 수집·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전승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전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최효진, 2017. 12). 이에 프랑스, 영국, 미국, 호주 등의 국가가 오래전부터 방송콘텐츠가 지닌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관련 법제도를 만들고, 정부나 공공 차원에서 방송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존·관리·활용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강신규, 2020; 정희경·김희경·최효진, 2021).

그럼에도 한국에서 그동안 방송콘텐츠 아카이브 구축·운영에 대한 고민은 대부분 개별 방송사 차원에서 이뤄져 왔다(최효진, 2018. 8). 방송사들이 자체적으로 내부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지만, 방송사별 편차가 심하고 외부 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아 체계성·활용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그나마도 역사적·사회적 가치나 시청자 권익 등 공공적 이유보다 사업적 이유에 따라 보존을 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뒤에서 상세히 살펴보겠지만, 대형방송사조차 유사시 복구시스템이 전무하고, 중소방송사는 비용 문제로 아카이빙 자체를 하지 못하는 취약한 상황이다(정희경·유영식·박춘원·최효진, 2019b). 일부 기관들이 방송사들과 협약을 맺고 선별적인 수집과 공공서비스 제공을 진행 중이나 대부분 수집·관리에 초점을 맞출 뿐, 현재까지 방송된 콘텐츠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보존·활용을 담당하는 기구 역시 부재하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미디어환경 변화와 함께 방송산업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공적 방송콘텐츠 아카이브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최효진·박주연, 2020). 특히 방송한류 확대와 함께 한국 방송콘텐츠 원형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점증함에도, 과거와 현재의

방송콘텐츠를 찾기 위한 대표적인 경로가 유튜브(YouTube)라는 사실은 아카이브의 중요성과 달리 관련 현실이 어떠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는 글로벌화·상업화되고 있는 미디어환경 하에서 공공재로서 국내 방송콘텐츠가 가진 가치를 보존하고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로 연결된다. 우리 사회의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갖는 방송콘텐츠의 수집·보존과 활용을 촉진할 공영 아카이브 논의를 재활성화하는 일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단순히 방송콘텐츠를 모아 보관하는 것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 지능정보사회의 발전과 함께 인공지능, 머신러닝,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신개념 아카이브 구축·운영방안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개별 방송사가 보유한 방송콘텐츠를 한 곳에 모으고 체계성을 확보해, 대중과 관련 산업주체들이 폭넓게 활용 가능한 현실적인 방안 마련이 요청된다. ‘저곳에 전시물이 존재하는 박물관’이 아니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접속해 보존된 방송콘텐츠를 체험하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플랫폼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방송사의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보존하는 재난대비 시스템 기능과, 보존환경이 열악한 중소방송사의 콘텐츠를 위탁저장하는 기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은 물론이다. 공영 아카이브 구축방안 논의는, 방송콘텐츠의 공공성과 문화·사회적 가치뿐 아니라, 나아가 한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 관련 산업주체들이 저렴하게 활용 가능한 자료들을 제공함으로써 콘텐츠의 재생산을 지원하고 나아가 방송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2. 연구목적

방송콘텐츠의 체계적 수집·관리를 위한 아카이브 구축의 의미를 도출하고, 대중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주체에게도 도움이 되는 아카이브 운영모델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방송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방송콘텐츠 자료가 체계적으로 아카이빙 되어 있으면서, 단순히 보관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중과 관련 산업종사자에게 개방되고, 나아가 새로운 사업모델과의 연계를 통해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게 한다. 이러한 디지털 방송콘텐츠 아카이브는 방송콘텐츠의 사회·문화·경제적 가치를 제고하고 확산하는, 유의미한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목적 달성을 위해 이 연구는 이후로 다음의 구성을 취한다. 첫째, 연구방법을 설정한다. 둘째, 두 파트로 구성될 관련 현황분석의 첫 파트로, 국내 아카이브 구축 및 관련 입법 사례를 다룬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한국에서 어떻게 아카이브가 구축돼 왔는지 살피고, 미래지향적인 방송콘텐츠 아카이브 구축·운영을 위한 단초를 마련한다. 셋째, 현황분석의 두 번째 파트로, 해외 주요국의 사례들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프랑스, 영국, 미국, 호주 현황을 경유해 한국형 아카이브 구축·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추출한다. 넷째, 방송사 아카이브 실사결과를 분석한다. 한국 방송사 아카이브 관리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은 무엇인지, 각사별 이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내용을 토대로 방송사 아카이브의 공적 지원방향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아카이브의 단계적 구축방안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논의한다. 크게 세 단계로 나눠 아카이브를 어떻게 구축·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인프라 구축·운영, 방송콘텐츠 수집, 데이터 관리방식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제2절 연구방법

연구목표 달성을 위해 ‘문헌분석’, ‘방송사 아카이브 실사(인터뷰 포함)’, ‘전문가 연구반 운영’의 여러 질적 연구방법을 함께 사용했다. 이러한 다각화(triangulation)를 통해 보다 타당성 높고 의미 있는 분석결과를 제공하고자 했다.

1. 문헌분석

‘문헌¹⁾분석’은 (인터뷰나 설문조사처럼 연구자가 직접 주제와 자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이미 만들어놓은 주제와 관련 자료들을 찾아 분석하는 연구방법이다. 물론 문헌분석에서 활용되는 문헌이 단순히 존재하기 때문에 분석되는 것은 아니(어야 한다). 문헌분석은 연구문제 해결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다. 문헌은 과거에 발생한 사건과 과정을 기록한 자료로, 관찰이나 인터뷰, 설문조사 등으로 얻을 수 없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때문에 문헌분석은 현재의 사건과 과정, 그리고 과거의 사건과 과정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Mason, 1996/1999).

문헌분석에서 주로 사용되는 표집은 이론적 표집이다. 이론적 표집은 정보에 대한 이론적 자료를 표집하기 위한 체계적 시도이다. 이 때 개념적 · 이론적으로 적합성이 있는 대상이나 사건이 반복해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즉 의미 있는 대상이 선택될 필요가 있다. 자료에는 정보를 제공할 만한 문서뿐 아니라, 영상, 기타 데이터, 그리고 사람 등 모든 것이 포함된다. 때문에 자료의 수집과 분석과정에서 일관성과 융통성 유지가 요구된다. 일관성이 범주에 따라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라면, 융통성은 연구에 새로운 관점을 추가하거나 관련현상 설명에 도움을 주는 자료의 선택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0/1996).

1) 문헌분석의 대상은 말 그대로 ‘문헌(文獻)’이다. 일차적으로 ‘연구의 자료가 되는 서적이거나 문서’를 의미하나, 여기에서는 ‘연구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반이 되는 모든 형태의 자료’로 확장해 사용하고자 한다. 문헌은 크게 학술적 문헌과 비학술적 문헌으로 나뉜다. 학술적 문헌은 전문적 · 학문적 특징을 갖는 이론서, 논문, 연구보고서 등으로, 연구과정에서 얻어진 실제자료에 나타난 사실들을 비교하는 기반이 되면서 이론적 민감성을 높인다. 비학술적 문헌은 기사, 영상 등의 자료들이다(Strauss & Corbin, 1990/1996). 이 연구에서는 학술적 문헌과 비학술적 문헌 모두를 대상으로 삼는다.

이 연구에서는 ① 디지털 방송콘텐츠 아카이브의 개념, 목적·필요성·의미 관련자료, ② 국내 아카이브 구축·운영 현황 관련자료, ③ 해외(특히 프랑스, 영국, 미국, 호주) 방송사 및 공공영역의 방송콘텐츠 아카이브 구축·운영 현황 관련자료, ④ 그 밖에 아카이브 단계적 구축방안 및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했다. 연구에 새로운 관점이나 현상을 추가할 수 있는 자료가 발견되는 경우도, 연구주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연구진 검토를 통해 관련내용을 추려 연구내용에 반영하고자 했다.

문헌분석의 세부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디지털 방송콘텐츠 아카이브 구축·운영 관련자료를 수집했다. 둘째, 기존 분류항목을 참고하거나 연구주제에 맞게 검토된 자료를 범주화했다. 셋째, 범주화한 자료를 분석해 아카이브의 구축·운영 논의를 위한 키워드와 이슈를 도출했다. 넷째, 연구대상에 대한 대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아카이브의 단계적 구축방안 및 운영 가이드라인 도출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2. 방송사 아카이브 실사

2000년대 중반 HD제작시스템 도입을 전후하여 디지털아카이브를 구축한 주요 지상파방송사²⁾들과 달리 지역방송사는 디지털제작시스템 및 아카이브 구축이 비교적 늦은 편이다. 대체로 2010년대 중반 이후 보도 및 편성 부문 NPS(네트워크제작시스템)를 구축하면서 뒤늦게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자사 보유자료 아카이빙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못하여 안정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방송사가 보유한 콘텐츠는 해당 콘텐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주제는 물론 콘텐츠를 보관하고 있는 매체 면에서도 과거 한국 방송문화의 원형(原形)을 담고 있다. 각 지역에 산재한 지역 방송사는 해당 지역 자연환경, 주요인물, 지역 현안 등과 관련된 역사문화를 증명하는 사료(史料)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국내 최초로 도입된 ENG카메라 방송데이

2) 2004년 SBS 목동 신사옥 건립과 함께 SD급 디지털뉴스제작시스템(News Digital System) 도입, 2011년 HD급 제작시스템으로 전환; 2007년 KBS 단계별 디지털뉴스룸 구축, 2012년 뉴스 프로그램 제작 부문 파일기반 제작시스템 완료; 2009년 YTN 파일 기반 제작, 송출까지 가능한 네트워크 제작시스템 구축 완료, 영상 자산에 대한 보관 기준과 보관 연한, 아카이브 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명문화해 사규에 반영; 2012 JTBC, 채널A, TV조선 개국과 동시에 디지털뉴스룸 구축 동시 진행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9). 방송·영상아카이브 필요성 및 운영방안 연구, p.36.

프 ‘유매틱(U-Matic, 3/4인치)’ 테이프를 비롯해 SD/HD급 테이프 자료는 국내 방송 기술 도입 및 제작사(史)를 간직하고 있다. 주요 지상파 방송사가 테이프 자료 디지털화 후 대부분 폐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방송사가 여전히 보유한 테이프 매체들은 국내 방송문화사를 다시 쓸 수 있는 중요한 사료가 될 수 있다.



[그림 1-1] 유매틱(3/4인치)테이프(강원영동MBC)(좌) 및 1인치테이프(부산MBC)(우)

이러한 사료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지역방송사 대부분의 테이프 매체들은 오래전부터 VCR 장비 부족, 작업 인력 부족, 자원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각 사 자료실 또는 창고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각 사에서 어느 정도로 소장콘텐츠 디지털화가 진행되었는지, 이를 DB화하여 제작에 활용되고 있는지 현장조사를 통해 공공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기간 동안 각 사에서 아카이브를 운영하는 담당자를 직접 만나 아카이브 구축 현황과 주요 이슈가 무엇인지, 정부 차원의 공적 지원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실사는 지난 2022년 7월 3주차부터 10월 4주차까지 방문 대상 지역사의 일정에 맞추어 진행되었다. 실사를 위해 지역MBC 계열사 16개사 중 12개사, 지역민영방송 9개사 중 5개사, 전체 17개사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선정을 위해 지역 안배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또한, 조사기간 중 현장 방문 및 담당자 미팅이 가능한 방송사를 우선 방문하였고, 각 사 방문 전 사전조사를 통해 자체적으로 테이프 매체 디지털화 및 NPS구축이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방송사를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조사일자별 조사대상은 <표 1-1>과 같다.

<표 1-1> 지역·중소방송사 아카이브 현황 조사대상(지역별 분포)

순번	광역 시도	조사대상	조사일자
1	수도권	OBS경인TV	2022.07.28.
2	강원	강원영동MBC	2022.08.11.
3		G1강원방송	2022.08.12.
4		춘천MBC	2022.08.12.
5	충북·충남	대전MBC	2022.08.09.
6	대전·세종	충북MBC	2022.08.31.
7	전북·전남 광주	광주MBC	2022.07.26.
8		KBC광주방송	2022.07.27.
9		전주MBC	2022.08.04.
10		JTV전주방송	2022.08.04.
11		목포MBC	2022.09.15.
12	경북·경남· 울산·부산	경남MBC	2022.07.26.
13		KNN부산방송	2022.08.23.
14		부산MBC	2022.08.26.
15		울산MBC	2022.08.26.
16		안동MBC	2022.10.26.
17	제주	제주MBC	2022.10.21.

본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지역MBC 계열사 및 지역민영방송의 NPS 및 아카이브 구축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문헌자료(역대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MBC내부자료, 각 사 아카이브 구축 관련 보고서 등)를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담당자 전화인터뷰 및 현장 방문을 통해 각 사가 직면해 있는 아카이브 관련 쟁점 및 이슈, 정부에 지원요청사항을 질문하였다.

현장 방문에 앞서 ‘사전질문지’를 발송하여 현장 방문 시 질문할 내용을 각 사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전질문지는 각 사 사내 아카이브 구축 현황, 각 사 아카이브 대외서비스, 유튜브 등을 이용한 외부 콘텐츠 검색 방식, 공영 방송콘텐츠 아카이브 구축 시 기대되는 점 및 우려되는 점 의견 등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했다. 각 사마다 조사 내용에 따른 답변이 편차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대부분의 질문은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했으나, 일부 문항에 한해서는 선택사항을 둔 구조적 질문을 구성했다.

<표 1-2> 지역·중소방송사 아카이브 현황 조사내용

구분	조사내용
아카이브 기본정보	기관성격(공공기관/공영방송/민영방송 등) 아카이브(영상자료실) 관련 조직 및 인력 현황 (부서명, 해당부서 인력 규모) 아카이브(영상자료실) 장비 및 시설 (장비목록) 아카이브 운영 관련 재원 (유지보수비, 인건비 등) 외부 개방 여부 (시청자 서비스, 유튜브 공개 등)
소장 콘텐츠 현황	영상자료, 음성자료, 사진, 문헌, 도서 등 유형별 소장량 기관별 집계된 통계(자료관리 대장 등)가 있다면, 해당 자료 제공 요청 자세한 통계가 없을 시, 대략적으로 정보 제공 (예/ 영상자료실 규모, 모빌렉 수, 보존상자 수 등) 아날로그 매체(필름, 테이프 등) 보유 현황 - 매체 유형, 수량, 보존상태, 디지털화 및 DB화 여부
아카이브 시스템	사내 소장콘텐츠 검색 방법(복수선택 허용) - 사내 데이터베이스 이용 - 엑셀목록 등 기존 소장콘텐츠 대출 대장 사용 - 특별한 목록 없이 개방형 영상자료실 서고 운영
아카이브 외부 개방	사내 소장콘텐츠의 외부 개방 여부(복수선택 허용) - 유튜브 채널을 이용한 영상자료 공개 - 홈페이지 등 별도 검색 플랫폼을 구축하여 연구자 및 시청 자들에 공개 - 공개 안함 사내 소장콘텐츠를 외부에 개방하는 방식(복수선택 허용) - 지역 대학, 연구소 학술 연구자 연구자료 제공 - 초/중/고 각 급 학교 교육 활용 지원 - 박물관 및 도서관 문화예술 관련 행사 지원 - 지역 영상창작자 영상제작 지원
외부콘텐츠 활용	사내에서 방송프로그램 제작 시 타 방송사 등 외부 콘텐츠 검색 방법 - 유튜브, KTV 나누리 포털, 타 방송사 홈페이지, 해외사이 트(게티 등) 등 - 타 방송사 또는 외주제작사 등에 직접 문의
공영 디지털 방송콘텐츠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의견	담당자 개인 의견 또는 사내 일반적인 의견 요약 - 정부의 역할(시스템 구축 지원, 필름 및 테이프 디지털화 지원, 메타데이터 표준 마련 등), 기대되거나 우려되는 점

3. 전문가 연구반 운영

세 번째 연구방법은 ‘전문가 연구반 운영’이다. 연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아카이브의 단계적 구축방안 및 운영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했다. 다분히 탐색적인 이 연구의 특성을 감안해, 구축방안과 운영 가이드라인뿐 아니라, 관련 법제도 제·개정방향, 그리고 연구과정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슈들을 함께 논의했다는 점에서 전문가 연구반 운영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연구반 위원은 방송·콘텐츠 산업·법제도·정책 전문가 8명으로 선정했다. 선정에 있어서는 방송·콘텐츠에 대한 전문성 보유여부, 아카이브 관련 업무나 연구/반 참여경험을 고려했다. 하나의 분야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여부도 감안했다. 탐색적 연구인만큼 위원들의 폭넓은 활동경험이 연구에 보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보를 풍성하게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해서다. 연구반 위원들은 연구설계에서부터 최종보고서 작성방향 논의에 이르기까지 연구진행 전반에 걸쳐 큰 도움을 주었다.

<표 1-3> 전문가 연구반 위원정보

구분	이름	소속/ 직책	전문분야 및 특이사항
학	정회경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교수	산업·정책/기존 아카이브 연구수행
산	서재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	공학/기존 아카이브 연구반 참여
	성욱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본부장	정책/기존 아카이브 연구반 참여
연	남승용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	경제/기존 아카이브 연구수행
	이순환	미디어미래연구소 책임연구원	법/기존 아카이브 연구수행
	윤영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전문위원	법
	정경오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법/기존 아카이브 연구반 참여
	김지훈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법/기존 아카이브 연구반 참여

전문가 연구반 회의는 2022년 9, 10, 12월 총 3회 개최했다. 매회 연구 진행상황과 연구반 위원들의 전문분야를 고려해 책임연구원이 사전에 정해진 주제에 대해 발제하고, 발제

내용에 대해 나머지 인원들이 토론하는 형식을 취했다. 회차별 발제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1차: 연구계획, 아카이브 구축방향(목표, 전제사항, 흐름도, 기대효과 등), 법안관련 이슈들(『방송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② 2차: 아카이브 구축방향 수정·보완버전(목표, 전제사항, 방식, 흐름도, 방송콘텐츠 수집, 복원 및 보존, 실시간 수집방식, 수집자료 검색·열람 정보체계 구축 등), 실사 진행상황(실사 개요, 자체 아카이브 구축여부, 주요 방송사 콘텐츠 보유현황, 방송사별 아카이브의 한계 등), 법안관련 이슈들 보완버전(『방송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③ 3차: 기존에 논의된 내용들에 대한 최종안.

제2장 국내외 아카이브 현황

제1절 아카이브 개요

1. 방송콘텐츠 공공 아카이브의 개념과 특징

1) 공공 아카이브 개념

<표 2-1>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아카이브’와 학술적 의미의 ‘아카이브’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아카이브’	학술적 의미의 ‘아카이브’
방송프로그램명 KBS <아카이브 프로젝트-모던코리아>(2019~) SBS <전설의무대 아카이브K>(2021)	· (컬렉션) 가치있는 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해 선별한 영구기록물(콘텐츠) 모음
유튜브 채널명 <KBS Archive : 옛날티비>	· (행위주체) 가치있는 기록물(콘텐츠)을 보존하는 행위의 주체
· ‘과거 콘텐츠 또는 콘텐츠 모음’ · ‘과거에 생산된 콘텐츠 중 특별한 가치를 인정하여 선별된 콘텐츠 또는 콘텐츠 모음’	· (공간) 가치있는 기록물(콘텐츠)을 모아 놓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공간
	· (시스템) 가치있는 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한 관리도구
	· (체계) 보존 대상 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환경의 총체

* 자료: 정희경 등(2022), 10쪽.

가령 SBS에서 방영한 <전설의 무대 아카이브 K>와 같이 최근 방송프로그램 제목에 ‘아카이브’ 라는 말이 들어가는 현 상황을 미루어 볼 때, 방송 분야에서 아카이브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학술적 의미에서 ‘아카이브’란 과거 생산된 콘텐츠의 모음을 의미하는 ‘컬렉션’의 의미 외에도 복합적인 의미를 함께 포괄한다. 일반적으로 방송 프로그램명 등에서 사용되는 ‘아카이브’는 ‘과거 콘텐츠 모음’ 정도를 의미하지만, 학술적으로 ‘아카이브’는 콘텐츠를 모아놓은 온·오프라인 공

간 및 이러한 컬렉션이나 공간을 관리하는 그리고 조직과 컬렉션, 그리고 관련 시스템 등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 등을 의미한다.³⁾

본 연구는 여러 기억기관(Memory institutions)⁴⁾들 중 하나인 공공 아카이브에 주목한다. 그런데 여기서 ‘공공’은 학술적으로나 관련 산업 분야에서 통용되는 용어가 아니다. 해당 용어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유네스코 등에서 수행한 ‘영상문화유산(Audiovisual Heritage)’ 관리 체계 제도화를 위한 여러 연구 결과들을 통해 개념화되었다. 즉, 공·사적 영역에서 생산되는 사진, 음성, 영상, 멀티미디어 등 다양한 성격의 시청각 기록 가운데 공공 차원의 수집·관리·활용 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이 몇 차례 연구를 통해 논의됨으로써 이를 통해 ‘공공’ 아카이브라는 개념이 도출된 것이다.

몇몇 연구 결과들에 기반해 ‘공공’ 개념은 특정 방송 사업자가 사내 활용을 목적으로 배타적으로 제작·보관·활용하는 콘텐츠와 구분되는 대상을 지칭하는 표현으로서 국내에 도입되었다. 국내 『공공기록물법』에서는 ‘기록물’을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로 정의하고 있다(『공공기록물법』 제3조). 즉, 현행 제도에서 공공 차원으로서의 기록물은 제한적으로 ‘공공기관의 시청각 기록물(기관장의 업무, 기관장 동정 관련 사진 및 영상 등)’만을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이라는 용어를 ‘공공기관의 시청각 기록물’ 외에도 영화·문화재·문화예술·도서관의 멀티미디어 컬렉션 등 공중에 공개되는 시청각 유형 콘텐츠 일체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상정하고자 한다(최효진, 2021).

3) 영문 표현에서는 단수 ‘Archive’와 복수 ‘Archives’의 의미가 미세하게 구분된다. 단수로 표현될 때는 ① 컬렉션, ② 자료출처, ③ 개인기록, ④ 선별된 온라인 컬렉션, ⑤ 사회적 정치적 의미를 갖는 개념적 구성 등 대체로 복수 표현의 ‘컬렉션’에 해당하는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복수로 표현하는 ‘Archives’의 의미로부터 비롯된 해외 아카이브 설립 및 컬렉션 수집, 관리, 활용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Dictionary of Archives Terminology ‘Archives’ <https://dictionary.archivists.org/entry/archives.html>).

4) ‘기억기관’은 일반적으로 도서관·박물관·기록관 등을 통틀어 일컫는 표현이다. 김익환(2020, 6, 10)에 따르면 이 기억기관은 ‘기억할만한 것들을 모으고 그걸 서사가 포함된 기록 콘텐츠로 만들어 시민들과 소통하는 곳’으로 정의되고 있다.

<표 2-2> ‘영상문화유산’ 관련 연구와 ‘공공’의 개념

연구명 (연구년도, 연구책임자)	연구내용
『영상아카이브에 관한 법적인 문제』 (1991, Bergit Kofl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영역에서 보존해야 할 영상·음성 콘텐츠의 범주를 최초로 연구 및 범주화 • ‘공공’ : 대중(Public)에 방영, 배포, 유통된 콘텐츠 일체. 공중에 공개된 상영(영화), 방영(TV/라디오), 배포 및 유통(녹음, 녹화된 음반, 비디오, DVD 등)된 콘텐츠 • ‘공개성’ 이 매우 강조 일반 시민들에게 콘텐츠가 공개되고, 저작권자의 저작권이 배포되어 대중(Public)에게 누군가의 생각, 사상, 감정을 전달하는 콘텐츠를 ‘공공’ 으로 범주화
『영상아카이빙 철학』 (1998, Ray Edmonds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차원의 수집 및 관리, 활용 대상을 콘텐츠 외에도 콘텐츠를 재생할 수 있는 대상까지 포괄적으로 이해 • 2016년 제3판 개정안⁵⁾에 이르기까지 이 연구에서 정의된 ‘공공’ 개념 유지 • ‘공공’ (범주1) 특정 길이의 시청각 콘텐츠 (범주2) 이미지나 소리를 녹화, 녹음, 송신, 수신 및 인식하게 하는 장비와 장비의 매뉴얼이나 장비조작 노하우(Know-how) (범주3) 실제로 대중에 공개되지는 않았어도 공개를 목적으로 생산된 시청각 콘텐츠(예/방송프로그램의 촬영 원본)

앞서 살펴본 두 연구자, 코플러와 에드몬슨의 연구를 비롯해 1990년대 이후에 유네스코 등 여러 차례 총회에서는 공공 아카이브에 대한 정의 및 개념, 그리고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는 그동안에 기억기관들이 공공 아카이브를 시청각 매체 모음집 정도로 여겨온 배경에서 비롯된다. 현재도 여전히 관련 논의는 지속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공공 아카이브란 ‘공공의 보존, 정보검색 등과 관련한 모든 활동, 수집된 콘텐츠를 보관하기 위한 공간 관리, 이 같은 행위를 가능케 하는 조직’ 으로 정의할 수 있

5) Ray Edmondson(2016)은 1998년 발간된 『영상아카이빙 철학』 보고서를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한 개정판이다. 해당 발행물은 유네스코의 공용어(영어, 불어, 중국어, 스페인어) 외에도 태국어, 미얀마어, 페르시아어, 일본어, 포르투갈어 등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발행되었고, 현재 세계 여러 지역에서 영상 아카이브 운영을 위한 기본 지침서로 활용 중이다.

겠다. 즉, 관련 법률 등 제도적 근거에 기반해 공익을 목적으로 수집, 관리되는 컬렉션에 대한 관리 주체 및 체계를 의미한다.

코플러는 공공 아카이브가 갖춰야 할 법적·행정적 체계, 자원, 지침, 운영 방안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는데, 공공 아카이브는 시청각 콘텐츠 모음이라는 점에서 더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공공 아카이브란 기관이 보관하는 매체 및 콘텐츠들이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도록 갖춰진 기술적 수단인 것이다(Kofler, 1997: p. 46)⁶⁾. 정리하면, 공공 아카이브는 영상문화유산 보호 체계로서 수집 대상을 수집하는 물리적, 또는 가상의 공간 및 시스템, 그리고 수집 대상을 일관성 있게 분류하고 기술해 놓은 컬렉션을 모두 포괄한다.

한편, 에드몬슨은 박물관과 기록관(아카이브), 그리고 도서관 등과의 비교를 통해 공공 아카이브가 갖는 특수성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공공 아카이브는 해당 세 개의 기관이 갖고 있는 역할과 기능을 종합한 개념임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 세 기관의 기능과 다르게 운영되는 지점 또한 존재한다. 도서관이 공중에게 공개된 간행물을 제공하는 것과 같이, 공공 아카이브에서는 이미 발매된 음반이나 상영된 영화, 또는 방영된 방송프로그램 등 역시 공개된 시청각 기록을 수집한다. 그러나 공개를 목적으로 촬영하고 편집된 이미지나 소리, 즉 촬영원본이나 취재원본 또한 수집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일본 기록을 수집·소장하는 기록관으로서의 성격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생산된 시청각 매체에 대한 재생 장비 및 이를 구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요소들 또한 관리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박물관의 주요 기능인 ‘유물에 대한 수집 및 관리, 그리고 보존과 전시’ 등과도 관련된다. 그러나 공공 아카이브의 경우, 이미 상당한 복사본이 존재하는 시청각 기록물을 수집한다는 점에서 기록관의 주요 원칙인 ‘출처 중심주의’ 를 항상 우선으로 삼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서로 다른 출처의 기록물들을 함께 모음집을 구성하기도 한다.

한편, 기록관이나 도서관들이 전통적으로 무상 열람 서비스를 제공해온 것과 달리, 공공 아카이브에서는 저작권 문제나 원본 매체의 변환 비용 등을 고려해서 열람을 원하는 이용자가 일정 수준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한다(Edmonson, 1997: p. 19)⁷⁾. 특히 최근에는

6) (...) an audiovisual archive is not only a collection, but also a technical means for the long-term survival of the material in its possession.

7) The archival science concepts of the record, original order and respect des fonds can be confining ones for the AV archive and not always relevant to its needs. The library

네트워크 환경과 스트리밍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열람 환경이 개선되었지만, 이러한 기술적 환경과는 별개로 공공 아카이브가 수집한 시청각 기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저작권자와 공공 아카이브 사이의 협의·계약 내용에 따라 이용자의 ‘유/무상이용’ 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⁸⁾

<표 2-3> 공공 아카이브와 기록관·도서관·박물관 비교

구분	공공 아카이브	일반 기록관 (아카이브)	도서관	박물관
수집 대상	영상·음성 작품, 해당 작품과 관련된 문서, 박물관	평가·선별된 사용되지 않는 (inactive) 기록 일반적으로 유일, 미공개 기록	공중에 공개된 자료 일체	박물관, 유물, 관련 문서
정리 시스템	포맷, 상태 등에 따라 구축된 시스템	기록이 생산된 출처별 정리	도서 분류시스템 (듀이십진법 등)	재질, 상태 등에 따라 구축된 시스템
이용자	활용정책, 이용가능한 사본 여부, 저작권, 이용계약 등에 따라 다름	활용정책, 적법성, 기증/위탁 조건에 따라 다름	활용정책에 따라 다름. 일반이용자 혹은 정해진 공동체	활용정책에 따라 다름. 일반이용자 혹은 정해진 공동체

science concepts of information and collection management have limitations. Access services can be very costly, so the ethic of free public access traditionally common in archives and libraries can be impractic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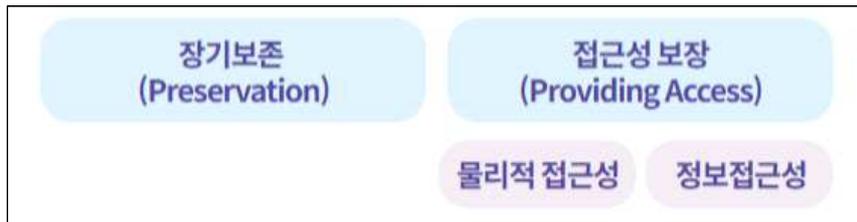
- 8) 가령 영화 <태극기휘날리며>(2004)의 경우, 『영화·비디오법』에 의거 ‘한국영상자료원’에 의무적으로 제출되었지만,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국내에서는 공개되고 있지 않다. 게다가 <태극기휘날리며>의 저작권자인 영화제작사 ‘강제규필름’이 2005년 폐업하면서 영화의 저작권을 미국판권사에 양도하게 됨으로써, 국내에서는 2020년까지 넷플릭스, 유튜브, 네이버의 VOD 서비스와 통신 3사의 IPTV 등 모든 플랫폼에서 서비스가 되지 않았고, 2021년에 다시 극장에서 재개봉된 바 있다. 이처럼 ‘한국영상자료원’에 의무제출을 통해 입수되어 보관 중인 작품이 존재하지만, 복잡한 권리문제로 인해 대국민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취재대행소행, 2020, 7, 14).

구분	공공 아카이브	일반 기록관 (아카이브)	도서관	박물관
검색 방법	검색 카탈로그 목록, 담당직원 검색 지원	검색 가이드, 인벤토리, 검색도구 (finding aids)	검색 카탈로그, 브라우징, 인터넷, 열람	전시물 관람, 담당직원 검색 지원
접근 장소	활용정책, 열람시설, 기술에 따라 다른 방문 또는 원격	기관 방문 혹은 인터넷	기관 방문, 대출, 원격열람	전시
기관 목표	영상문화유산 보존 및 접근권 보장	기록물의 증거적·정보적 가치보호	자료와 정보보존 및 접근권 보장	유물과 관련정보 보존 및 접근권 보장
방문 목적	연구, 교육, 문화향유, 사업	행위의 증거, 업무처리, 연구, 문화향유	연구, 교육, 문화향유	연구, 교육, 문화향유
직종	영상아키비스트	아키비스트	사서	학예연구사

* 출처: Comparative table: audiovisual archives, general archives, libraries and museums, 『Audiovisual Archiving - Philosophy and Principles(Third Edition)』, p.85.

2) 공공 아카이브의 기능 및 역할

공공 아카이브의 기능은 수집된 콘텐츠에 대한 ‘장기적인 보존(Preservation)’ 과 ‘접근성에 대한 보장(Access)’ 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앞서 표를 통해 살펴본 대로 공공 아카이브는 기록관과 여러 지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일반적인 기록관과 비교했을 때 가장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은 수집된 콘텐츠에 대한 ‘보존’ 과 ‘활용’ 을 동시에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 기록관의 경우, 보존 대상 기록물에 대한 공개는 보존 연한과 공개 시점, 그리고 공개대상 정보의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한편 공공 아카이브가 관리하는 공공 기록물의 경우 입수 시점부터 이미 이용자들에게 공개할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 에드몬슨 또한 이와 관련해 공공 아카이브의 주요 기능을 ‘매체에 기록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일’ 이라고 말한 바 있다(Edmonson, 2016).



* 출처: 최효진(2021).

[그림 2-1] ‘공공’ 아카이브의 기능

여기서 우선 ‘물리적 접근성’을 보장하는 작업의 경우, 물리적 매체에 대한 안정성 및 최상의 조건에서의 재생가능성(readability)을 보장하는 것을 뜻한다. 즉, 기술적 시스템을 활용해 물리적 매체에 기록된 이미지와 소리 등 파일에 대한 온·오프라인 접근성을 보장하는 작업인 것이다. 이때, 여기서 언급한 물리적 매체는 반드시 전통적인 차원에서 의미하는 ‘원본(original)’이 아닐 수 있다. 과거에 생산된 자료가 다른 매체에 복사, 또는 이관된 기록⁹⁾ 또한 입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 아카이브는 ‘유일본’만을 모으는 것이 아니다. 국내 초기 방송원본 자료들은 대체로 16mm 필름, 또는 헬리컬 비디오에서 촬영되었지만, 현재는 그 이후 세대의 매체로 불리는 디지털 테이프 해당 원본을 옮겨 보관 및 관리 중이다. 즉, 디지털 테이프에 원본을 변환하고 실제 원본은 폐기함으로써 해당 디지털 테이프를 원본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¹⁰⁾

한편, ‘정보접근성’을 보장하는 작업이란 공공 아카이브에 보관 중인 파일과 물리적 매체로 재생이 가능한 이미지와 소리가 무엇이며, 사회문화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등에 대해 재맥락화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아카이브가 갖는 여러 기능들 가운데서 ‘정리나

9) For a number of reasons, some of the holdings retained in, or offered to, audiovisual archives will not be the original recordings but copies. For the purposes of digitisation and preservation, these copies should be considered to be originals, unless earlier-generation or otherwise superior copies can be accessed through co-operation with other collection holder(IASA Technical Committee, 2017: p. 5).

10) KBS는 2017년, 방송자료 보존과 관련해 국립중앙도서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KBS는 방송 관련 비디오테이프 38만여 개뿐만 아니라 일부 영상 디지털 파일을 국립중앙도서관에 기증하였고, 추후 발생할 비디오테이프와 디지털 파일 또한 주기적으로 기증하기로 협의하였다(연합뉴스, 2017, 2, 17).

기술(Description), 그리고 메타데이터 관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물리적 접근성과 정보 접근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2-4> 공공 아카이브의 ‘접근성 보장’ 역할 세분화

구분	물리적 접근성 보장	정보접근성 보장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적 매체의 안정성과 최상의 재생 가능성 보장 · 물리적 매체 및 디지털화 결과물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접근성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적 매체로 재생 가능한 이미지와 소리가 사회문화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재맥락화
아카이브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물 매체 보존관리, 상태관리, 복원, 디지털화, 장기보존 · 디지털파일 보존용·활용용 사본 관리, 이중화, 데이터 보안관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물 매체 및 디지털파일 정리, 기술, 메타데이터 관리, 역사적 및 미디어 기술 차원의 맥락 연구, 소장 기록물의 목록 공개 · 적절한 서비스 환경 제공(방문 열람, 온라인 원문공개) · 소장 기록물 보호 및 오용 방지, * 저작권자 및 출연자 권리관계 보호

자료: 정희경 등(2022), 16쪽.

한편, 공공 아카이브는 보존대상 컬렉션에 대한 진본성(Authenticity)과 신뢰성(Integrity)을 유지하고, 시청각 매체의 특성에 맞춰 관리대상을 기록한 것에 대한 고의적인 변형·검열·삭제 등을 보호해야 한다. 기록을 생산하는 단계부터 영상 아키비스트가 개입해 생산 과정에서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인 삭제, 배제, 또는 누락된 부분 없이 입수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절차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세계 최초 공공 아카이브 관련 국제기구인 ‘국제필름아카이브연맹(FIAF)’의 ‘FIAF윤리강령’¹¹⁾은 필름 아카이브와 필름 아키비스트 역할에 제한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에 ‘FIAF윤리강령’은 공공 아카이브 관련 국제기

11) 프랑스 시네마테크아카이브, 독일 필름아카이브, 영국영화연구소(BFI), 미국 뉴욕 근현 대미술관(MOMA) 등 이 기관들이 모여 1938년 세계 최초의 공공 영상아카이브 국제기구인 ‘국제필름아카이브연맹(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s archives du film, FIAF)’을 설립했다.

구¹²⁾에서 제정하는 윤리강령이나 지침, 표준의 원안이 되는 문서가 되었고, 해당 문서에는 컬렉션을 수집하고 관리하며 활용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명시되어 있는데, 아래 문단에 이를 제시하였다.

“필름아카이브와 필름아키비스트들은 전 세계 동영상 문화유산의 수호자들이다. 이 유산을 보호하고 그것을 최선의 상태로, 그리고 작품의 창작자가 표현하고자 한 바와 가능한 가장 가까운 형태로 후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이다. 필름아카이브는 관리 중인 원본 자료들이 존속할 수 있는 한, 그 자료들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원본을 새로운 버전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필름아카이브는 그러한 원본의 포맷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 필름아카이브의 일차적 책무는 그들의 관리 하에 있는 자료들을 보존하고, 그러한 활동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전술한 의무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자료들이 영속적으로 조사, 연구 그리고 공개상영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¹³⁾”

3) 공공 아카이브의 특수성

영화·방송 분야가 글로벌화되고 상업화되는 경향에 따라 시장에서 저작권자들의 권리가 거둬 강조되고 있는 환경에서 공공 아카이브는 일반 이용자들을 위한 보편적 접근권과 문화유산 향유권, 그리고 한편에서는 저작권자들의 재산권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납본제 내지는 의무제출제도의 경우, 상기 두 개의 가치의 충돌 지점에서 ‘보존’ 과 ‘접근권 보장’ 을 주된 기능으로 삼는 공공 아카이브의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가 각국 아카이브 운영사례를 살펴보기에 앞서 기관 설립 및 운영의 법적 근거, 각국의 미디어법 및 『저작권법』 등을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12) 국제텔레비전아카이브연맹(FIAT), 국제영상음성아카이브협회(IASA), 영상아키비스트협회(AMIA) 등

13) FIAF 윤리강령의 초안을 작성하기 이전에는 에드몬슨을 위시한 세계 각국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쳤다. For many of its practical precepts, this document is equally indebted to Ray Edmondson of the National Film and Sound Archive, Canberra, who throughout the 1990s has carried forward the project of the development of a Philosophy of Audio-Visual Archiving. Although neither was directly involved in writing this text, the influence of these two colleagues has been essential, and is gratefully acknowledged(FIAF Code of Ethics, 2022).

바로 여기에 있다.

에드몬슨은 공공 아카이브가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공공 아카이브에서 일하는 영상 아키비스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즉, 이들이 설명 책임성이나, 투명성, 성실성, 또는 정확성 등과 같은 직업윤리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영화이나 방송콘텐츠 등 문화상품이 곧 기관의 수집 대상인 가운데, 영상 아키비스트는 특정 상품이 상업적으로 활용되고 문화적 가치를 제공하는 그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Edmonson, 2016: p. 10).¹⁴⁾ 또한 마지막으로 공공 아카이브는 보존하고 활용할 대상의 콘텐츠와 관련된 개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조치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한편, 국제영상음성아카이브협회(IASA)는 지난 2011년에 『영상 아카이브의 윤리적 원칙』¹⁵⁾에서, 공공 아카이브가 수집하고 보존하며, 활용하는 등, 각각의 기능별로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을 정리한 바 있다. 법적 근거나 관리대상 컬렉션의 특징, 그리고 이용자 수요와 콘텐츠 공급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공공 아카이브의 역할은 기관별로 다르다. 그러나 IASA는 이러한 여러 차이에도 불구하고 ‘영상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체계를 갖춘 공공 아카이브들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지켜줄 것을 권고사항으로 제안한다. 해당 문서에는 공공 아카이브의 역할을 입수(Acquisition)와 관리 및 보존(Processing and preservation), 접근권 보장(Providing Access) 등 총 3단계로 구분하고, 이와 별도로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리, 그리고 저작권과 관련한 아카이브 기관의 책임 등을 정리하고 있다.

14) A strong sense of personal ethics and integrity, therefore, underline the profession. Clearly visible lines of accountability, transparency, honesty, and accuracy are all elements of this. Audiovisual archivists work in both commercial and non-commercial contexts. These are not mutually exclusive domains, and archivists must often juggle judgements of cultural value against the imperative of commercial exploitation(Edmonson, 2016: p. 10).

15)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ound and Audiovisual Archives (IASA). (2010). Ethical Principles for Sound and Audiovisual Archives. revised 2011. <https://www.iasa-web.org/ethical-principles>.



* 자료: 정희경 등(2022), 19쪽.

[그림 2-2] 공공 아카이브의 관리 절차와 저작권 보호 역할

이보다 20년 앞선 1991년에 수행된 코플러의 연구 『영상아카이브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에는 독립성을 갖춘 기구로서의 공공 아카이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즉, 공공 아카이브가 방송사업자들이나 영화제작사 등을 지원하는 기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립도서관이나 국립박물관, 또는 국가기록원 등의 역할과 동등한 수준의 문화적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¹⁶⁾ 이를 뒷받침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공공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들을 세 개의 단계, 즉 수집, 관리, 활용 단계에 따른 아카이브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16) They(audiovisual archives) should be seen as neutral, officially recognized preservation institutions equal in cultural importance to national libraries, national museums, and national archives and not as near supplier of services to TV or broadcast stations or to film production studios(Kofler, 1997: pp. 43-54).

<표 2-5> 공공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요건

구분	내용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원 마련 - 아카이브 예산 관리의 독립성 보장 · 운영위원회 - 대표성있는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관리·감독 기능 수행 · 운영위원 선임 - 정부 및 유관 부처 의사결정권자와 유관 기억기관(도서관, 기록관 등) 전문가들로 구성 · 전문가를 단순 자문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은 지양할 것을 권고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본 - 법적 근거에 따라 의무제출에 의한 기록 수집 ·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국과 정부 사이의 협정에 따라 ‘납본’ 대상에서 예외 규정 적용 가능 (기술적 차원에서 방송본 전량 입수가 어려운 경우를 의미함) · 유관법령에 따라 납본대상 예외규정 적용 가능 · 납본처 지정, 납본자료 소유권 규정 · 최소화된 평가·선별 기준 수립 · 의무제출자(납본자) 접근성 보장 · 납본 시기 - 가능한 콘텐츠 생산 혹은 공중에 공개된 직후 · 별칙 규정, 납본비용 등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보존 처리와 관련한 법적 근거 마련 · 빠른협정 제11조에 따라, 국가 및 아카이브기관은 보존 목적으로 저작권자 등의 없이 저작물에 대한 ‘보존처리’ 가능. 국내 『저작권법』 등을 비롯해 대부분 국가의 『저작권법』에는 이와 관련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 ‘공공’ 아카이브 기관의 보존용 목적의 복제권 · 멸실 위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표준 및 조치 · 퍼블릭도메인(Public domain) 대상 자료 보호
활용과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존용 및 활용용 2개 사본 복제권 · 교육, 연구, 문화예술적 활용 목적의 일반이용자 접근권 허용 · 접근 제한 - 지정된 공공활용 목적 외에 접근 제한과 관련한 지침은 필요 · 전시, 임대, 대여 관련 - 저작권자와의 협의 하에 상업적 활용과 충돌하지 않는 한에서 수집자료를 전시, 임대, 대여에 활용할 수 있는 조항 필요 · 인용(citation)활용 - 교육, 비평, 보도 등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인용’ 활용 범위 내에서 수집자료 활용 허용 가능 · 이용료 - 비상업적 성격의 공공활용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이용료 부과 가능 (디지털화 실비 등을 의미)

* 자료: 최효진(2021).

2. 방송콘텐츠 공공 아카이브의 범주와 기대효과

본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공공 기록물의 하위 범주는 시청자들에게 공개된 방송콘텐츠이다. 즉, 방송콘텐츠 관련 공공 아카이브란 역대 여러 방송사가 제작하고 방영한 방송프로그램이나 OTT 서비스 등 인터넷을 통해 유통된 방송/영상 콘텐츠 중에서 교육, 연구, 창작 등 공공 활용이 가능한 형태로 공개된 콘텐츠를 수집하고 관리하며, 활용하는 아카이브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공공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어떤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방송콘텐츠 공공 아카이브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해 창작 활성화 차원, 역사문화적 차원, 대국민 문화 향유권 제고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디지털 공유지 형성

우선 공공 아카이브를 통해 이용자들의 접근과 그에 따른 참여가 강조되는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공공성’을 구체화하고, 더 나아가서 ‘디지털 공유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가령 영국의 미디어 학자 머독(Graham Murdock)이 제안한 ‘문화적 공론장’과 ‘디지털 공유지’라는 개념은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권을 향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머독은 『디지털 공유지 건설』이라는 논문을 통해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공공 영역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Murdock, 2005).

머독의 ‘디지털 공유지 이론’은 미디어가 상업화되고 그에 따라 공영방송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등장했다. 머독에 따르면 국가와 시장 영역 모두에서 자유로운 공공 부문, 즉 공영방송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서로간에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디지털 공유지는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형태가 공공도서관, ‘위키피디아’, 그리고 대학 등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운동 단체와 이해집단을 포함한 공동체 등을 연결하는 방식을 확대함으로써 국가와 시장에 맞설 수 있는 ‘올타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이용자들은 온라인 공간을 통해 공공 영역에서의 여러 기관에 대한 소유물 및 각종 전문 정보 등을 폭넓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이 스스로 각 기관과 소통할 수 있고, 나아가 이용자 간에도 대화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Murdock, 2011: p.247). 본 연구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국내 ‘방송콘텐츠 공공 아카이

브’는 이처럼 시민들의 디지털 공유지가 되는 물리적 또는 가상의 공간으로서, 시민들이 아카이브에 수집되는 콘텐츠를 창작, 교육, 학술연구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제작비 절감을 통한 창작자 지원

다음으로 공공 아카이브를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성격의 이용자 집단 중에 특히 영상창작자들을 대상으로 제작비 절감을 통한 창작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 장르나 유형, 제작 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든 영상 제작 프로젝트에 있어 필요한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소위 ‘자료화면’ 구입과 관련된 사항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크리에이터’로 통칭되는 1인 창작자나 중소 규모의 외주제작사, 그리고 지역 방송사 등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없기는 상황에서 무상으로 활용 가능한 사진이나 이미지, 동영상 등을 제한적으로 이용하거나, 때로는 별도의 이용 허락이나 저작권 정산 등의 과정을 생략하는 등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감수하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방송콘텐츠 관련 공공 아카이브를 구축함으로써 이용자들이 해당 기록물들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을 때, 창작자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자료화면’을 확보함으로써 제작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역사와 문화의 기록

공공 아카이브는 방송 통신 영역에서의 가치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기록함으로써 이를 다음 세대에 전승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 12월에 방송 10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를 목적으로 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방송통신위원회, 2021.12.17), 2022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에도 해당 내용이 반영되었다(방송통신위원회, 2021: p.10). 1924년 조선일보가 수행한 라디오 공개실험과 1927년 조선총독부 산하 경성방송국의 개국일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100년 후인 2024년 또는 2027년이 ‘한국방송 100년’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국방송의 역사가 100년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준의 ‘자료

(史料)’는 미비한 수준으로 남겨져 있다. 일부 방송정책 관련 문서자료를 포함해 특정 시기 새로 도입되는 방송기술에 기반해 제작된 결과물(예: 최초의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송, 최초 ENG카메라 도입 당시 취재물, HD 제작시스템에 의한 방송프로그램 등)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이 존재하긴 하나, 이를 총체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하며 보존하는 기관은 현재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방송기술 외에도 주제 차원에서 역사적으로 기록으로 남겨둔 만한 콘텐츠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 또한 필요할 것이다. 과거에 실재했던 생활상, 또는 자연환경이나 풍경 등이 드러난 이미지, 그 외에 ‘공공성’ 있는 인물이나 사건·사고가 촬영되고 방영된 자료, 또는 현대사의 존재하는 여러 주체가 남긴 역사적 증언 등은 ‘한국방송 100년’의 역사를 위한 기록뿐만 아니라, 우리 현대사의 기록물로서도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공공 차원에서 활용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 아카이브는 이러한 성격의 콘텐츠들을 재발굴하고 수집하며, 관리, 활용을 전담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함으로써 방송사업자와 역사연구자, 그리고 시청자 등의 교류와 소통을 증개할 것으로 기대한다.

4) 재난 및 주요 비상사태 대처 시스템

또한 공공 아카이브는 재난 및 국가 주요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방송 영상 자료에 대한) 백업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 사실상 국내 주요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은 각 사별로 자체적인 디지털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운영 중에 있지만,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실제 해당 방송사업자들은 수도권에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 외에 별도의 백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지진이나 태풍과 같은 자연 재해, 그리고 해킹을 위시한 보안 문제 등 여러 차원에서 있어 안전한 데이터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공공 아카이브를 통해 각 사가 매일 제작하고 방영하는 여러 콘텐츠를 수집하고 중장기적인 기간 동안 보관하는 백업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가령 지상파 방송뿐만 아니라 종편 및 케이블, 외주제작사 등을 망라한 다양한 방송사업자들의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보관하는 재난대비(DR)센터를 공동으로 구축함으로써, 각각의 사업자들이 운영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관리 인력 및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 손실이 발생했을

때에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즉각적인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해당 시스템은 영상 콘텐츠 인프라를 강화하는 또 하나의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방안이 될 수 있다(박춘원·강진욱, 2021.10.).

5) 참여 주체들의 부가가치 창출

공공 아카이브에 다양한 방송사업자 및 미디어 주체들이 참여했을 때, 참여 주체들의 콘텐츠 가치는 더욱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여러 주체가 모여 제작하고, 방영 및 공개되는 콘텐츠들은 콘텐츠의 성격이나 제작 규모 등에 따라 대체로 사적(Private) 차원에서 활용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콘텐츠들을 공공 아카이브 플랫폼에 공개함으로써 제작된 콘텐츠의 공개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고, 이를 유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을 때 공개된 콘텐츠가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해당 효과가 작동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유튜브’ 라고 할 수 있겠다. 채널 운영자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채널에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해당 콘텐츠를 단순 시청하게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작자 집단에 위치한 이용자들의 경우에는 해당 포맷, 구성, 내용 등을 참고해 저작권 판매 문의를 하는 등 채널 운영자들과 실제 거래를 이루는 경우도 존재한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공공 활용이 가능한 방송콘텐츠를 수집, 좀 더 공신력 있는 공공(아카이브) 플랫폼에서 해당 콘텐츠들을 공개하게 된다면 그 콘텐츠의 가치는 더욱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6) 대국민 문화복지 제고

궁극적으로 공공 아카이브가 추구하는 최종 목표는 이 공공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을 통해 ‘대국민 문화복지’의 수준을 상승을 이끄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시민들이 공공 아카이브를 통해 오늘날 매일 제작되고 방영되고 있는 방송콘텐츠를 좀 더 쉽고 편하게 시청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대체로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방송콘텐츠는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 또는 각 방송사 홈페이지 등에 비교적 빠른 속도로 업로드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과거에 제작된 콘텐

츠들은 그렇지 않은 실정이란 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심지어는 시청자들이 한국방송이 100년이 가까운 시간에 이르는 동안 거의 매일같이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접했음에도 그동안의 기간 동안 실제로 어떤 방송프로그램들이 방영되어 왔는지, 그 목록조차 확인할 수 없다.¹⁷⁾ 이에 공공 아카이브가 일반 시청자들로 하여금 시대를 불문하고 제작되고 방영되었던 이른바 ‘국민드라마’와 ‘국민예능’ 등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언제나 문화콘텐츠로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복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17) 1990년대까지는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가 제공하는 일간신문에 포함된 TV 편성표를 확인할 수 있고 2000년대 이후의 편성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공하는 ‘빅카인즈’를 통해 역시 일간신문에 포함된 편성표로 확인 가능하다. 그러나 편성표와 실제 방송 편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편성표를 통해 완벽한 수준에서 실제 방송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2절 국내 현황

사실상 국내의 방송 관련 아카이브는 주요 지상파 방송사들이 제작 효율화를 위해 사내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왔다. 그 외에 민간 영역에서도 아카이빙 주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가령 최근에 K-pop 스타 양성 및 콘텐츠 기획에 힘쓰는 엔터테인먼트사나 SBS에서 방영된 <전설의 무대 아카이브 K>(2021) 등을 제작한 대중 아카이빙 전문기업 ‘일일공일팔’ 등이 그 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방송콘텐츠의 공적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방송사업자들이 공적 방송콘텐츠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주요 방송사들을 중심으로 국내 현황을 살폈다.

2018년을 전후로 지상파 방송사들의 프로그램 편성에서 눈에 띄는 변화 가운데 한 가지로 ‘파운드 푸티지(Found Footage)¹⁸⁾’를 활용해 제작한 콘텐츠가 많이 등장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는 기존에 있던 영상자료를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과거에도 전혀 없었던 사례는 아니다. 가령 과거에 <KBS 영상실록>(1995)이나, <인물현대사>(2003~2005), 그리고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1999~2005) 등 현대사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가 제작·방영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프로그램들은 자료화면을 편집하는 데 힘을 실기 보다는 관련 인물에 대한 인터뷰 장면이나 스튜디오 출연을 주요 소재로 활용하였다.

그런데 2018년, KBS가 방영한 <88/18>, 2019년 제작·방영된 <모던코리아> 등을 시작으로 최근 지상파에서는 각 사가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자료화면을 90% 이상 활용해 제작하는 ‘파운드푸티지 다큐’가 잇달아 제작되고 있다. 시사교양 장르뿐만 아니라, 뉴스나 예능, 생활정보 프로그램, 교육 등 거의 전방위적 장르에서 자료화면들을 적극 활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2020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제작을 위한 국내외 이동이 어려워지자 기존 프로그램을 선별, 재방영하는 사례도 늘었다.

18) 영화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습득영상’으로 번역한다. ‘파운드 푸티지’ 및 ‘습득 영상’은 영상창작 과정에서 활용된 아카이브 영상 자료를 지칭한다는 점을 감안해 본 연구에서는 ‘파운드 푸티지’란 용어를 영상 편집자가 직접 촬영한 영상이 아니라 다른 여러 출처에서 활용한 영상들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공공’의 개념과 동일한 의미로 보고 있다.

이처럼 ‘공영방송’으로 일컬어지는 지상파 방송들이 수십 년 동안 방송사업을 운영한 결과로 축적된 방송프로그램들을 현 시점의 제작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2000년대 중반 도입된 HD 제작시스템과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사업이 있다. 이에 이번 절에서는 국내 주요 방송사업자들의 아카이브 구축 현황 및 운영 실태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1. 국내 방송사업자들의 아카이브 구축 현황

1) 국내 방송사업자들의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개괄

<표 2-6> 방송사의 주요 미디어 관리 시스템

구분	주요 명칭	구축목적 및 특징
제작시스템	NPS (Network Production System) PAM (Production Asset Management) PDS (Production Digital System)	예능 등 제작 고성능 스토리지 편집 장비(NLE)연동 호흡이 긴 편집
뉴스제작 시스템	뉴스 NPS NDS (News Digital System)	뉴스 영상 제작 고성능 스토리지 편집 장비(NLE) 연동 대부분 하루 이내 편집
보도정보 시스템	NRCS(Newsroom Computing System)	뉴스 기사 작성, 큐시트작성, 보도 운영 기자, 데스크 작업 수행
아카이브 시스템	DAS (Digital Archive System) DAMS (Deep Archive Management) System (Digital Archive Management System)	영상아카이브 및 검색 테이프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장기간 영상 보관
송출 시스템	APC (Automatic Program Control)	TV편성 및 송출 방송영상 송출 삼중화, 사중화
배포 시스템	CMS (Content Management System) OVP (Online Video Platform)	홈페이지, VOD, SNS 등 배포 방송콘텐츠를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으로 배포, 판매

* 자료: 강진욱(2021).

2000년대 이후 대부분의 주요 지상파 방송사들은 디지털 제작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여러 이용자가 동시에 하나의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2004년, 지상파 방송사 중 SBS가 뉴스 부문 디지털 제작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가장 먼저 해당 작업을 시작하였고, 이후 KBS, MBC, 그리고 EBS 또한 뉴스·제작 부문에서 제작 효율화를 목적으로 디지털 제작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아카이브를 구축했다. 또한 이 시기에는 ICT 발전 및 그에 따른 HDTV 전환이 맞물려 지상파 방송사와 보도전문채널 및 종합편성채널, 그리고 외주제작사를 중심으로 취재 과정부터, 촬영, 편집, 제작, 그리고 송출에 이은 아카이빙까지 방송 제작 전 단계에서 디지털화가 정착되었다.

디지털 방송 제작시스템은 기존에 사용해온 테이프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제작한다는 의미에서 ‘테이프리스(Tapeless) 제작시스템’이나 다른 말로는 ‘파일기반 제작시스템’으로도 불리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미디어 자산관리 시스템(Media Asset Management, MAM)과 네트워크 기반 제작 시스템(Network Production System, NPS), 그리고 비선형 영상편집 시스템(Non Linear Editing System, NLE)등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2-6〉 참고).

2) KBS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

한국방송공사(KBS)는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기간방송’으로(『방송법』 제43조), 대한민국 정부가 100%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비중에 있어 매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수신료가 재원의 많은 부분을 구성한다. 수신료 외에도 목적 업무 수행을 위해서 방송광고 및 국가보조금 등으로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 KBS는 법적 근거에 의거, 부여받고 있는 공적 책무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국내에서 추진되어 온 공공 방송아카이브 구축 관련 정책¹⁹⁾에서 KBS의 참여는 항상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온 사항이기도 하다. 영국의 BBC 크리에이티브 라이선스 사업(2006) 및 일본의 NHK의 아카이브 개방 사례(2009)가 발표되면서, KBS 또한 공영방송의 책무를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수차례 아카이브 개방 계획을 검토한 바 있다.²⁰⁾

19)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방송프로그램보관소 사업(1998~20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 콘텐츠뱅크(2016~2018) 등

KBS 아카이브는 방영 프로그램과 취재 원본을 뜻하는 소재 영상, 그 외 음성과 사진, 그리고 도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사내의 모든 콘텐츠를 디지털화하고 이를 보존하는 디지털 아카이브 ‘K-DAS’ 를 구축하였고, 이를 사내 제작시스템과 연계하는 형태로 제작을 지원한다. 유형별로 비디오, 오디오, 사진, 문헌으로 구분하여 콘텐츠를 관리하고 있고, 현재 KBS 아카이브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소장량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필름 13만여 점과 테이프 25만여 점, 그리고 디지털파일 77만여 점이다.²¹⁾

KBS 아카이브는 사내 『콘텐츠 관리 규정』에 따라 사내 제작 목적 외 이용을 가능한 제한하고 있다.²²⁾ 사내 제작 목적 이외 콘텐츠 이용이 가능한 경우는 일부 MBC나 SBS 등 타 방송사의 자료협조 요청이 있을 시에 이를 지원하는 경우로 알려져 있다. 사실상 방송사 운영의 주요 재원이 수신료이며, 『방송법』상 공적 책무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 KBS 아카이브는 오랫동안 소장 자료 목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오랫동안 지적받아 왔다. KBS 아카이브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방영된 프로그램을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VOD로 제공하거나, 유튜브에 개설되어 있는 주제별 채널에서 아카이브를 활용해 제작한 콘텐츠를 공개하는 정도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KBS 관계자는 아카이브 외부개방이 저작권 및 초상권 이슈와 관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에 KBS는 자사가 발굴한 영상자료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공익성 강화에 힘쓰고 있다. 가령 2020년 ‘만삭의 위안부’ 등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발굴한 영상과 2021년 KBSITV에서 방영한 프로그램 <다큐인사이트- 오월의 기록 편>을 제작하는데

20) 2018년 2월 선임된 양승동 사장은 사장 후보 등록 당시 KBS 아카이브 및 플랫폼 개방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노컷뉴스, 2018, 2, 26). 또한 양승동 사장은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KBS 영상과 오디오를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공공 아카이브도 얼마 전부터 구축에 들어갔다’ 고 밝힌 바 있다(뉴시스, 2021, 10, 12).

21) KBS 아카이브 소장량 관련 정보는 다음 링크 참조: <http://kbsarchive.com/quantity/>.

22) 제20조(이용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방송용 오디오 및 비디오콘텐츠는 방송 제작 및 콘텐츠 사업 관련 부서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 한한다.

1. 본사의 집행기관 및 직원

2. 콘텐츠관리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자

제22조(콘텐츠 이용) ② 콘텐츠관리부서에서 대출·전송받은 콘텐츠는 전대하거나 타인에게 재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개인 소유의 저장매체로 전송받은 콘텐츠는 사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 삭제해야 한다(KBS 콘텐츠관리규정, 개정 2016.11.16: 제1354호)

활용된 해외 발굴 영상 등을 KBS<다큐인사이트>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공개한 사례가 그 예이다.



[그림 2-3] KBS <다큐인사이트- 오월의 기록 편>(2021) 예고 영상 캡처 화면

3) EBS 교육디지털리소스뱅크(EDRB)와 구독 서비스

EBS는 국내에서 방송 및 영상 아카이브 관련 정책 중에서도 특히 시청자 개방 정책을 비교적 빠르게 마련한 방송사 중 하나이다. 2010년 공교육 시스템에서 교육 방송콘텐츠를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교육디지털리소스뱅크(Educational Digital Resource Bank, EDRB)를 구축하였다. 이어서 2012년부터는 ‘EBS클립뱅크’란 서비스를 통해 학생 및 학부모, 그리고 교원 등이 방송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채널을 마련했다. 그러나 해당 서비스는 이용률이 저조해 2020년 1월 종료되었고, 일부 콘텐츠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 중이다.

EBS는 디지털 제작시스템 구축 당시에 보유 중인 콘텐츠 대부분을 파일형태로 변환해 프로그램 제작 및 각종 관련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즉, 디지털아카이브에 보관된 60만여 건 파일 자료가 방송 제작뿐만 아니라 대국민 공익사업에 활용된다는 것이다. 연간 평균적으로 방송콘텐츠 3만 5천여 건, 소재(영상) 자료 1만여 건, 음원 및 사진 등의 자료가 2만여 건 정도가 입수되고 있다. 영상, 음성, 사진 자료 등은 유형을 나누어 자료를 관리하

고 있고, 테이프 자료는 영구보존을 위해 방송자료 아카이브실 서고에서 관리 중이다(최효진, 2021).

현재 EBS에 구축된 디지털아카이브는 대부분 사내 이용에 활용되고 있다. 교육 디지털 리소스뱅크(EDRB)에 데이터화되어 있는 콘텐츠들은 학교 교육 지원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EBS 방송콘텐츠를 활용한 EBS TV, EBS 라디오, 그리고 다시 보기용 웹사이트 외에도 특정 교과목(영어, 수학, 소프트웨어, 종합외국어 등), 학급별(EBS 초등, 중등, EBSi 등), 교육대상별(시각 및 청각장애인 대상, 또는 다문화 한글 교육 등)로 교육플랫폼을 별도로 만들어서 유·무료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EBS에서 방영한 방송콘텐츠들은 자사 ‘유튜브’ 채널인 <EBS 컬렉션>²³⁾ 등을 통해 공개 중이다. 해당 채널을 통해 EBS가 보유하고 있는 과거 방송프로그램 가운데 양질의 콘텐츠를 선별해 숏폼(Short-form) 형태로 재가공해서 제공하는 방식이다. 2020년에는 방송콘텐츠를 활용해 <클래스 e> 등 9개의 구독 서비스²⁴⁾를 출시한 바 있다. 기존의 프로그램들을 새롭게 재구성하여 구독 서비스를 통해 제공 중인 콘텐츠들은 유튜브에는 공개하지 않고, VOD 결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정책 또한 폐기했다.

가령 교육콘텐츠를 활용한 구독 서비스인 <클래스e>는 EBS의 통합 강의 브랜드인데, 2020년 4월부터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동시에 서비스하고 있으며, 구독 서비스는 인터넷 강의 사이트를 통해 제공한다. EBS가 지난 20여 년간 제작해온 다양한 강의 프로그램 중에서 시의성 있는 프로그램들을 선별하였고, 그 결과 클래스 350여 개, 그리고 강의의 경우 대략 1,500여 편 이상을 확보했다. 확보한 자료들에 기반해 매월 새로운 클래스 10개, 그리고 100편의 강의를 업데이트 중이다. 구독료는 ‘EBS수능’ 교재 모델을 벤치마킹해 시장에서 최저가인 월 4,900원으로 책정했다. 아직은 해당 서비스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기에 이른 시점이긴 하지만, 전년 대비 VOD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사실 <클래스e>와 같이 EBS 방송콘텐츠를 활용한 구독 서비스들을 놓고, EBS 사내에서 해당 과금 모델이 과연 공영방송에서 추진하기에 적절한 모델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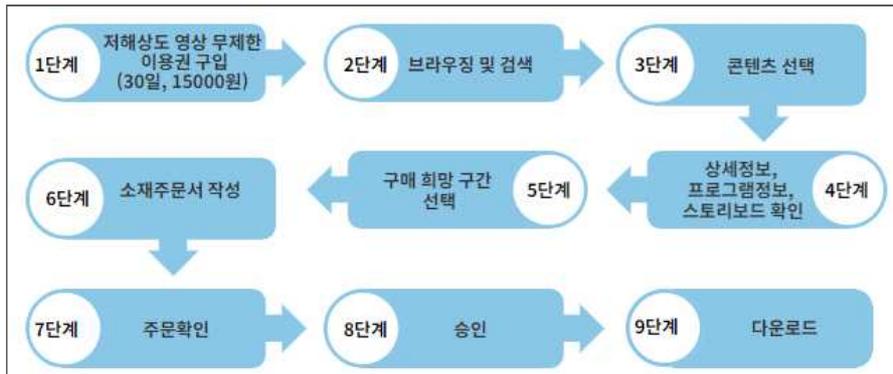
23) EBS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이 외에도 <EBS STORY>, <EBS Culture>, <EBS Documentary>, <EBS Learning> 등이 있다.

24) <오디오 어학당>, <애니키즈>, <클래스e>, <다큐프라임>, <세상의 모든 기행>, <지식채널e>, <EBR>, <D-BOX>, <명의>

다.²⁵⁾ 이에 EBS가 현재 운영 중인 유료 구독 서비스가 EBS 시청자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인지에 대한 평가 및 그에 따른 매출, 조회 수 등에서 여러 성과 지표들에 대한 성공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4) MBC 디지털아카이브 기반 저작권 판매 플랫폼

2015년, MBC는 아카이브 전용 플랫폼을 개설하였다. 이는 B2B 전용으로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콘텐츠에 대해 법인사업자들이 검색하고 열람하며 필요 시 저작권을 구매할 수도 있도록 한 것이다. MBC는 다른 지상파 방송사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이른 시기에 B2B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대략 23만여 건의 자료들을 구독 기관 이용자(연구, 업무,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한 학교, 도서관, 기업, 기관 등)들에게 제공 중이다.



[그림 2-4] MBC 아카이브 저작권 판매 절차

해당 시스템은 주제별로 검색하여 콘텐츠를 찾아볼 수 있다. 이때 주제 분류는 18개 대

25) 방송사 최초의 구독 모델 적용을 앞두고 내부 우려가 많았다. “대세는 유튜브인데 플랫폼 비즈니스가 될까?”,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있어?”, “과금을 내세우는 모델이 지상파 TV의 길은 아니지 않을까?”, “방송의 공공성을 놓치면 소탐대실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구독 서비스 출시 전 들었던 우려는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공영 미디어가 가도 되는 길인가? 나아가 생존할 수 있는가? 등…(김민태, 2021,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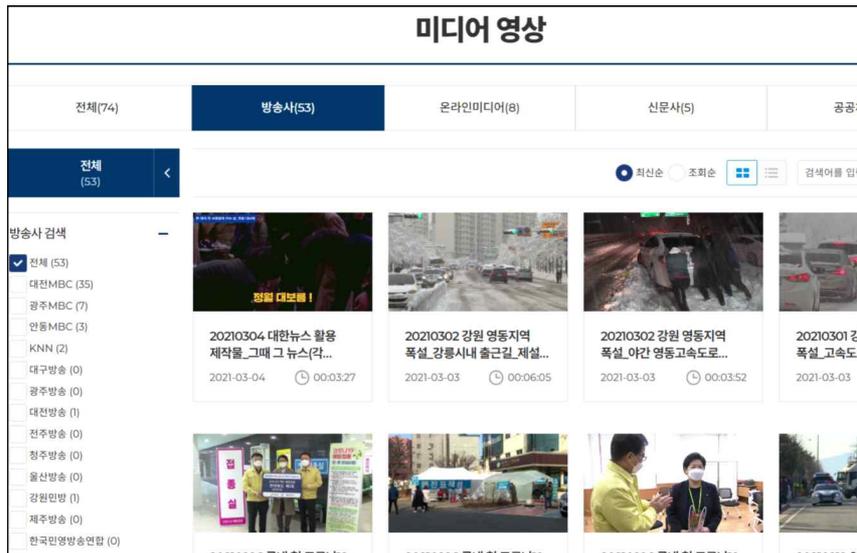
주제(자연, 환경, 역사 등)와 각각의 세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시스템은 대표 이미 지인 섬네일뿐만 아니라 제목 및 부제, 방송(촬영) 일자, 영상 길이 및 과금 정보 등을 함께 제시한다. 한편, 앞서 언급한 구독 서비스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저작권을 판매하는 경우와 달리 특정 장르만 제한적으로 이용 가능한데, 다큐멘터리를 포함한 시사교양 장르, 그리고 뉴스와 촬영 원본 영상들이 그것이다.

MBC는 다른 방송사들과 비교했을 때 콘텐츠를 개방하고 2차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가장 빠르게 수립하였음에도 이를 B2B 전용 서비스로 제한해 일반 시청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적극적인 공공 서비스로 보기에는 어려운 지점이 있다.

5) KTV 나누리

KTV는 과거 <대한뉴스>를 제작해온 국립영화제작소가 발전한 정부 정책 방송기관이다. 최근 KTV가 보유하고 있는 영상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정책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공유하고자 하는 홍보, 또는 소통의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KTV는 정부 부처가 제작한 영상을 신속히 공개하고 이를 국정기록물로서 체계적으로 보존 및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방공유포털’ 사업을 추진하였다(오마이뉴스, 2020.6.15). 2019년 7월에 ‘공유개방 포털 아카이브 운영팀’을 신설하였으며, 2020년 3월에 실제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2020년 7월에 공개한 ‘KTV 나누리’는 점진적으로 협약 기관을 확대 중이다. 2022년 10월을 기준으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56개의 정부 기관과 한국지역민방협회 소속 방송사업자(9개사), 지역MBC 계열사(16개사)뿐만 아니라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신문사(9개사), 그리고 온라인미디어 3개 매체 등 총 96여 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KTV는 향후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그리고 외신통신사와 공공채널(국방TV, 국회방송) 등 계속해서 협약 기관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림 2-5] KTV 개방공유포털사이트 ‘나누리’ 미디어 영상 검색 화면

해당 사업은 KTV와 정부 부처의 콘텐츠를 미디어 사업자들이 열람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이후에 협약을 맺은 미디어 사업자들이 보유한 영상자료 또한 해당 포털에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운용되는 저작권 판매를 목적으로 한 플랫폼들과는 차이가 있는 지점이다. 해당 협약이 이뤄지기 전에는 미디어 사업자 등 이용자들이 KTV의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입이란 절차가 필요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을 통해 협약을 맺은 사업자들의 경우, 별도의 과금 없이 무료로 자료들을 활용하는 대신 그에 응당한 대가로 자신들의 자료들을 업로드 하는 방식이다. 현재 ‘KTV 나누리’는 정부 부처 기관들에게는 각 기관장의 일정, 정책 브리핑이나 토론회 및 공청회 등 자체적으로 생산한 영상 자료를, 미디어 사업자들로부터는 해당 지역 관련 콘텐츠를 공유받고 있다.

그러나 상기 협약은 실질적으로 상호 교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21년 기준, 포털에서 다운로드한 영상은 4천여 건이 되는 반면, 업로드 건은 6백여 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업로드 자체가 강제 사항이 아닌 사업자들의 자발성에 기반한 것이며, 사실상 저작권 이슈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기타 중소방송사, 독립제작사, 지역방송 등

국내 디지털 제작시스템 및 디지털아카이브 사업은 방송사별로 편차가 매우 크다. 앞서 언급한 지상파 방송사들과 같은 대형 방송사들의 경우, 이미 자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지역 방송사 및 영세한 중소 방송사들의 경우에는 구축을 위한 비용 문제 및 열악한 보존환경 등 여러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아카이브 구축이 어려운 실정이다.

중소방송사·제작사들의 경우, 흔히 외주제작사로 불리는 독립 제작사, 독립 PD/VJ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에는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독립제작사들은 편집실, 녹음실, 스튜디오 등 제작에 필요한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타 제작사의 시설을 임대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독립 제작사로 대표되는 중소방송사들의 경우 최종적으로 납품한 콘텐츠 외에 원본 자료를 자체적으로 아카이빙할 시스템을 구축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에 한계가 있는 방송사들 중에서도 지역 방송사들의 경우에는 정부의 (재)허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지역성과 다양성 구현,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기여’ 하는 공적 책임²⁶⁾이 있는 방송사업자이지만, 사업자별로 아카이브 구축 현황의 편차가 매우 큰 실정이다. 가령 『2020 방송산업실태조사』를 보면, 전국 17개 사로 구성된 지역 MBC들 중에는 6개 사업자가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그 외 다른 지역 민영 방송사들 중에서는 전국에서 11개 사업자들만이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실제 지역 MBC의 경우, 1980년대 이후부터 이들이 생산한 방송콘텐츠는 대략 70만 시간의 분량이며, 부산 MBC가 24만여 시간으로 가장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고, 원주 MBC가 대략 1만여 시간이 안되는 정도의 분량을 보유하고 있어 아카이브 자료에 있어 최소 보유 사업자로 확인된다.²⁷⁾ 한편 김은총과 김수정(2017)은 지역 MBC를 포함한 여타 지역 방송사들의 실무자들을 면담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보유 기록물 현황에 대한 파

26)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1조

27) 이는 SD 및 HD급 테이프 자료와 파일형태의 영상 자료를 모두 포함한 수치이며, 아날로그 매체로 보관된 자료의 영상 길이는 테이프 수량과 러닝타임을 산술적으로 계산한 결과이다. 보다 정확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강병규, 2020, 11월).

약조차 정확히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을 포착했다.

2. 주요 방송사업자들의 아카이브 특징과 문제점

국내 주요 방송사업자들의 아카이브 현황을 살펴본 결과, 시청자의 개인적 수요에 따라 연구, 교육, 창작에 시청자가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 서비스가 부재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방송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지상파 방송사는 2000년대 중반 디지털아카이브를 구축했음에도 대부분 이를 사내 이용에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내 제작진들이 소장 자료를 활용해 또 다른 방영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최근에는 방송사업자들이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과거 자료들을 활용해 ‘디지털콘텐츠’를 별도로 제작하여 공개하기도 했다. 그 외 자사 수익 창출을 위해 B2B 플랫폼 구축 및 구독 서비스 등 배타적으로 사내 소장자료를 활용하고 있었다. 일부 방송사들의 경우, 자사 웹사이트나 유튜브 등에서 무료로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 또한 광고에 기반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완전한 무료 서비스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처럼 지상파 방송사들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아카이브 시스템을 통해 여러 방식의 콘텐츠 제공 서비스를 수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식들은 모두 공익적 차원의 활동이기 보다는 수익 창출을 주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사실상 점차적으로 ‘공공’의 범위가 복잡다기해지고 있고, 그에 따라 여러 개인/집단에서 공공적 차원의 수요가 증폭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 영역에 위치해 있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콘텐츠들 중 공익적 차원에서 시청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방송 외 국내 공공 아카이브 현황

방송콘텐츠 관련 공공 아카이브 구축을 논의하기에 앞서 2022년 현재 정부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 아카이브 현황을 살펴본다. 현황에는 설치 연도, 조직 형태, 근거 법령, 보유 자료 및 주요 사업 내용 등을 담았다.

<표 2-7> 국립국악원 ‘국악 아카이브’

구분	내용
설치년도	2012년
조직형태	소속기관
근거법령	<p>국립국악원 자료 관리 규정 제5조(자료관리 일반) ① 국악아카이브와 국악자료실은 다음 각 호의 자료관리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료의 수집, 분류, 관리, 보존, 서비스 2. 수집 자료에 대한 저작권 등의 권리 처리 3. 국내 및 국외 자료집성 4. 기타 국악아카이브와 국악자료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 <p>② 국악아카이브의 소관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표를 목적으로 제작·가공되지 아니한 자료 2. 국립국악원이 공표를 목적으로 제작한 자료의 원시자료 3. 국립국악원과 소속국악원의 공연, 행사 등을 기록한 자료 <p>③ 국악자료실의 소관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표를 목적으로 제작·가공된 자료 2. 제2항제1호의 자료를 열람·복제 등 서비스를 위해 재가공한 자료
예산(백만원)	87,487(2022년 기준)
직원수(명)	196(2022. 1. 1 기준)
보유자료(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42,146건(2022. 6. 5.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영상 6,172건 - 음향 6,761건 - 이미지 3,632건 - 텍스트 10,370건 - 복합 12,372건 - 유물 1,609건 - 기타 1,230건
주요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 음악, 무용, 연희 및 창작 국악 등 국악 자원 조사·수집·관리·보존 · 수집한 자료의 세부 정보 정리 및 디지털 변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본과 복제본을 향온향습실에 보존 · 저작권을 확보한 자료를 선별 가공하여 인터넷 통한 열람 서비스 제공
기타	http://archive.gugak.go.kr

<표 2-8> 국립중앙극장 ‘별별 스테이지’

구분	내용
설치년도	2021년
조직형태	소속기관
근거법령	<p>국립극장설치법</p> <p>제1조 민족예술의 발전과 연극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립극장을 경영할 수 있다.</p> <p>제5조 본법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p> <p>제1장 총칙</p> <p>제3조(소관업무) 극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우리의 고전과 창작극을 발전시키고, 외래문화를 창조적으로 수용하여 민족예술의 정통성과 정체성의 확보 및 문화의 다양성 확산 2. 국가를 대표하는 수준 높은 공연예술 작품의 상시 제작 보급 및 국제교류 협력망 구축 3. 예술이 지닌 고유한 가치와 문화의 다양성을 학교나 사회가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예술교육의 개발·운영 4. 공연예술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보관·정보화 등을 통하여 공연예술의 학문적 체계 정립·연구·보급 5. 무대예술 전문인력 및 예술가 양성에 관한 사항 6. 기타 극장의 임무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예산(백만원)	36,608(2020년 기준)
직원수(명)	92(2020. 12. 31 기준)
보유자료(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67,637건(2022. 6. 5.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정보 전체 67,489건(연극 11,916건, 무용 5,154건, 서양음악 24,997건, 한국음악 4,588건, 음악극 11,821건, 복합장르 7,950, 기타 1,063건) - 공연예술인 전체 148건(창작자 19건, 실연자 70건, 스태프 35건, 지원인력 18건, 연구자 6건)
주요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극, 무용, 음악, 연희 등 다양한 현대공연 예술 관련 정보 제공 · 포스터, 프로그램북, 전단지, 사진, 영상, 음향, 대본 등 자료 열람 · 국립 예술단체의 공연 레퍼토리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극단, 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국립교향악단, 국립국악관현악단, 국립현대무용단, 국립가무단 등 · 공연예술 종합 서비스 플랫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자료 포함 공연예술인, 공연장, 공연 소식, 공연 통계 등 정보 제공
기타	https://archive.ntok.go.kr

<표 2-9> 국립민속박물관 ‘민속 아카이브’

구분	내용
설치년도	2007년
조직형태	소속기관
근거법령	<p>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장 총칙 제4조(사업) ①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박물관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2.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3. 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4. 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강습회·영사회(映寫會)·연구회·전람회·전시회·발표회·감상회·탐사회·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5. 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6.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간행물·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6의2.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7.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p>②미술관 사업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박물관자료”는 “미술관자료”로 보며, 제6호 및 제7호 중 “박물관”은 “미술관”으로 본다.</p>
예산(백만원)	29,440(2022년)
직원수(명)	93 (2022. 1. 3. 기준)
보유자료(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011,386건(2021. 5. 31. 기준) - 사진 977,654점 - 음원 7,244점 - 영상 11,667점 - 문서 등 기타자료 14,821점
주요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속·생활문화·인류학·박물관학과 관련 있고, 보존가치가 있는 국내외 아카이브 자료를 수집(기증, 자체 생산 등) · 수집한 자료를 연구, 전시, 교육, 열람에 활용 · 박물관 소장품에 대한 정보를 풍부하게 지원 · 박물관 활동 및 주제연구를 뒷받침할 정보 제공 · 대국민 정보서비스를 통해 민속의 다양한 기록물 보존 및 공유 가치 제고
기타	https://www.nfm.go.kr/home/subIndex/121.do

<표 2-10>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구분	내용
설치년도	2006년
조직형태	소속기관
근거법령	<p>도서관법 제3장 국립중앙도서관 제20조의2(온라인 자료의 수집)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보존하여야 한다.</p> <p>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자료가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의하여 수집이 제한되는 경우 해당 온라인 자료 제공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온라인 자료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③ 수집된 온라인 자료에 본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해당 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p> <p>⑤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온라인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p> <p>⑥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선정·종류·형태와 수집 절차 및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예산(백만원)	109,888(2022년)
직원수(명)	285(2021. 12. 31. 기준)
보유자료(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6,935,041건(2022. 6. 5. 기준) - 고신문 디지털화 자료 신문 종수 98건
주요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신문 영구보존을 위한 디지털화 작업 - 현재 근현대사 연구, 교육, 출판, 영화제작, 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자료로서 제공
기타	https://www.nl.go.kr/newspaper

<표 2-11> 국립중앙도서관 ‘OASIS(Online Archiving & Searching Internet Sources)’

구분	내용
설치년도	2004년
조직형태	소속기관
근거법령	<p>도서관법</p> <p>제3장 국립중앙도서관</p> <p>제20조의2(온라인 자료의 수집)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보존하여야 한다.</p> <p>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자료가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의하여 수집이 제한되는 경우 해당 온라인 자료 제공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온라인 자료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③ 수집된 온라인 자료에 본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해당 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p> <p>⑤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온라인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p> <p>⑥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선정·종류·형태와 수집 절차 및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예산(백만원)	109,888(2022년)
직원수(명)	285(2021. 12. 31. 기준)
보유자료(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556,756건(2022. 6. 5. 기준) - 웹사이트 604,526건 - 웹문서 917,952건 - 동영상파일 12,074건 - 이미지파일 22,204건
주요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지적 문화유산을 국가적 차원에서 수집 및 보존해 후대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온라인 디지털 자원 수집 · 주제별 컬렉션 제공: 총류/철학/종교/사회과학/자연과학/기술과학/예술/언어/문학/역사 · 그 외 재난아카이브(1995-2020), (지자체, 정부기관, 공공기관 등) 소셜미디어 자료 보존 및 제공
기타	https://www.nl.go.kr/oasis

<표 2-12> 국립중앙도서관 ‘코리안메모리’

구분	내용
설치년도	2004년
조직형태	소속기관
근거법령	<p>도서관법 제3장 국립중앙도서관 제20조의2(온라인 자료의 수집)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보존하여야 한다.</p> <p>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자료가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의하여 수집이 제한되는 경우 해당 온라인 자료 제공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온라인 자료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③ 수집된 온라인 자료에 본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해당 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p> <p>⑤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온라인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p> <p>⑥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선정·종류·형태와 수집 절차 및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예산(백만원)	109,888(2022년)
직원수(명)	285(2021. 12. 31. 기준)
보유자료(건)	· 파악 불가
주요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문화예술·개인 등 국가 공동체의 역사·문화·예술에 대한 집합적 기억을 담은 지식자원을 수집·보존 및 디지털화 · 지식문화유산 디지털아카이브 플랫폼을 개발, 지원 및 공동 활용 · 디지털화된 자료 중 특색있는 자료를 모아 ‘컬렉션’으로 제공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기준, 행정안전부 관련 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운영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포함 총 22개 도서관 참여 중 http://www.nl.go.kr/koreanmemory

<표 2-13> 국립한글박물관 ‘디지털한글박물관’

구분	내용
설치년도	2015년
조직형태	소속기관
근거법령	<p>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장의3 국립한글박물관 제40조의4(국립한글박물관)④ 전시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시 및 자료수집·보존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상설·기획·특별 전시 계획의 수립 및 운영 3. 전시실의 관리 및 운영 4. 전시실의 구성·연출 및 전시 홍보물 등 디자인에 관한 사항 5. 관람안내 종합계획 수립·전시 안내 및 전시콘텐츠 개발·운영 6. 한글 관련 자료의 국내외 전시 및 지원 7. 자료의 수집·수탁·등록 및 관리 8. 소장자료의 과학적 보존 처리 및 연구 9. 소장자료의 대여·복제·복사·모조·촬영 등의 허가 10. 수장고 및 보존과학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11. 한글자료 기증자 예우에 관한 사항 12. 국내외 관련 기관의 자료 보존 처리 지원 13. 한글 관련 자료의 아카이브 기획 및 구축·운영 14. 자료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5. 한글누리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한글 자료의 문화 상품화에 관한 사항
예산(백만원)	17,846(2021년)
직원수(명)	137(2021년 12. 31. 기준)
보유자료(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5,673건(2022. 6. 5. 기준) - 유물류 3,750건, 간행물류 64건, 문서류 70건, 시청각류 1,392건, 박물관류 240건
주요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 소장품 검색을 위한 소장자료 원문 이미지 구축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중 귀중본 고전적 등 멸실 속도가 빠른 자료들을 우선으로 원문 전체를 디지털화하여 이용자의 자료 접근성 및 활용성 제고 · 박물관 생산자료 아카이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 고유사업 및 활동에서 생산된 자료와 한글 관련 기록물을 영상, 이미지, 문서 등 다양한 매체로 제공 - 한글문화인물 구술채록 사업 · 박물관 수집자료 아카이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및 유관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한글 관련 자료들을 수집·제공
기타	https://archives.hangeul.go.kr

<표 2-14>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근현대사 아카이브’

구분	내용
설치년도	2010년
조직형태	소속기관
근거법령	<p>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 1장 총칙 제 4조(사업) ①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박물관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2.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3. 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4. 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강습회·영사회(映寫會)·연구회·전람회·전시회·발표회·감상회·탐사회·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5. 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6.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간행물·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p>6의2.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7.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p> <p>②미술관 사업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박물관자료”는 “미술관자료”로 보며, 제6호 및 제7호 중 “박물관”은 “미술관”으로 본다.</p>
예산(백만원)	16,530(2021년)
보유자료(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96,172건(2020. 12. 31. 기준) - 온라인 공개 수량 19,790건
주요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현대문화유산 통합검색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수집한 소장들의 이미지 및 정보 통합 검색 ·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현대사 관련 기록물 적극 생산하여 박물관 고유 저작물 소장 비중 확대 · 근현대사 아카이브의 허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 및 개인이 소장하는 다양한 근현대사 기록물 서비스 연계 · 박물관 기록물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연구·교육 등 박물관의 다양한 사업과정과 결과를 기록·보존
기타	http://archive.much.go.kr

<표 2-15> 한국정책방송원 'e영상역사관'

구분	내용
설치년도	2015년
조직형태	소속기관
근거법령	<p>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한국정책방송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관업무)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라 한다)은 정부정책 관련 방송 프로그램 제작·송출,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정부 영상자료 아카이브 구축·서비스, 정부·공공기관 및 단체의 영상물 제작에 대한 협력·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적용범위) 방송원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예산(백만원)	-
직원수(명)	-
보유자료(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64,232건(2022. 6. 5. 기준) - 대한뉴스 2,008편, 대한뉴스 예비촬영본 1,155편, 미공개 대한뉴스 1,470편 - 분야별기록영상 2,571편, 대통령기록영상 2,587편, 국가기록음성 1,076편 - 국가기록사진 44,971컷, 정부기록사진 5,942컷, 한국소개사진 2,452컷
주요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카이브 포털 서비스 단계적 확대 · 아카이브 콘텐츠 다양화·고품질화 · 아카이브 서비스 개선 · 원활한 개방공유 기반 정비
기타	https://www.ehistory.go.kr

<표 2-16> 국립극단 ‘국립극단 아카이브’

구분	내용
설치년도	2020년
조직형태	관련기관
근거법령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①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재원(백만원)	국고보조 11,451(2022년)
예산(백만원)	13,817(2022년)
직원수(명)	58 (2022. 1. 1 기준)
보유자료(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25,638건(2022. 6. 5. 기준) - 공연활동 1,471건 - 인물/단체 9,053건 - 작품 720건 - 공연자료 3,718건 - 등장인물 7,213건 - 학술보도 3,076건 - 사건 144건 - 장소 243건
주요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극 관련 정보를 손쉽게 탐색할 수 있는 상호 유기적 관계의 아카이브 구축 · 연극에 관심있는 이들, 뿐만 아니라 미래 연극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무료 개방 · 한국 연극의 기록을 담은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매년 국립극단에서 제작되는 공연, 활동, 정보들을 업데이트
기타	http://archive.ntck.or.kr

<표 2-17>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아시아문화 아카이브’

구분	내용
설치년도	2015년
조직형태	관련기관
근거법령	<p>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5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립 등 제28조(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설립) ① 국가는 아시아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의 진흥·보급 및 이용 촉진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문화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문화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문화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아시아 문화 관련 어린이 체험·교육시설 운영 2. 아시아 문화 관련 콘텐츠의 활용·유통 3. 문화관광상품의 개발과 제작 및 보급 4. 문화상품점, 식음료 매장, 그 밖의 편의 시설 등의 운영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그 밖에 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⑤ 문화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국가는 문화재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문화재단에 무상으로 양여 및 대부할 수 있다.</p>
보유자료(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68,292건(2022. 6. 5. 기준) - 디지털아이템 44,823건(이미지 39,485건, 동영상 4,479건, 음원 234건, 문서 580건, 기타 45건) - 실물아이템 23,469건(테이프/LP 1,829건, 박물류 3,884건, 필름/사진 11,759건, 도서/간행물 1,317, 공연/전시인쇄물 1,444건, CD/DVD 305건, 문서 2,520건, 지도/도면 327건, 학위/학술논문 5건, 기타 79건)
주요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의 문화 다양성과 창의성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보존을 목적 - 전시·교육·공연 등 콘텐츠 개발 시 원천소스로 활용 · 전문주제 컬렉션 - 아시아의 사진, 아시아의 근현대 건축, 아시아의 소리와 음악 등 · 기증 컬렉션 · ACC 콘텐츠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진행한 공연, 전시, 교육 등 · 기획 콘텐츠
기타	http://archive.acc.go.kr/

<표 2-18>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학 다국어 아카이브’

구분	내용
설치년도	2001년
조직형태	관련기관
근거법령	<p>문학진흥법 제13조(한국문학번역원) ① 체계적인 한국문학의 번역·출판과 해외 홍보·교류 사업을 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을 둔다. ② 한국문학번역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문학번역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한국문학의 번역·출판 사업 2. 한국문학의 번역가 양성 사업 3. 한국문학의 세계화 관련 기획·조사·연구 사업 4. 한국문학의 해외 교류·홍보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 5. 문학 교류 활성화를 위한 외국문학의 한국어 번역·출판 사업 6. 그 밖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p> <p>도서관법 제40조(등록 및 폐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전문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전문도서관을 설립(이하 “사립 전문도서관”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전문도서관의 설립자가 해당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p>
예산(백만원)	16,463(2022년)
직원수(명)	57(2021. 12. 31. 기준)
보유자료(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25,617건(2022. 6. 5. 기준) - 국내자료 12,729건 - 해외자료 12,888건
주요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ub Library Membership 및 국내외 기증 프로그램 - 한국문학 정보와 번역도서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 한국문학 번역도서 전시 지원 및 개최 - 한국학자, 외국인,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한국문학을 알리고 한국문학 번역의 역사를 소개 · 한국문학 작가명 데이터베이스 운영 - 작가의 다양한 이름 표기명을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기타	https://library.ltkorea.or.kr/

<표 2-1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예술기록원’

구분	내용
설치년도	1979년
조직형태	관련기관
근거법령	<p>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3. 남북 문화예술 교류 4. 국제 문화예술 교류 5.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5의2. 문화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용자 6.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의 출연 7.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경비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9. 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흥을 위한 사업 10.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p>제20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①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예산(백만원)	573,138(2022년)
직원수(명)	271(2021년 12. 31. 기준)
보유자료(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415,180건(2020. 3. 31. 기준) - 도서자료 104,718건, 비도서자료 232,282건, 영상자료 36,477건, 음악자료 40,808건, 기타 895건
주요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자료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수집 분야별 학예사가 주제를 기획하고 관련 자료를 발굴/수집 - 수증수집 예술가·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받는 수집 - 구입수집 시중에 유통되는 자료들을 직접 구입·구독하는 수집 · 한국근현대예술사 기술채록사업 · 공연 영상화 사업 · 한국연대음악 아카이브 ·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DA-Arts) · 예술강좌(ARKO 음악클럽)
기타	https://artsarchive.arko.or.kr

<표 2-20> 아르코예술기록원 ‘한국예술디지털아카이브’

구분	내용
설치년도	2015년
조직형태	관련기관
근거법령	<p>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3. 남북 문화예술 교류 4. 국제 문화예술 교류 5.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5의2. 문화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6.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의 출연 7.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경비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9. 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흥을 위한 사업 10.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p>제20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①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예산(백만원)	573,138(2022년)
직원수(명)	271(2021년 12. 31. 기준)
보유자료(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321,722건(2022. 6. 5. 기준) - 저널기사 90,796건, 도서 66,940건, 전시도록 43,214건 - 공연프로그램 40,250건, 음향 25,737건, 영상 25,216건 - 포스터 13,733건, 공연대본 8,508건, 사진 5,005건, 티켓류 2,324건
주요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자료의 체계적인 아카이빙을 지원하는 디지털 정보저장소 · 디지털 공간제공 및 통합적 활용 - 예술 자료를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공간 제공 · 한국 근현대 예술사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고가치의 예술기록물을 수집·보존 · 예술사 구술채록사업, 공연 영상화 사업 등 기초연구자료를 생산
기타	https://www.daarts.or.kr

<표 2-21>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아리랑 아카이브’

구분	내용
설치년도	2014년
조직형태	관련기관
근거법령	<p>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p> <p>제4조(설립허가) ①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p>②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p>③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예산(백만원)	14,249(2022년)
보유자료(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2,834건(2022. 6. 5. 기준) - 음원 870건 - 영상 149건 - 이미지 1,815건
주요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청·국립무형유산원·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협업) 아리랑 관련 콘텐츠 보존, 활용, 대중의 접근성 향상 목적 아카이브 구축 · SP·LP·TAPE·REEL·DAT 등 복각 음원 및 채집 음원을 디지털화 · 아리랑 공연 영상 및 아리랑 관련 각종 악보·가사지·각 시대상품 등을 디지털화 · 국가별·주제별·종류별 검색 기능을 구성 · 향후 아리랑 연구를 위한 기초적 토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아리랑 관련 자료 소장정보 목록> 및 <지역아리랑 보존회 현황>을 공개
기타	https://arirang.iha.go.kr

<표 2-22> 한국영상자료원 'KMDb'

구분	내용
설치년도	2006년
조직형태	관련기관
근거법령	<p>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①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수집·보존·전시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예술적·역사적·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한국영상자료원을 둔다.</p> <p>②한국영상자료원은 법인으로 한다.</p> <p>③한국영상자료원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및 직원을 둔다.</p> <p>④한국영상자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되는 영화필름등의 보존과 보상 2. 국내외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수집 3. 수집된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보존과 복원 4. 영상문화 발전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활용 및 전시 5. 영상정보화 및 콘텐츠 활용 사업 6. 그 밖에 한국영상자료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p>⑤한국영상자료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중 영상자료의 수집·보존·활용 및 한국영상자료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p>
예산(백만원)	17,183(2022년)
직원수(명)	97(2022. 3. 31. 기준)
보유자료(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841,018건(2022. 6. 5. 기준) - 필름/D 시네마 43,164건, 비디오 75,748건, 동영상 26,009건, 이미지 592,110건, 시나리오/콘티 46,995건, 도서/논문 3,450건, OST 12,207건, 심의서류 41,297, 박물관류 38건
주요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영화의 작품 및 영화인 정보, 동영상 이미지 등에 대한 검색서비스 제공 · 한국고전영화 약 380여편 온라인 감상 · 영화 비평, 칼럼 등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평론가 정성일, 허문영, 김형석 등 · 한국영화사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로영화인 구술채록문 및 발간도서, 영화연감 등
기타	https://www.koreafilm.or.kr/library

<표 2-23> 대통령기록관

구분	내용
설치년도	2006년
조직형태	소속기관
근거법령	<p>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대통령기록관의 설치·운영 제21조(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보존·열람 및 활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2조(대통령기록관의 기능) 대통령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대통령기록물의 수집·분류·평가·기술(記述)·보존·폐기 및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3. 비밀기록물 및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 4.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조치 해제 5. 대통령기록물의 공개열람·전시·교육 및 홍보 6. 대통령기록물 관련 연구 활동의 지원 7.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원 및 지도·점검 8. 제26조에 따른 개인기록물의 수집·관리 9. 그 밖에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보유자료(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31,320,028건(2021. 12. 31. 기준) - 문서 1,767,062건, 전자문서 1,877,123건, 시청각 3,946,581건, 행정박물 18,436건,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9,223,949건, 웹기록 14,448,213건, 간행물, 도서 등 38,664건
주요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기록물의 수집·생산기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기록물의 빠짐없는 생산 및 이관을 위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기록관리 컨설팅 - 역대 대통령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개인·단체 또는 기관 등 잠재적 기증자 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수집 추진 · 대통령기록물의 관리·기술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기록물 고유의 관리·기술(記述) 체계 구축을 통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존 및 활용 지원 - 대통령기록물 분류체계를 설계하고, 관련 규칙 및 지침 마련 · 대통령기록물의 보존·복원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기록물의 보존 인프라 및 복원 체계 구축을 통한 영구관리 - 국정 핵심기록물인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보안강화를 통해 보호 · 대통령기록물의 국민 친화적 서비스 체계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기록관 소장기록물에 대한 열람·활용·전시 등 대국민 서비스 전직 대통령, 정책입안자(기록생산자), 연구자 등 기록 관련 이용자를 위한 전문 열람환경 구축 및 학계·연구자 등을 위한 연구 프로그램 기획·운영

<표 2-2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오픈아카이브’

구분	내용
설치년도	2011년
조직형태	산하기관
근거법령	<p>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6조(사업) 기념사업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주화운동기념관(이하 “기념관” 이라 한다)의 건립 및 운영 2.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기 위한 사료의 수집, 보존, 전산화, 관리, 전시, 홍보, 조사 및 연구 3. 민주화운동 유적의 보존, 관리, 조사, 홍보 및 연구 4.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계승을 위한 사업 및 행사 5. 민주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6. 기념사업회 및 기념관에 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7. 기념사업회의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예산(백만원)	13,060(2022년)
직원수(명)	50(2021. 12. 31. 기준)
보유자료(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885,589건(2021. 12. 31.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 546,470건, 전자문서 219,742건 - 사진필름 58,734건, 전자사진필름 53,636건 - 음성영상 3,373건 - 박물 3,258건, 전자박물 376건
주요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화운동 관련 문건, 사진, 영상, 박물 사료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료 기증 안내 · 민주화운동 관련 구술 채록 · 민주화 운동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 사료 목록 등 민주화운동 관련 콘텐츠 인터넷 서비스 제공
기타	https://archives.kdemo.or.kr

4. 소결

이 절에서는 방송콘텐츠 공공 아카이브의 개념과 역할을 살피고, 국내 방송사업자들의 아카이브 구축 현황을 확인했다. 먼저 본 연구는 방송콘텐츠 관련 공공 아카이브를 방송사들이 제작하고 방영한 방송프로그램이 OTT 및 다른 온라인 서비스 등을 통해 유통된 방송콘텐츠들 중에서 교육 및 연구, 또는 비상업적 창작 등으로 대표되는 공공 활용이 가능한 형태로서 콘텐츠를 공개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일반적으로 공공 아카이브는 ①입수, ②관리 및 보존, 그리고 ③접근성 보장(공공활용) 등 3대 역할을 한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 및 제고하는 것과 저작권자들의 저작권 보호 책임 사이의 양대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현재 국내에는 부재한 방송콘텐츠 관련 공공 아카이브는 이러한 일반적인 공공 아카이브가 가져야 할 역할과 기능, 책임의 요건을 전제로 하여 설립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앞서 본 연구는 공공 아카이브를 설립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에 대해 창작 활성화 차원, 역사 문화적 차원, 대국민 문화 향유권 제고 차원에서 살펴본 바 있다

또한 국내 방송콘텐츠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주요 지상파 방송사(KBS, MBC, SBS, EBS)들과 KTV의 개방 공유 포털 사업, 그리고 중소 및 지역방송사들의 현황을 검토했다. 주요 지상파 방송사들은 2000년대 중반 이후 HD 제작시스템 도입을 하면서 디지털아카이브를 구축했고 현재까지도 그 운영 및 활용을 지속해오고 있다. 그러나 해당 시스템은 대부분 사내 활용 형태로 제한된 수준의 운영 방식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각 사에서 개설한 ‘유튜브’ 채널에 해당 자료를 게시함으로써 광고 수입 등의 재원으로 얻거나, 구독 서비스(EBS)나 저작권 사업(MBC), IP 판매 서비스(SBS) 등의 형태로 각 사의 제작 재원을 마련하는 데에 아카이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사실상 이러한 상황은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공공성’ 과 비교했을 때 자사 아카이브를 외부에 공개하고 2차적 활용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례는 여전히 드문 실정이다. 가령 예외적인 사례로 KBS는 2020년에 ‘만식의 위안부’ 영상을 비롯한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의 발굴 영상, 그리고 2021년 <다큐인사이트 - 오일의 기록 편> 제작 과정에서 수집된 외국 방송사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미공개 영상 등을 방송프로그램인 <다큐인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바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지상파 방송사의 제한적인 외부개방에 비해 KTV의 대국민 개방공유플랫폼인 <나누리>는 공공 아카이브 구축에 있어 참고할만한 지점이 많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20년 7월 출범한 해당 플랫폼은 KTV의 콘텐츠들을 미디어 사업자와 정부 공공 기관 등 대략 100여 개에 가까운 기관들이 ‘기관 ID’를 발급받아서 자유롭게 자료를 내려 받고 이를 제작에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미디어 사업자(지역 MBC 회원사, 지역민방협회 회원사, 지역신문협회 회원사 등) 또한 자사 콘텐츠를 게시할 수 있지만, 해당 콘텐츠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저작권 이슈로 인해 각 사업자들의 콘텐츠에 대한 상호 교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내 공공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서는 국내 방송사업자들과의 협의가 반드시, 그리고 선제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가령 KBS는 해외 기관에서 다큐 제작을 위해 발굴한 영상들 중 방송편집 과정에서 실제 방송에 활용되지 않은 미공개 영상을 공개한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관련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방송법』상 공적 책무가 강조되는 지상파 방송사업자들 모두에게 포괄적이고 일관된 아카이브 관련 의무사항을 부여하는 제도적 방법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물론 이 과정에서 현행 『저작권법』 등 콘텐츠에 대한 권리관계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검토해야 할 관련 법 검토 및 개정 작업 또한 함께 면밀히 수행되어야 하겠다.

제3절 해외 현황

이번 절에서는 해외에서 운영 중인 공공 아카이브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국내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시사점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에 각국의 공공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의 근거가 되는 ①법제 현황, ②자료 수집 범위, ③주요 서비스 및 이용 대상, ④재원 및 예산, 그리고 ⑤기타 아카이브 구축방식에 대해 차례로 살필 것이며, 이미 공공 차원에서 방송 및 영상 산업 관련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운영 중인 프랑스, 영국, 미국, 그리고 호주 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1. 프랑스

여러 국가들이 대체로 영화 의무제출제도는 시행 중인 반면, 방송 및 영상산업 분야 관련 의무제출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많지 않은 편이다(IASA, 2022).²⁸⁾ 프랑스의 경우, 방송·영상산업에 대한 의무제출제도를 운영 중인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인데, 1992년 ‘방송납본제’를 도입, 199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의 방송영상 자료 납본 기관인 국립방송연구소(Institut National de l’Audiovisuel, INA)는 방송 및 영상 콘텐츠 관련 국립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기관으로서 세계 여러 국가들에 참고할만한 모델로 평가 받고 있다(정희경·김희경·최효진, 2022: 97-98쪽).

1) 법제 현황

프랑스 내 공익을 목적으로 한 방송콘텐츠 수집·관리·활용을 다루고 있는 법률은 『문화유산법(Le Code de Patrimoine)』, 『커뮤니케이션법(La Loi n° 86-1067 du 30 septembre 1986 relative a la liberte de communication)』, 『지적재산법(Le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이 있다(정희경 등, 2022: 98쪽).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28) 국제영상음성아카이브협회(IASA)는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과 협업하여 2008년부터 영상 납본제 운영 기관을 전수조사,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IASA, 2022).

<표 2-25> 프랑스 방송통신 콘텐츠 공공 활용 관련 법

구분	문화유산법	커뮤니케이션법	지적재산법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납본제 및 웹납본제 시행 근거 · 의무제출 대상, 방법, 근거 명시 · 통신콘텐츠 수집에 관한 조항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 INA의 역할, 운영재원, 콘텐츠 공공활용 관련 조항 명시 · 연구, 교육, 창작 자원으로 공공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작자들의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 납본제 시행과는 별개로 창작자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 강조

* 자료: 정희경 등(2022), p.99.

먼저, 납본제 시행의 근거가 되는 『문화유산법』은 『납본에 관한 법률(납본법) La Loi no 92-546 du 20 juin 1992 relative au depot legal』(1992년 제정)에 의거, 프랑스에서 1995년 이후 방영된 모든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제출받고, 이를 ‘문화유산’의 자격으로 관리하고 있다(정희경 등, 2022: p.99).

<표 2-26> 프랑스 『문화유산법』 방송납본제 관련 주요 내용

구분	내용
INA의 역할	(R132-33) INA는 방송과 시청각 자료에 대한 수집과 납본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 기관은 프랑스국립중앙도서관(BNF)과 함께 이미지·음성 등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관련 기록 일체를 수집, 관리한다. 기관은 법률에 정의된 목적 및 조건에 따라 법적 납본을 담당한다.
의무제출 대상	(R132-34) 프랑스에서 방송된 TV와 라디오의 방영물(『방송법』에 명기된 일부 지역·독립방송사는 제외)은 INA에 제출해야 한다. 일반인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R132-35, R-132-36) 프랑스에서 제작·방영된 다음과 같은 분류의 방송프로그램은 반드시 Ina에 제출하고, INA는 이를 수집·보존한다 - 매거진(정보) 및 스튜디오에서 녹화된 프로그램 일체, 정보프로그램, ‘커뮤니케이션법’에 의해 규정된 영화·방송작품(Oeuvre audiovisuelles), 버라이어티, 광고, 국·공립기관에 의해 제작된 프로그램
의무제출 방법	(R132-38) 방송사는 방송 15일전에 INA에 제출할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R132-39) 최초로 방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이 이뤄져야 한다. 제출의 양식과 조건, 기술적인 기준은 INA의 제안에 따라 주무장관에 의해 정해진 법령에 따른다.

자료: 최효진(2021); 정희경 등(2022), p.99.

2006년에는 ‘웹 납본제’ 를 시행하였는데, 이를 통해 온라인에서 제공된 방송콘텐츠 또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의무 납본해야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정회경 등, 2022: pp.97-98).

<표 2-27> 프랑스 『문화유산법』 웹 납본제 관련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온라인 배포콘텐츠 의무제출 (웹납본제) 대상 및 방법	(R132-41) 온라인으로 방송된 방영물도 배포 시점부터 납본이 되어야 한다. (R132-42) 온라인 공중 통신 서비스 및 주문형 시청각 매체 서비스 (IPTV나 OTT 등) 에 대한 수집은 1년에 자동으로 한 번씩 한다. 암호화하는 경우 암호키를 제공하거나 영상의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자료: 정회경 등(2022), p.100.

<표 2-28> 프랑스 『커뮤니케이션법』 관련 주요 내용

구분	내용
INA 운영 재원	(Article 53) 프랑스 정부-프랑스텔레비지옹, 라디오프랑스, 해외 프랑스령 공영방송사, 아르테프랑스, INA등과의 협약에 따라 INA의 운영 재원은 정부에서 지원한다. 협약 기간은 3년에서 5년 사이로 정하고, 협약 내용에는 협약당사자, 운영재원의 규모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INA는 매년 입법기관 (국회)문화관광위원회에 정부예산 집행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INA 기능	(Article 49) EPIC(상업적·산업적 공공기관)으로서 INA는 국가 영상문화유산의 보존(conservator) 및 활용(mettre en valeur)을 담당한다. (Article 49 I.) INA는 국가 영상문화유산의 보존(conservator) 기능을 수행한다. 수집된 콘텐츠의 성격, 수집 비용, 활용 조건 등은 INA와 관련 사업자가 사이의 협약(Convention)에 따른다. (Article 49 II.) INA는 공영방송사의 방송아카이브 및 첫방송이후 저작권 보호기간이 종료된 방송프로그램 클립을 활용(exploiter)한다.
INA 수집콘텐츠 활용범위	(Article 49 III.) 수집된 자료가 공영방송 방영물이거나 디지털화되고 권리관계가 해소된 경우에 한해서, 문화향유·교육·연구·창작의 목적으로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공공 활용한다. 저작권자의 저작권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권리자의 권리보호를 준수한다.

자료: 정회경 등(2022), p.102.

INA가 수집한 콘텐츠에 대한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커뮤니케이션법』에 명시되어 있다. 동법 제49조에 따르면, 수집 자료가 공영방송콘텐츠이거나 디지털화된 자료, 또는 권리관계가 완전히 해소된 경우에 한해서, 문화 향유 및 교육, 연구, 그리고 창작의 목적으로 온라인에 공개하고 공공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적 근거에 의거, 공공 서비스 목적 하에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집된 콘텐츠 역시 공익의 목적에 따른 활용이 가능하지만, 저작권자와 INA의 협의에 의해 공개가 어렵다고 판단한 일부 콘텐츠의 경우에는 저작권 보호 기간, 즉 저작권자 사후 70년을 준수하고 그 이후에 공개해야 한다(정회경 등, 2022: p.101).

마지막으로 『저작권법』과 관련한 『지적재산법』은 1957년에 성문화된 『저작권법』을 현행화한 형태이다. 해당 작업은 1992년에 이루어졌는데, 『저작권법』이 『지식재산에 관한 법률(지식재산법) le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으로 전면 개정되었고, 이때 저작권 개념뿐만 아니라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 저작권 보호기간(70년) 등 저작권 관련 원칙 등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을 갖추게 되었다(정회경 등, 2022: p.102).

2000년대를 전후로 하는 프랑스 『저작권법』 개정 관련 특징을 살펴보면, 공익을 목적으로 한 정보 공개, 또는 공유와 관련한 기준들이 기존 『저작권법』과 균형을 이루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정회경 등, 2022: p.102). 해당 『지식재산법』에 의거, 저작권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저작물 이용, 또는 활용의 경우를 정리하면, <표2-5>와 같다.

<표 2-5> 프랑스 『지적재산법』 저작권 제한 관련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사적 활용	사적인 목적에 한정되고 단체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복사 및 복제
공공활용	저작자의 성명과 출처를 표시한다는 조건 아래 행해지는 인용, 언론논평, 시사보도, 사실 그대로의 전달, 미술 작품의 경매 전 공중에서 배포하는 카탈로그의 저작물 전부 또는 일부의 복제, 교육 목적의 저작물 공연 및 발췌, 교육 목적의 악보의 공연 및 복제, 저작물을 디지털 파일로 제작하면서 행해지는 복제, 패러디, 모방, 풍자, 데이터베이스의 일시적 복제,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기록보존소, 멀티미디어문화공간 등에서의 복제, 공공도서관, 박물관, 기록보존소 등에서 보존목적으로 행하는 복제, 잡지, 신문, 방송 등에서 미술작품 및 건축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게재, 전시, 방송하는 행위

자료: 한국저작권위원회(2022).

2) 자료 수집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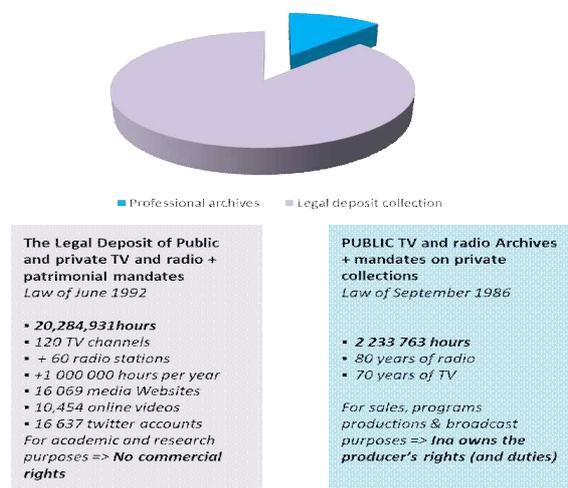
프랑스는 1995년에 방송 납본제, 2006년에 웹 납본제를 시행한 이후 당시에 생산해온 모든 텔레비전, 라디오 방영 콘텐츠 및 온라인 콘텐츠를 전량 수집하고 있다는 점에서 콘텐츠 수집범위에 있어 포괄성 및 망라성을 특징으로 한다고 볼 수 있겠다. 특히 디지털 방송 환경이 도입된 2000년대 이후에 방송 매체가 증가했고, 이에 따라 콘텐츠를 의무로 제출해야 하는 기관 또한 늘어났다. 방송 납본제만을 시행했던 과거에는 의무 제출 기관이 공영방송사와 라디오방송사 각각 7개사와 6개사에 불과했으나, 2020년 기준으로는 대략 184개사의 공영·민영 방송사들이 INA에 콘텐츠를 제출하고 있다. 연간 대략 1백만여 시간이 넘는 콘텐츠들이 INA에 입수되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정희경 등, 2022: p.100; INA, 2020).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2020년 기준 INA는 해외 프랑스로부터 포함, 120여 개의 텔레비전 채널(지상파, 케이블, 위성 텔레비전 포함)과 60여 개의 라디오 채널의 콘텐츠를 수집 중이며, 모두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있다.²⁹⁾ 『문화유산법』에 의거, INA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프로그램은 프랑스에서 방영된 모든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인데, 그 중 외주 제작 프로그램 등 일부의 경우 INA가 방송사와 협의하여 기획 수집 및 보관해야 하는 장르로 명기되어 있다.³⁰⁾ 이 같은 수집방법에 대한 구분을 구체적으로 해당 법에 명시한 것은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방식, 또는 장르에 따라 저작권 계약이 다르며, 그에 따른 공공 활용 방식 또한 구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온라인 콘텐츠의 경우, 2006년 시행되었지만 본격적인 수집은 2008년부터 이루어졌고, 2020년 기준 웹사이트(16,069개), ‘유튜

29) INA는 프랑스에서 디지털 방송을 도입한 이후, 실시간 수신을 통해 디지털 방송자료를 수집 중이다. 1994년부터 디지털 라디오 콘텐츠를 수집하였고, 2001년부터 디지털 텔레비전 콘텐츠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된다(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9: p.70).

30) 프랑스는 다른 국가의 국영·공영 방송 아카이브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방송납본제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문화유산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장르(프랑스에서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 R132-34) 외에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방영본을 편집하여 제출해야 하는 장르(픽션 제외 스튜디오 녹화물, 뉴스 제외 정보프로그램, 예능, 광고 등, R132-35), 추후에라도 방영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장르(라디오뉴스·문학·음악 관련 분야를 제외한 정보프로그램, 프로그램 내 인터뷰 등, R132-36) 등으로 구분해 제시하고 있다(정희경 등, 2022: p.106).

브’, ‘데일리모션’ 등으로 대표되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10,454개), 그리고 트위터 (15,637개) 등에서 콘텐츠를 수집 중이다(INA, 2020).³¹⁾



자료: INA(2020).

[그림 2-6] INA 수집량 및 활용 범위(2020년 말 기준)

2019년까지 INA에 수집된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 콘텐츠는 대략 2천 2백만여 시간에 달한다. 그중에서 ‘문화유산’의 자격을 얻고 보존용으로 수집되는 분량은 2천만여 시간이며, 저작권 판매가 가능한 대상은 2백만여 시간(대략 10% 이상의 비중)이다(정희경 등, 2022: pp.106-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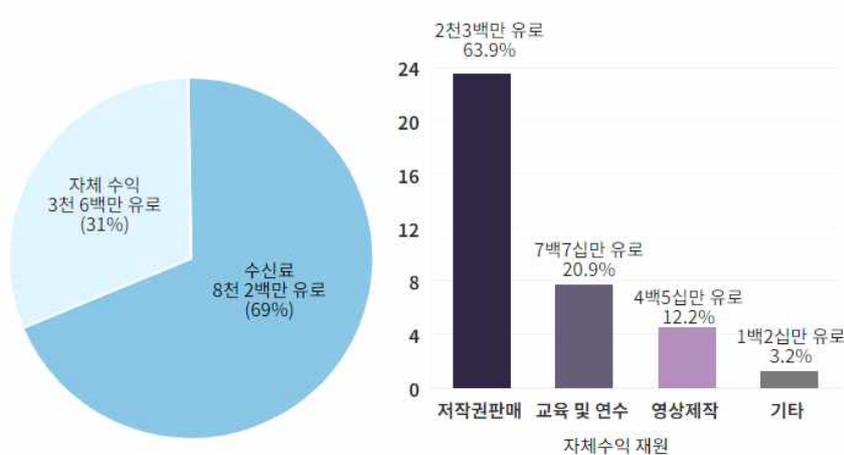
3) 재원 및 예산

『커뮤니케이션법』에 의거, INA의 재원은 가구당 수신료 중 일부로 마련된다는 점에서 준조세의 성격을 갖는다. 연간 가구당 수신료(2019년 기준 138유로) 중 대략 2.3%(2019년

31) 웹 납본제의 경우, 온라인 콘텐츠를 전량을 수집하기에 현실적·물리적 한계가 있어, INA가 마련한 수집기준, 즉 보존 가치를 갖는 대상을 선별적으로 수집한다는 점에서 전량 수집을 원칙으로 하는 방송 납본제와는 차이가 있다(정희경 등, 2022: 106쪽).

기준 3.17유로)가 INA의 운영 재원으로 활용된다. 이는 INA의 운영 재원 중 70%의 비중을 차지하며, 이를 통해 아카이브 운영에 있어 공공성을 확보한다(정회경 등, 2022: p.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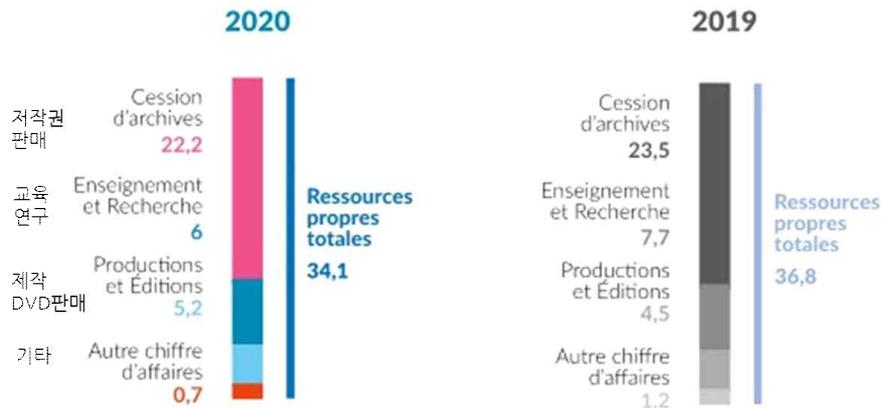
운영 재원 중 나머지 30%는 INA가 자체적으로 일부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마련된다. 이는 INA가 준시장형 공기업(EPIC)으로서 공공 기관임에도 일부 수익을 마련할 수 있는 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어 가능하다. 자체적으로 수익을 마련하는 방식은 저작권 판매, 방송전문교육, 그리고 영상 제작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프랑스 또한 수신료 규모가 최근 들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INA의 자체 수익 사업을 통한 재원 마련이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정회경 등, 2022: p.109).



* 자료: 최효진(2021).

[그림 2-7] 2019년 기준 INA 재원 구성

또한 전체 자체 수익 재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저작권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대략 63%를 차지하며, 금액으로는 2020년 기준 22.2억여 유로 정도에 해당한다. 이는 주로 공영방송사의 방영물에 대한 저작권 사업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INA, 2020).



* 자료: INA(2020)

[그림 2-8] INA 자체 수익 추이(2019-2020)

4) 아카이브 구축 방식

INA가 수집한 콘텐츠들은 모두 문화유산의 성격으로 입수된 것으로, 이것을 ‘보존’ 하는 것을 주된 가치로 삼는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콘텐츠/정보를 의무적으로 납본하고 그에 따른 열람 및 공개는 비교적 자유롭지만, 활용에 있어서는 꽤 까다로운 편이다.

우선 INA의 납본 담당 기관은 저작권 보호 관련 일련의 조치를 전제로 콘텐츠를 수집, 보관한다. 공공 차원의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집한 저작물에 대한 카탈로깅(목록화) 작업을 진행한다. 저작권 보호를 우선 가치로 삼고 있는 만큼 열람을 허용하는 데 있어서 지정된 열람 장소(공공도서관 등)에서만 열람 가능하다. 저작권자들의 경우, 납본제에 따라 공익적 목적하에 콘텐츠를 수집, 보존, 활용하는 데 있어 저작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이는 2021년을 기점으로 출판사, 실연자, 음반 제작사 등 저작인접권자들 또한 동일하게 확대/적용되었다(정회경 등, 2022: p.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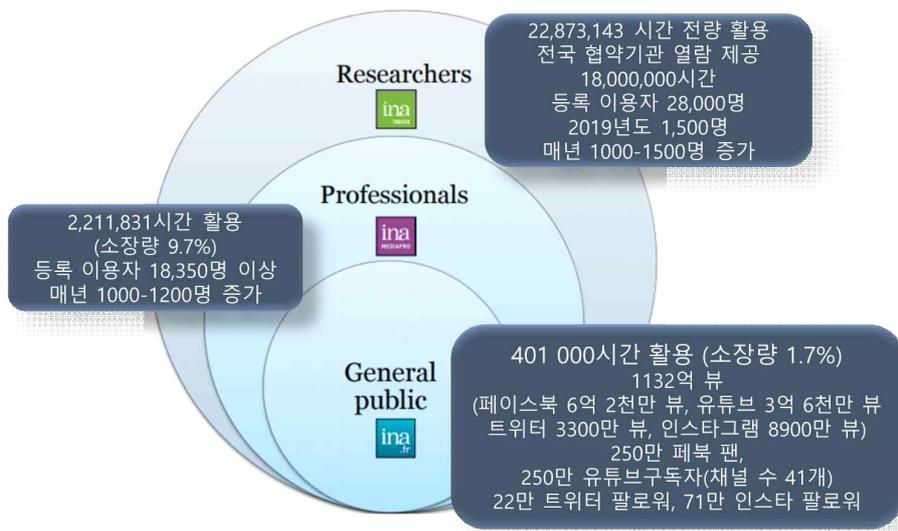
또한 열람 이후에는 해당 콘텐츠를 복제하거나 활용할 수 없다. 단, 필요 시 지정된 열람 장소에서 이미지 캡처 형태로 반출해 이를 인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역시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단, 복제, 나아가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작(인접권)자들의 이용 허락 절차가 필요하다. 또한 복제한 저작물을 온라인으로 배포해서도 안된다(정

회경 등, 2022: pp.104-105).

한편 INA는 프랑스 공영방송사들(RadioFrance, France2, France3, France5, Arte, FranceO 등) 내에 아카이빙 업무를 전담하는 상주 아키비스트팀을 운영 중이다. 방송납본제 시행 이후인 1998년부터 해당 조직은 운영되었는데, 방송사 직원들이 INA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저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가령 제작에 필요한 자료화면 검색, 또는 편집 등에 참여하는 방식이 그것이다(정회경 등, 2022: p.123).

5) 아카이브 활용 현황

INA에서 수집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콘텐츠는 『커뮤니케이션법』 제49조에 의거, 전 국민에게 공개된다. 공공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갖는 만큼 상업적 목적 하에 창작자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은 아니며, 이용자를 ‘교육·연구자(Researchers), 현업 이용자(Professionals), 일반이용자(General Public)’로 구분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정회경 등, 2022: p.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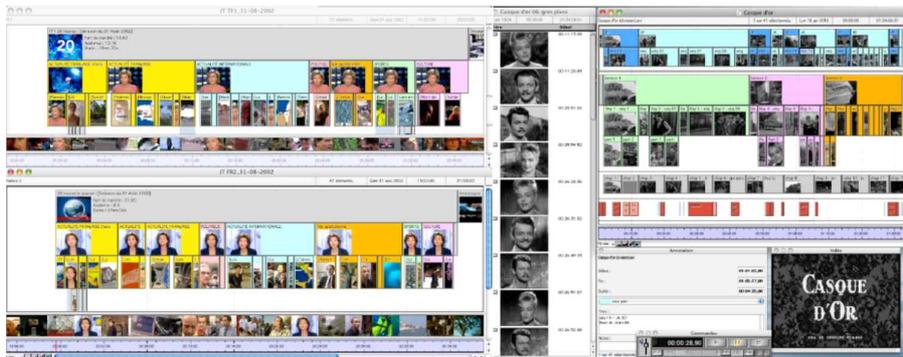


* 자료: 정회경 등(2022), p.108.

[그림 2-9] INA 공공서비스 구성과 이용자

먼저 교육·연구자들의 경우, 앞서 언급한 이나테크 및 그 외 다른 협약 기관에서 INA가 수집하고 있는 모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공익적 차원에서 연구 목적으로 자료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다(정회경 등, 2022: pp.106-108). 콘텐츠 공개 범위는 INA가 1995년에 납본제를 시행한 이후부터 수집된 방송 자료 전체이다. 2020년 기준 대략 2,200만여 시간의 분량이다(정회경 등, 2022: p.112).

수집한 콘텐츠는 열람공간 ‘이나테크(Inathèque)’ 와 그 외 협약을 맺은 기관 47개 기관에서 공개 증인데, 이나테크의 경우 프랑스 국립중앙도서관(BNF)와 INA 지부 6개³²⁾에 위치하며, 그 외 협약 기관은 전국에 있는 공공도서관이나 미디어테크, 그리고 시네마테크 등³³⁾이다(정회경 등, 2022: p.112).



* 자료: Claude Mussou(2018).

[그림 2-10] 연구자 대상 열람도구 ‘메디아스코프’ 화면

- 32) Ina LOIRE BRETAGNE (Rennes), Ina GRAND-EST (Strasbourg), Ina CENTRE-EST(Lyon), Ina MEDITERRANEE (Marseille), Ina MIDI ATLANTIQUE (Toulouse), Ina NORD (Lille), Ina PARIS-ILE DE FRANCE-CENTRE (Paris) 등 7개 열람공간에서 ‘전문가 대상 열람공간(Consultation experte)’ 을 운영 중이다(INA, 2022).
- 33) 이나테크 전문가 대상 열람공간과 달리, 도서관 및 미디어테크 이용자들이 자율적으로 이나테크의 소장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자율 열람석(Consultation autonome)’ 을 운영한다(INA, 2022).

또한 열람 공간 및 콘텐츠 제공 서비스 외에도, 연구자들이 보다 원활히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콘텐츠 분석 툴을 개발해 제공 중이다. ‘메디아코퍼스(MediaCorpus)’와 ‘메디아스코프(MediaScope)’가 그것인데, 연구자들이 검색하고 수집한 콘텐츠를 세부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고 그 외 연관어나 키워드를 분석하고 이를 시각화 할 수 있게 한다. 그 외 통계 분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식, 매쉬업, 그리고 브라우징 등의 툴을 제공 중이다(정희경 등, 2022: p.113).³⁴⁾

다음으로 현업이용자, 즉 창작자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다. INA는 보존자료 중 대략 10%의 비율(약 220만여 시간)³⁵⁾에 해당하는 자료들에 대한 저작권 판매를 진행 중이다. 방송 및 영상 콘텐츠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을 원하는 이용자들의 경우, INA가 제공하는 B2B 전용 플랫폼 ‘이나미디어프로(inamediapro.com)’에서 콘텐츠 검색, 열람, 결제 및 다운로드 등을 통해 콘텐츠를 활용하고 있다(INA,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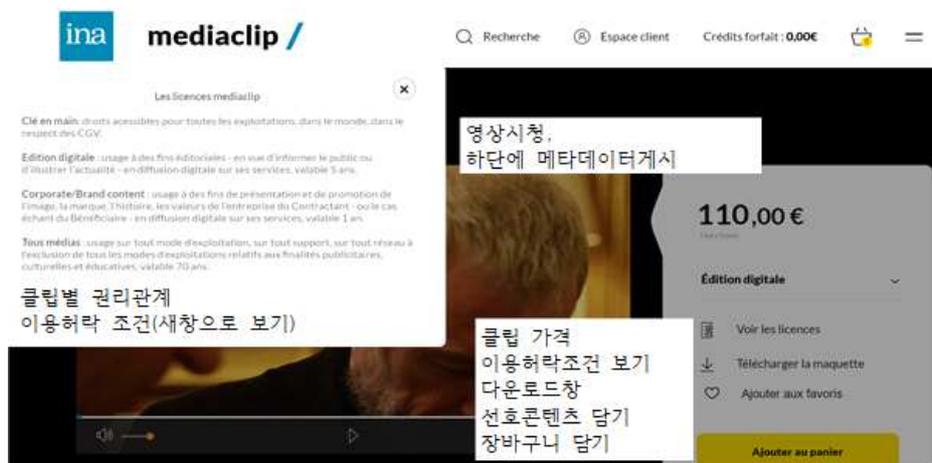
* 자료: 정희경 등 (2022), p.115.

[그림 2-11] INA의 ‘이나미디어프로’ 개별콘텐츠 열람 화면

34) INA의 콘텐츠 공개는 제한된 공간에서만 가능하다는 원칙에 따라, 연구자들이 열람한 콘텐츠들은 캡처본, 분석 결과 리포트 형태만을 외부로 가져갈 수 있다. 이를 외부에 가져갈 때에도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관련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35) 납본제 시행 후 수집된 22,873,143시간 중 B2B 서비스 플랫폼인 inamediapro.com을 통해 저작권 사업을 하는 콘텐츠는 약 2,211,831시간의 분량이다(INA, 2020).

또한 INA는 2020년에 B2B 서비스 ‘미디어클립(Mediaclip)’³⁶⁾을 출시하였는데, 웹사이트 및 소셜미디어와 같은 온라인 콘텐츠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 현업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검증작업을 간소화하여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 검증작업은 이용자들이 ‘이나미디어프로’에 주문을 하면, INA 당자들이 이용자들이 주문한 제작 프로젝트의 내용, 즉 제작진이나 제작의 규모, 배포 대상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구성되어 있었다(정희경 등, 2021: p.117).



* 자료: 정희경 등(2022: 118쪽); INA Mediaclip(2022)

[그림 2-12] INA ‘미디어클립’ 개별 콘텐츠 열람 화면

이 ‘미디어클립’은 수집한 영상들을 10개의 주제³⁷⁾로 분류하여 이용자들이 주제별로 영상을 찾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 주제분류를 기반으로 인물과 장소, 그리고 프로그램명 등의 키워드를 통해 세부 검색이 가능하며, 인물, 프로그램 장르, 제목, 영상길이 등을 구분하여 검색할 수 있는 ‘필터링’ 기능도 함께 있다. 개별 콘텐츠를 선택한 다음에는 해당 영상에 대한 상세 정보(제목, 방송일자, 줄거리 등)가 표시된다(정희경 등,

36) <https://mediaclip.ina.fr/fr/>

37) 사회, 인물, 과학기술, 보건, 역사, 스포츠, 문화 및 미디어, 경제, 국제, 민속, 세계, 정치

2021: p.118).

이용자들은 ‘선불제 이용권’ 을 구매할 수 있는데, 구입한 선불권의 금액이 많을수록 구매하는 영상의 단가가 낮아지는 형태다. 가령 500유로 이용권을 구입했을 때는 하나의 영상당 105유로로 구입할수 있고, 2,500유로 이용권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같은 영상을 96유로로 구입할 수 있다. 이 ‘선불제 이용권’ 을 구입한 다음에는 ‘미디어클립’ 이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정회경 등, 2021: pp.118-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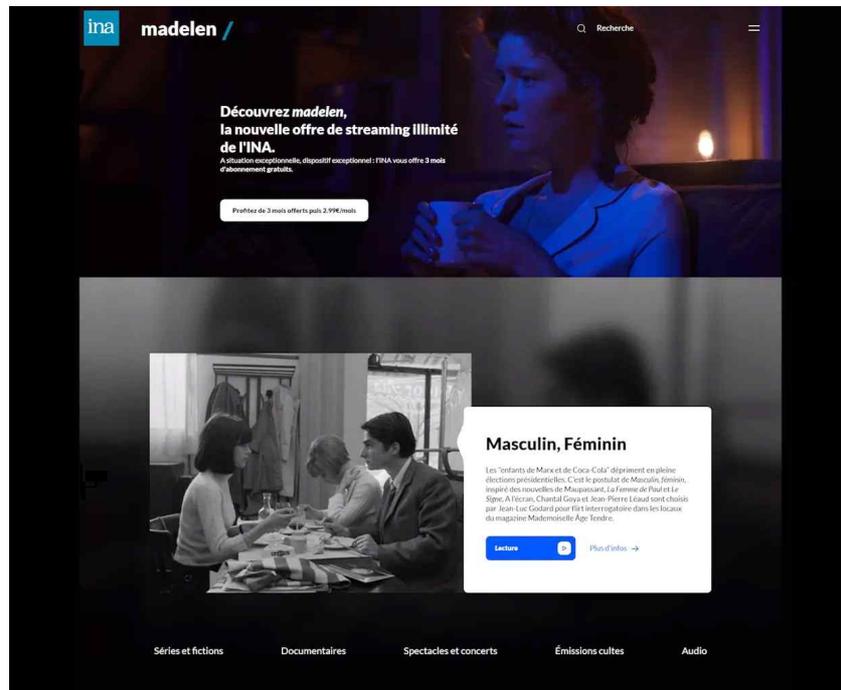
* 자료: INA Mediaclip(2022).

[그림 2-13] INA 선불제 이용권 판매 상품

일반 시청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서비스의 경우, INA가 수집한 전체 콘텐츠 중에 대략 40만여 시간(1.8% 비중)에 해당하는 분량의 콘텐츠를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로 제공하는 형태이다(INA, 2020). INA는 과거 ‘이나닷에프에르(ina.fr)’ 에서 대략 5만여 시간 정도의 비교적 적은 분량의 콘텐츠를 공개한 바 있으나, 최근에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대국민 공개 콘텐츠를 늘리는 추세이다(정회경 등, 2022: p.120).

특히 최근 ‘유튜브’ 나 ‘넷플릭스’ 등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등장하면서, INA 또한 소장 자료를 활용해 여타 민간 플랫폼들과는 차별화된 구독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2019년 시작한 ‘마들렌(Madelen)’ 이 그것인데, 시청자들이 다시 보고 싶어 하는 방송 콘텐츠 대략 1만 3천여 점을 선별해 유료(월 구독료 2.99유로)로 제공 중이다. 공개 중인 콘텐츠는 드라마, 다큐멘터리뿐만 아니라 시사 토론 프로그램과 콘서트나 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들로 구성되어 있다(INA Madelen, 2022).



* 자료: INA Madelen(2022).

[그림 2-14] INA ‘마들렌(Madelen)’ 서비스 화면

끝으로 INA는 2019년에 교육용 콘텐츠 플랫폼을 출시했는데 ‘룸니(Lumni)’가 그것이다. INA는 과거, 즉 2010년에 프랑스 교육부와 협업해 교육용 콘텐츠를 선별해 ‘잘롱(Jalons)’이란 플랫폼을 통해 제공한 바 있다. 한편 공영방송그룹인 ‘프랑스텔레비지옹’ 또한 자체적으로 교육용 홈페이지 ‘France TV Education’을 운영한 바 있는데, 해당 홈페이지와 플랫폼 ‘잘롱’을 통합하여, ‘룸니’가 출시됐다. INA와 교육부, 그리고 프랑스텔레비지옹 외에도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 중이다.³⁸⁾ 이때 교육용 콘텐츠를 개발, 제

38) FranceTV, 독/불공영방송 아르떼(Arte), 라디오프랑스(Radio France), 해외 프랑스방송(TV5 Monde), 프랑스문화부, 프랑스 교사 관련 단체(교육콘텐츠 제작, 미디어 교육센터, 교육자리그 등) 등

작하는 데는 교사 관련 단체들이 참여 중이다(정회경 등, 2022: p.125). 또한 ‘룸니’ 는 이
 용자, 즉 학생/학부모, 교육자를 구분해 제공하는 서비스가 상이한데, 교육자들의 경우 룸
 니 콘텐츠를 활용해 교과과정을 설계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 중
 이다(정회경 등, 2022: p.126).



* 자료: Lumni(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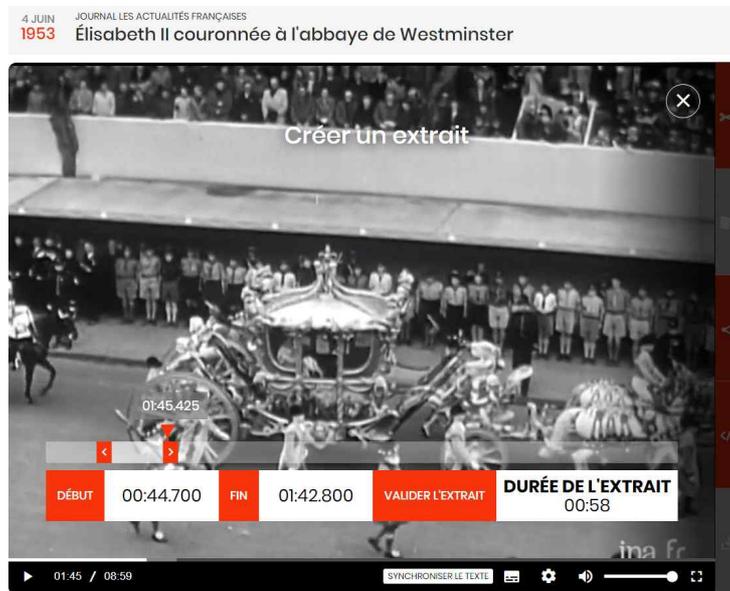
[그림 2-15] INA ‘룸니’ 플랫폼 개발 참여 주체



* 자료: 최효진(2021).

[그림 2-16] INA ‘룸니’ 개별 콘텐츠 열람 인터페이스

‘룸니’는 대국민 공개 플랫폼에서 학년, 교과목별 학습 동영상을 제공 중이다. 또한 오래된 영상들의 경우에는 프랑스 대중문화사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청소년들에게 관련한 역사문화적 맥락을 제공하기 위해 콘텐츠 해제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그 외 교사들이 학습 영상 일부를 발췌하여 수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중이다(정희경 등, 2021: p.126).



* 자료: Lumni(2022).

[그림 2-17] INA ‘룸니’ 콘텐츠 클리핑 및 발췌영상 만들기 기능

2. 영국

영국은 1958년에 『공공기록물법』을 제정한 것을 기반으로 국가기록원(TNA)을 설립 및 공공기록물에 대한 아카이빙 규정을 정립하는 등 지원 정책 수립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볼 때, 국가적 차원에서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에 대한 관심이 상당한 편이다. 특히 영국은 미디어가 갖는 공적 역할 및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 TNA가 제정한 규정에 의거, 영화연구소(British Film Institute, BFI)가 공영방송사 및 민영방송사가 제작한 영상물을 아카이빙 중이다(정회경 등, 2022: p.93).

이처럼 영국 정부는 꾸준히 방송 영상물을 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준비를 수행 증인데, 기관의 운영 원칙 외에 재원 마련 또한 정책적으로 지원 중이다. 이는 결국 영국 정부가 방송 및 영상 콘텐츠를 동시대 기록이자 공공물이라고 인식하는 철학과 신념이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방송콘텐츠를 곧 동시대 기록이라고 인식한다는 것은 국가 기록물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축 중 하나로 방송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정회경 등, 2022: p.95).

1) 법제 현황

영국 내 아카이빙 관련 법제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근거가 되는 『공공기록물법』,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저작권법』, 그리고 방송콘텐츠를 기록물로서 수집 및 보관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된 『방송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공공기록물법』은 1958년에 공공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공공기록을 납본에 대한 규정 및 공공기록보존소(Public Record Office)에서 운영하는 등과 같은 내용이 명기 되어 있다. 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동법 제4조에 의거, 영국 내 공공기록관리 정책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록원(TNA)을 해당 기록원 외에 다른 장소를 공공기록물 보관 및 보존 등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TNA는 방송 영상물에 대한 수집 관리를 영국영화연구소(BFI)에 위탁해 관리 중이다. BFI가 갖고 있는 영상에 대한 전문적인 인프라 및 관리 노하우를 감안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정회경 등, 2022: p.80).

또한 『저작권법』은 1988년 11월에 의회 승인을 받고 제정된 것으로 1956년에 제정된 동법이 완전히 개정된 것이다. 해당 개정안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들의 범주가

확장(문학, 연극, 음악, 예술, 영화, 음향, 방송, 출판 등)되었다. 아카이브와 방송 영상물의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①저작권이 허용되는 범위로 도서관과 아카이브, 그리고 ②방송콘텐츠를 구체적으로 명시 중이다(정회경 등, 2022: p.80).

마지막으로 『방송법』의 경우, 동법 185조에 의거 주요 민영방송사업자들(Channel 3, Channel 5 등) 또한 BFI에 주요 방송콘텐츠들을 보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때 주목해볼 만한 것은 국가적 차원의 공공 텔레비전 아카이브를 운영하는데 있어 민영 방송사들이 비용을 일부 기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매년 회계연도에 민영 방송사들이 기부할 금액을 결정한다. 또한 이후에 제정된 『커뮤니케이션법(Communication Act, 2003)』은 또 다른 민영방송사업자 Channel 4 또한 방송콘텐츠 수집 및 운영 비용을 기부하는 의무 기관으로 추가되었고, 해당 사항을 관리하는 주체로 미디어 관련 정부 부처인 OFCOM을 지정하였다(정회경 등, 2022: p.83).

2) 자료 수집 범위

방송 영상물을 수집하는 아카이브 기관인 영국영화연구소(BFI)는 내부 정관에 따라 ‘국립영화방송아카이브(NFTVA)’로서 영화, 텔레비전 방송 등 여러 영상 콘텐츠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기관이다.³⁹⁾ 텔레비전 방송 외에도 영화, 기타 동영상 영역의 발전을 장려할 뿐만 아니라, 동시대 기록물을 기록하고 이를 영국 외 전세계 지역에서 접근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아카이빙과 관련해서는 영국의 방송 및 영상을 문화적 유산으로 인식, 이를 수집해 모음집을 구축하고 관리하며 계속해서 이를 개발하는 데 힘쓰고 있다(정회경 등, 2022: p.88).

이때 BFI 관개 및 BFI의 영화 기금의 지원을 받은 영화의 경우, 계약 당시에 제작한 영화를 국가 공공 아카이브에 계약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한다. 그 외에 국가적으로 수집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과거 영화, 또는 다양한 장르의 TV 방송 자료, 또는 온라인 자료 등을 수집하고 그 현황을 매년 정기 보고서에 기록 중이다(BFI, 2020).

39) 2006년 이후에 기관명이 변경되면서, NFTVA라는 명칭 대신 BFI라는 명칭으로 통칭해서 사용 중에 있다.

BFI가 수집하는 영상 콘텐츠의 범위는 아주 다양한데, 영화, 텔레비전 방송 외에도 예술가 및 실험적인 예술 작가들이 제작한 작품들은 물론, 디지털콘텐츠 등을 포괄한다. 1950년대 이후 방송물이 주로 수집되어 있으며, 그 외에 소재 자료로 쓰인 원본 자료나 광고, 예고편 등 역시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 관리, 그리고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BFI는 미디어 관련 정부 주무 부처인 OFCOM이 규제 정책에 따라 10여 개의 민영방송사들로부터 방송용 고품질의 자료를 납본받는다(정회경 등, 2022: pp.88-89).

3) 자원 및 예산

BFI의 운영기금은 BFI의 자체 수익 외에 정부 보조금, 그리고 복권 기금 및 각종 공공기관 및 개인·기업의 재정적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수익이 자선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해당 재산은 조직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될 수 없다. 세부적으로는 재원의 성격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사업 항목들이 정해져 있는데, 가령 정부 보조금의 경우 영상 콘텐츠 보존 및 교육 프로그램, 복권 기금의 경우에는 영화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등 영화 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영국 의회에서 투표한 모든 자금을 포함하여 BFI가 수령한 모든 자금과 재산은 연구소의 목적을 홍보하는 데만 사용되고 재원별로 지원하는 사업이 정해져 있다. 즉 정부 보조금은 교육 프로그램과 영상자료 보존 분야에 사용되고, 복권기금은 영화의 기획 개발, 제작, 배급, 관객 개발을 비롯해 비즈니스 지원과 연구 분야 등 폭넓게 사용된다. 또한 BFI는 매년 회계연도에 맞춰 결산서를 작성, 공표하고 있다(정회경 등, 2022: pp.89-90).

2020년 기준, 정부 기관에서 BFI에 기부한 부처는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포츠부와 교육부이다. 그 외에 필름 포에버 클럽(FILM FOREVER CLUB), 감독컷 후원자(DIRECTORS CUT PATRONS), 에픽 후원자(EPIC PATRONS), 클래식 후원자(CLASSIC PATRONS) 등이 공공기관 또는 재단, 기관, 개인 등의 기부자 명단에 기록 중이다. 특히 주목해볼 만한 것은 숏폼 영상 공유 스트리밍 플랫폼 ‘틱톡(TikTok)’, 그 외에 페이스북,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이 새로운 기부자로 등장했다(정회경 등, 2022: p.90).

4) 아카이브 구축 방식

BFI의 ‘보존 & 수집 관리팀(Conservation and Collection Management Teams)’은 수년간 수집한 자료들에 대한 디지털화 작업을 수행해왔다. 이는 필름을 검사하고 청소하고 스캔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데, 여러 디지털화 업체들과 협업해 이뤄졌다. 이때 1911년부터 1931년까지 상영해온 무성 뉴스 영화 <Topical Budge>의 1만여 개에 가까운 영상들 또한 교육용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디지털화가 이뤄진 바 있다(정희경 등, 2022: pp.87-88).

한편 국영방송 BBC의 경우에는 정부와 별도 협약(BBC Charter and Agreement, 1995)을 이뤄 자체적으로 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에 BFI를 통해 BBC의 영상 자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BBC, 2022). 이때 BBC는 자체 아카이브 운영 원칙 또한 해당 협약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데, BBC가 자체 비용으로 기록물을 보관, 유지 관리한다는 점, 또한 그 기록물에 대해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BFI와 적절한 협의를 해야 한다. 또한 자료의 영구 보관 및 보관할 자료 선별 등에 있어서도 BFI와 협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BFI에 무상으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자료들을 판매하거나 폐기할 수 없다(정희경 등, 2022: p.85; BBC,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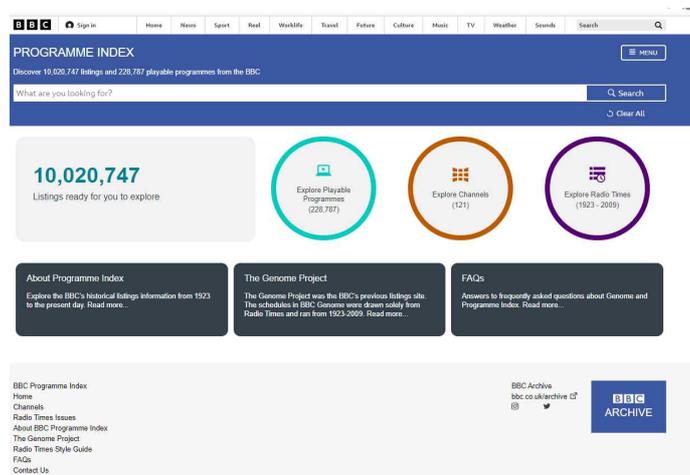
5) 아카이브 활용 현황

BFI는 소장한 자료에 대해 대국민 공개 서비스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학술연구자, 학생, 그리고 교육자들은 BBC의 방영물 일체를 연구 및 교육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 외에 영상을 제작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영화나 텔레비전 방송 제작에 있어 BFI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복사본 등을 제공하지만 모두 비영리적인 목적일 때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수집 자료를 이용한 전시회나 상영회 등 여러 문화행사들을 기획하고 있는데, 영국 내 박물관이나 영화제에서 이 같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정희경 등, 2022: p.88).

그 외 BFI는 수집하고 있는 다양한 방송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운영 비용의 일정 부분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영상 판매의 경우, 전 세계 BBC 채널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 영국, 나아가 유럽 지역 내 공공 서비스나 상업 채널 방송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넷플릭스 등과 같은 OTT 서비스에서도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다(BFI, 2020).

BFI의 소장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BFI 관련 도서관, 또는 미디어테크를 방문해야 한다. 단, 이용하고 싶은 자료에 대한 소장 여부는 온라인 검색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을 위한 방문을 위해서는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하며, 이용할 때 약간의 비용이 발생한다. 그 외에도 BFI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일부 콘텐츠(예: 20세기 영국사를 다룬 영상물 등)들을 선정해 디지털화하고, BFI 유튜브 채널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정희경 등, 2022: p.89).



* 자료: BBC Genome(2022).

[그림 2-18] BBC 아카이브 인덱스 소개 화면

국영방송 BBC 또한 보존하고 있는 콘텐츠 재사용을 목적으로 디지털 기반 개방형 아카이브를 구축·운영 중이다. 1923년을 기점으로 현재까지의 모든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데, 최근 ‘BBC 게놈(Genome) 데이터’에 데이터를 통합하여 관리 중이다.⁴⁰⁾ 대중들은 BBC 아카이브 센터가 제공하는 일부 무료 영상을 사이트⁴¹⁾에서 제공 받을 수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서비스에 직접 접근하기 위해서는 BFI 또는 영국도서관(The British Library)을 통해야 하며, 해외 사용자들의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정희경 등, 2021: pp.91-92).

40) <https://genome.ch.bbc.co.uk>

41) <https://www.bbc.co.uk/archive>

BBC News Sport Reel Worklife Travel Future Culture More Search

ARCHIVE Home Collections Stuff We Do Archive Services

Manchester's 'last' tram



Mancunians said goodbye forever to those "rattling and ungainly monsters", the trams. Until of course 1992's Metrolink restored the humble tram to the streets of the city and as far as Altrincham and Bury.

Originally broadcast 17 January 1949



Transport and travel

From aeroplanes to zeppelins, this is on A to Z of getting from A to B



Genome

Explore decades of the BBC's programme catalogue through the Radio Times



iPlayer archive

Classic drama boxsets, music memories, brilliant documentaries and much more

* 출처: BBC 아카이브(2022).

[그림 2-19] BBC 아카이브 소장 자료

3. 미국

미국에서는 방송콘텐츠를 수집, 또는 보관하는데 있어서 의회도서관이 정부를 대신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납본보다는 기획수집에 방점을 두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방송콘텐츠가 방송사업자들의 사적 재산물로 인식하는 미국의 관점이 반영된 것이다. 콘텐츠 저작권에 있어서도 일관된 관점을 갖고 있어, 몇몇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수집만을 의무로 부과하는 등 비교적 제한된 범위에서 아카이빙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즉, 국가적으로 수집, 보관하기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방송콘텐츠에 한해서 법적 근거에 기반해 수집 및 납본을 수행 중이며, 그 외 사적·공적 기록물에 대해서는 그 내용물을 소유한 이들이 제공 여부에 대해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등 유연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정회경 등, 2022: p.76).

1) 법제 현황

미국은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의 목적을 강제 납본보다는 보존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방송콘텐츠를 소유자들의 사적 소유물로 인식하고 있어, 『미국 텔레비전 및 라디오 아카이브법(American Television and Radio Archives Act)』(이하 『미국 TV 아카이브법』)이라는 단일 법제에 의거해 아카이브를 운영, 관리 중이다. 이 지점은 여러 다양한 법제 및 협약 등을 통해 다각도에서 아카이브를 운영하는 유럽과는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기도 하다(정회경 등, 2022: p.62). 『미국 TV 아카이브법』 제107조에 따르면,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이 국가의 방송 및 영상 아카이브를 설립하고 운영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 아카이브의 목적은 방송 및 영상 콘텐츠를 미국 국민을 위한 문화유산으로서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것이며, 연구자 등에게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제공하는 것이다(정회경 등, 2022: pp.62-63).

한편, 방송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조율하고 있는 『저작권법』에서는 동법 106조에서 저작권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법 110조에 의거 저작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예외적인 사례를 나열하고 있다. 그 중 방송사업자와 관련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데, 방송사업자들이 송출한 방송콘텐츠의 경우, 특정 조건에 해당할 때 저작권 적용에 있어 예외가 되는데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가 인

가한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 사업자, 또는 케이블이나 위성방송사업자들이 제공한 시청각물이 그 대상이다(세계법제정보센터, 2022).

2) 자료 수집 범위

『미국 TV 아카이브법』에 의거, 방송콘텐츠에 있어 기록물로서 수집하고 있는 방송 및 영상 자료들은 문화·역사적으로 보관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그 자료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와 협의해 의회도서관에 비치한다(정회경 등, 2022: p.63). 의회도서관이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그 범위는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영상 및 음향기록물이다. 이에 영상기록물은 대략 120만여 건, 음향 기록물은 3백만여 건, 그 외 포스터, 사진, 기타 홍보물 2백만여 건을 수집하였다(Library of Congress, 2022).

둘째, 영화 자료는 의회도서관 내에서 연구 등 비영리적 목적 아래 열람 및 활용할 수 있는 저작권 모음집을 중심으로 그 외 미국영화연구소가 제공한 초기 영화, 흑인 제작 영화 등의 영화 자료, 2차 세계대전 이후 패전국으로부터 몰수한 해외 필름, 문화인류학자가 제공한 인류학 영상 모음집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셋째, 텔레비전 방송자료의 경우, NBC, PBS, 그리고 NET가 자체 제작한 방송콘텐츠와 그 외에 뉴스 방송콘텐츠 모음집 등이 있다. 끝으로 음향기록물 수집의 경우, ‘빅터레코드사’가 기증한 음반을 시작으로 다양한 자료를 수집 중이다(정회경 등, 2022: p.67; Library of Congress, 2022).

사실상 자료 제공자들이 의무납본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증여, 양도, 또는 교환이나 구매 등 다각도에서 자료 수집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그 수집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제약 상황에서도 미국 의회도서관은 매년, 7,000-8,000여 개의 영상 자료가 등록되고 있고, 2019년 기준, 영상 자료 185만여 개, 음성자료 423만여 개를 보관 중이다(Library of Congress, 2019; 2020).

3) 재원 및 예산

미국 의회 산하 국립기관인 의회도서관의 운영기금은 정부 예산으로 이뤄져 있다. 『저작권법』에 포함된 납본 규정에 따라 저작권자가 자료 수집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데,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자료를 의무적으로 납본하기 보다는 증여나 양도, 또는 교환 및 구매

등의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 외 의회도서관 내 급여 등을 포함한 운영 비용을 포함하면 2018년 기준 의회도서관의 운영 예산은 대략 200여억 원의 규모이다(Library of Congress, 2020).

한편 미국 공영방송 아카이브(AAPB)는 여러 공영 및 민영 단체의 지원으로 운영 중이다. 『미국 TV 아카이브법』 제3항에 의거, 미국의 공영방송협회와 박물관 및 도서관 서비스 연구소, 그리고 멜론 재단 등이 주요 후원 단체 중 하나이다. 그 외에 도서관정보자원 위원회가 의회도서관과 협업해 보조금을 지원 중이다. 한편, 프로젝트 단위의 지원 방식 또한 이뤄지고 있는데, 가령 ‘인문학을 위한 국가 기부(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 NEH)’ 는 인문학 분야의 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는 취지로 AAPB에 기부 중이다(American Archive of Public Broadcasting, 2022). 그 외, 일반인들도 AAPB에 기부가 가능하며, 이는 모두 세금 공제 대상이 된다(정희경 등, 2022: pp.71-72).

4) 아카이브 구축 방식

의회도서관은 국내, 또는 다른 국가들에서 대중들을 대상으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 콘텐츠를 소유한 단체, 또는 개인과의 협의를 통해 수집해오고 있다. 이때 역사·문화적으로 보존에 가치가 있는 자료들을 수집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구체적인 수집 방식은 『저작권법』에 의거해 ①기존에 의회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이관, ②다른 도서관이나 아카이브, 또는 단체 및 개인 등에 의한 기증이나 교환, 또는 ③그 소유주에게 구입을 하는 방식 등이다(정희경 등, 2022: p.65).

또한 수집한 방송콘텐츠를 원활히 보관하기 위해 ‘동영상 및 방송녹음부서(The Motion Picture, Broadcasting and Recorded Sound Division, M/B/R/S)’ 란 조직을 운영 중이다. 동시에 수집한 자료들을 장기 보존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디지털화 작업을 위해 국립시청각보존센터(National Audio-Visual Conservation Center)⁴²⁾ 또한 운영 중인데, 해당 센터에서 수집한 자료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 작업, 즉 콘텐츠 분류 작업 등을 수행한다(Library of Congress, 2020).

42) 해당 센터는 패커드인문재단(Packard Humanities Institute)과 의회도서관이 각각 150만 달러와 82만 달러를 지원한 시청각 자료 전문 아카이브센터로 2007년에 개관했다.

자료에 대한 검색과 열람에 있어서는 의회도서관이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하지만, 더 상세한 검색 및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도서관 내부 데이터베이스 MAVIS(Merged Audiovisual Information System)를 이용할 수 있다. 해당 데이터베이스는 온라인을 통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사용자들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은 학위 논문, 출판물, 영화, 또는 텔레비전 콘텐츠 제작 등 비영리적 활용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연구자, 언론인, 영상 제작자 등이 이용할 수 있다(Library of Congress, 2019; 2020).

5) 아카이브 활용 현황

의회도서관은 『저작권법』에 의거, 뉴스로 구성된 방송콘텐츠에 있어 소장 자료를 복제, 활용이 가능하다. 그 외 복제가 가능한 경우는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도서관이나 아카이브에 납본하는 경우 등이다(정회경 등, 2022: p.63).

또한 2013년부터 의회도서관은 공공 방송 아카이브 프로젝트인 AAPB를 추진 중인데, 공영방송 PBS를 비롯하여 여타 미국 공영방송사의 콘텐츠를 수집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American Archive of Public Broadcasting, 2022). 이 AAPB는 공영방송사 PBS 외에 전국에 있는 공공 미디어 기관 100여 곳이 참여해 2015년부터 자료를 수집하였고, 2017년 기준으로 대략 250만여 건의 소장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였다. 그 중 저작권 문제가 없는 7천여 건의 콘텐츠는 온라인 상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해당 서비스 또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그 외에 자료는 의회도서관에서 열람 및 시청이 가능하다(정회경 등, 2022: p.68).

AAPB는 메타데이터 및 색인 기능을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이용자들에게 검색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는 멜론 재단(The Andrew W. Mellon Foundation)의 후원 아래 이뤄진 것으로 기계학습 및 인공지능 기반 오픈 소스와 워크플로우를 개발하였고, 프로그램 별 세부 메타데이터를 캡처하는 툴 또한 활용 중이다. 현재 AAPB가 사용하고 있는 콘텐츠 카테고리는 아래와 같다(정회경 등, 2022: p.68).

<표 2-30> AAPB 콘텐츠 카테고리

대분류	중분류	주제
영역 또는 주제에 따른 구분	대주제	정치(Politics), 사건사고(Public Affairs), 경제(Economic), 교육(Education), 에너지(Energy), 환경(Earth and environment), 국제(Global Affairs), 정부(Government), 역사(History), 사회적 이슈(Social Issues), 전쟁(War)
	과학	농업(Agriculture), 동물(Animals), 자연(Nature),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젠더	인물(Biography), 여성(Women), 성소수자(LGBT), 가족(Parenting), 인종(Race and Ethnicity), 종교(Religion), 철학(Philosophy)
	문화 예술	요리(Cooking), 공예(Craft), 춤(Dance), 순수예술(Fine Arts), 원예(Gardening), 건강(Health), 문학(Literature), 지역(Local Communities), 스페인어권(Spanish Language), 스포츠(Sports), 연극(Theater and Acting), 여행(Travel)
장르 (유형)	시청자참여형 프로그램(Call-in), 소비자고발 프로그램(Consumer Affairs), 토론(Debate), 다큐(Documentary), 드라마(Drama), 기념/추모행사(Event Coverage), 유머(Humor), 인터뷰(Interview), 음악(Music), 뉴스(News), 토크쇼(Talk Show), 소제자료(Unedited)	

* 자료: American Archive of Public Broadcasting (2022)

4. 호주

호주는 ‘국립영상음성아카이브(National Film and Sound Archive of Australia, NFSA)’를 통해 시청각 자료를 수집 및 보존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해당 기관은 1930년대 초기에 도서관 산하 기관으로 출발했고, 2000년대에 독립기관으로 출범했다. NFSA는 호주 연방 국가기록원(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NAA)과 함께 호주 내 시청각 분야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 중이다. 해당 공공 아카이브의 주요 역할로는 방송 콘텐츠의 영구보존, 나아가 국민들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 등이 있다(정희경 등, 2022: p.133).

1) 법제 현황

호주에서 방송통신 콘텐츠 공공 아카이브 운영과 관련한 법은 『국립영상음성아카이브법』, 『저작권법』, 『방송서비스법』 등이 있다.

<표 2-31> 호주 방송통신 콘텐츠 공공 활용 관련 법

구분	국립영상음성 아카이브법	『저작권법』	방송서비스법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FSA 설립 및 운영 관련 조항 · 각종 시청각 자료(영화, 방송, 음성자료, 구술채록 등) 수집, 관리 활용 관련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방송 및 음향, 방송 제작자에게 방송기록물의 모든 저작권이 있다고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 설립된 통신 미디어위원회 운영근거 · 공영방송 및 상업방송 규제 근거 제시

* 자료: 정희경 등(2022), 134쪽.

먼저, 『국립영상음성아카이브법(National Film and Sound Archive Act)』(이하 『NFSA법』)은 2008년에 제정되었고, 법률명이 보여주듯 NFSA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 직접적인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동법 5조에 의거, 호주 내 여러 시청각 자료들을 수집, 관리, 그리고 활용하는 공공 기관임이 명시되어 있다(정희경 등, 2022: p.134).

<표 2-32> 호주 『NFSA법』 주요 내용

구분	내용
NFSA 설립근거	· (5 Establishment)NFSA가 호주의 영상음성부문 아카이브 수집과 보존, 관리 등을 전담하는 공공기관임을 규정
NFSA 기능	· (6 Functions)국가적 차원에서 영화 및 방송프로그램 자료 수집 · 수집 자료에 대한 보존, 유지, 활용 촉진 및 접근성 제고 · 음향, 뉴미디어 유산에 대한 보존 및 접근성 지원 · NFSA기능 수행을 위한 재정 지원 (Financial Assistance), 각종 프로그램 후원(Sponsoring), 서비스, 시설, 장비 지원 · ‘역사문화적’ 프로그램/관련자료 중요도 가중치 (Historical and cultural significance of programs and related material)-관련 서비스 제공에 필요하면 이용자에 비용 청구 가능 · (7 Powers) NFSA 주요 기능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권한 행사 가능 · 기증, 위탁, 기탁, 자금 신탁 받을 수 있음
NFSA 이사회 운영	· (8-17 Board)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NFSA Board)에 대한 내용 · 최고경영자(CEO), 총괄책임자 (General Manager) 관리체제로 구성
NFSA 운영재원	· (37-40 Finance) 연방정부 예산으로 재원을 충당하며, 재무부 장관이 지급시기 및 금액을 지정

* 자료: 정회경 등(2022), 135쪽.

<표 2-33> 호주 『1968년 『저작권법』』 도서관 및 기록보존소 관련 면책 조항

구분	내용
도서관 공공서비스	의원들을 위한 국회도서관에서의 복제 이용자를 위한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에 의한 복제 또는 송신 다른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를 위하여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에 의한 저작물 복제와 전달
비공표 기록 및 기록보존소 운영	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에서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을 복제와 전달 호주 국립기록보관소의 관리에 있는 저작물의 복제와 전달 보존과 다른 목적을 위하여 저작물의 복제 또는 전달 주요 문화단체의 소장품으로 중요한 저작물이 보존 복제물의 제작
일반 이용	논문과 다른 저작물을 동반하여 예시로 사용

* 자료: 한국저작권위원회(2022)

다음, 『저작권법』은 영국의 관련 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는 1968년 호주 내 동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영국 법을 적용해온 배경이 있기 때문이다(정회경 등, 2022: p.135). 동법 99조에 의거 방송기록물에 대한 저작권은 해당 방송제작자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도서관이나 기억기관 등에서 비영리적 목적 하에 이를 복제하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 또한 있다(정회경 등, 2022: p.136).

끝으로 1992년 제정된 호주의 『방송서비스법』은 방송이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력을 고려해 방송 면허를 국가의 감독 및 감시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 이에 방송면허를 보유한 자는 그 면허를 행사할 때 정해진 기준을 따라야 하며, 해당 권리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동법 제3조에는 호주 방송에 대한 규제 정책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다(정회경 등, 2022: pp.136-137).

<표 2-34> 호주 『방송서비스법』 목표

구분	내용
대국민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 전역에 걸쳐 시청자에게 다양한 종류의 오락과 교육, 정보 제공하는 라디오와 방송서비스의 제공을 증진 · 호주 전역에 걸쳐 시청자와 이용자에게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캐스팅 서비스의 제공을 증진 · 호주 전역에 걸쳐 지역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텔레비전과 · 라디오 프로그램의 제공을 증진 · 방송서비스 제공자가 창의적이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촉진
산업발전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이고 경쟁적이면서 시청자의 필요에 대응하는 호주 방송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규제환경을 제공 · 효율적이고 경쟁적이면서 시청자와 이용자의 필요에 대응하는 호주 데이터캐스팅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규제환경 제공 · 상업방송과 커뮤니티방송 서비스 제공자가 공익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공정하고 정확하게 보도하고 지역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보도해야 하는 필요에 대응하도록 장려
문화다양성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서비스의 다양성확보를 장려 · 호주의 주체성, 기질과 문화적 다양성을 향상시킴에 있어 방송의 역할을 촉진 · 방송서비스 제공자들이 프로그램의 제공에 있어 지역의 기준을 존중하도록 장려 · 공영방송, 커뮤니티방송과 원주민방송(indigenous broadcasting)을 포함한 호주방송시스템의 디지털로 전환에 있어 다양성을 유지하고 가능한 증진
통신콘텐츠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 · 일반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특정 인터넷 콘텐츠의 접근을 차단 · 어린이에게 부적절한 인터넷 콘텐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

* 자료: http://classic.austlii.edu.au/au/legis/cth/consol_act/bsa1992214/

2) 자료 수집 범위

NFSA는 『저작권법』에 의거,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이 명백히 그 제작자에게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방송콘텐츠 보존 및 관리는 방송사들과의 신뢰와 그에 따른 협조에 기반해 이뤄지고 있다(정희경·박춘원·유영식·최효진, 2019). 이 같은 참여 기관들의 공조에 기반해 NFSA는 현재, 다양한 형태의 시청각 자료를 3백만여 점 수집했다(정희경 등, 2022: p.139). NFSA에서 수집하고 있는 자료들의 목록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35> 호주 NFSA 컬렉션

구분	내용
NFSA 텔레비전 뉴스 및 시사프로그램 컬렉션	1988년부터 10개 방송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구축한 컬렉션. 1956년부터 호주 텔레비전 방송이 전국적인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해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을 어떻게 호주 시청자들에게 전달해왔는지 보여줌 * 협력 방송사: Network Ten, Nine Network, Seven Network, Sky News Australia, FOX Sports Australia, GWN7, WIN Network, Southern Cross Austereo, ABC and SBS
초기 뉴스컬렉션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사이 초기 방송채널로부터 방영된 뉴스 프로그램 컬렉션 * 관련 방송사: ATVO, NEW10, TEN10, CTC7, GLV8, GTV9, NBN, NWS9, STW9 and Seven Network
초기 드라마컬렉션	호주 방송역사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거나 당대 ‘최초’ 제작·방영된 작품, 비교적 방영기간이 긴 작품 * 대표 수집작품: The Adventures of Long John Silver (1955), Homicide (1964-1975), Skippy (1966-1969), Number 96 (1972-1977), The Sullivans (1976-1982), Against the Wind (1978), Prisoner (1979-86), Neighbours (1985-current), Blue Heelers (1993-2006) and Love My Way (2004-07)
제작지원드라마 컬렉션	정부의 제작지원을 받은 드라마 컬렉션 * 대표 수집작품: Mystery Road (2018), The Family Law (2016-2018), Doctor Doctor (2016-current), Nowhere Boys (2013-current), Picnic at Hanging Rock (2018) and The Justine Clarke Show! (2017)
라디오 컬렉션	호주 상업·공동체 라디오 방송국, 프로듀서, 수집가 등으로부터 기증 받은 드라마, 버라이어티, 퀴즈쇼, 뉴스, 시사, 토크쇼, 다큐멘터리, 스포츠, 기념식중계, 중요이벤트 및 자연재해 중계녹음본 등

* 자료: 최효진(2021); NFSA(2022)

그 외에 NFSA가 수행 중인 제작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은 콘텐츠의 경우에는 별도로 수집 및 관리하고 있다. 제작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이를 고지하고 있으며, 정부 지원금으로 제작한 콘텐츠가 종영, 또는 상영이 종료된 후에는 NFSA에 의무로 제출해야 한다. 제작 지원을 받은 영화나, 다큐멘터리, 그뿐만 아니라 온라인 콘텐츠 등도 이에 해당한다. NFSA는 『제작지원 사업 프로그램의 NFSA제출본 안내』를 통해 제작 지원을 받는 제작사들이 해당 제작물을 이후에 NFSA에 다시 제공해야 하는 의무 및 중요성 등을 안내하고 있다(정회경 등, 2022: pp.141-143; NFSA, 2022).

3) 자원 및 예산

	2019-20 Estimated actual \$'000	2020-21 Estimate \$'000
Opening balance/cash reserves at 1 July ^(a)	1,237	1,324
Funds from Government		
Annual appropriations - ordinary annual services ^(b)		
Outcome 1	25,184	26,535
Annual appropriations - other services ^(b)		
Equity injection	1,274	809
Total annual appropriations	26,458	27,344
Amounts received from related entities		
Amounts from portfolio department ^(c)	1,760	-
Total amounts received from related entities	1,760	-
Total funds from Government	28,218	27,344
Funds from other sources		
Sale of goods and services	1,024	741
Interest	165	60
Royalties	154	195
Other	604	848
Total funds from other sources	1,947	1,844
Total net resourcing for NFSA	31,402	30,512
	2019-20	2020-21
Average staffing level (number)	164	164

* 자료: NFSA(2022)

[그림 2-20] NFSA 2020-2021 연간예산(2020년 10월 기준)

NFSA의 예산은 매년 정부가 그 규모를 결정하는데, 매년 수집된 양과 관리하고 있는 콘텐츠의 양, 그리고 해당 기관이 수행 중인 공공 서비스 범위에 기반해 정한다. 이에 호주

정부가 매년 우선순위로 결정하는 것에 따라 규모 차이는 발생할 수 있지만, 평균 연간 3천만 호주 달러 내외로 예산이 배정되어 왔다. 이는 주로 경상 운영 경비로 쓰이며, 경상 운영비는 인건비, 물품, 임대, 그리고 감가상각 등에 집행되는데, 특히 인건비는 운영 경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물품의 경우, 전문가 자문, IT 기반 서비스, 광고 및 마케팅, 용역 계약 등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그 외 NFSA에서 새로운 프로젝트(예: 추가적인 국공립기간 소장 자료 디지털화 등)가 결정되면 그에 따른 추가 예산을 확보해 지원한다(정회경 등, 2022: pp.147-149).

4) 아카이브 구축 방식

NFSA는 방송사들과의 협업을 통해 방송 및 영상 자료를 수집한다. 의무 납본제를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영상자료 보존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조성된 상황에서 자연스레 유관 기관들과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ABC 시드니 방송은 호주 국가기록원에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며, ABC 캔버라 방송은 NFSA에 방송 복사본을 제출한다(국가기록원, 2009). 해당 방송사 외에 다른 민간 미디어 사업자들⁴³⁾과도 협업을 통해 방송 자료 수집을 진행하고 있다(정회경 등, 2022: pp.138-139).



* 자료: 정회경 등 (2022): 139쪽

[그림 2-21] NFSA-방송사 간 공조 체계

43) FOXTEL Management Pty Ltd, Premier MEDIA group and FOX Sports(정회경 등, 2022: 138쪽)

그러나 이 같은 협업에 기반한 방송사들의 기증으로 이뤄진 수집 방식은 수집한 자료들의 포괄성, 또는 망라성이 낮은 편이어서, 수집을 담당하는 부서가 ‘결락⁴⁴⁾’ 상황을 검토해 충분히 보존 가치가 있는 자료들이 수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수집 방식은 자료 제공자의 자발성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이후 활용 단계까지 나아가기가 대체로 수월하다(정회경 등, 2022: p.140).

NFSA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수집 활동을 위해 정기적으로 『수집정책(Collection Policy)』을 검토하고 이를 공표한다. 해당 정책은 NFSA에서 수집을 담당하는 이들이 자료를 수집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는 원칙, 혹은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NFSA, 2020), 자료를 제공하는 여러 유관 기관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행위로 평가받는다. 이는 NFSA가 매년 수집된 자료 현황 및 해당 수집 정책을 연차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기 때문이기도 하다(정회경 등, 2022: p.144).

<표 2-36> NFSA 수집기준이 되는 큐레이션 가치(Curatorial Values)

구분	(수집) 수집대상의 다양성	(관리) 관리대상의 무결성(Integrity)	(활용) 이용자 문화정체성 형성에 기여
내용	호주 민족·젠더·연령·계층·성적취향·종교·사회적약자 등의 요소를 모두 고려한 문화적 다양성 존중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더라도 원본 가치의 무결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새 매체에 활용본을 이관하더라도 구 매체를 폐기하거나 구 매체의 콘텐츠 내용을 왜곡, 조작, 수정하지 않음	수집된 콘텐츠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에게 공개. 구매체에 보관된 콘텐츠를 반드시 신매체에 이관하여 대국민 공개함

* 자료: NFSA(2022)

44) 우리나라의 국가기록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내의 아카이브 기관에서는 해당 기관이 소장한 소장자료의 ‘결락’ 된 기록을 보완하기 위한, 즉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기록이지만 기관 컬렉션에는 소장되지 않은 대상을 수집하는 형태의 수집정책을 수립, 실행한다. 가령, 국내에서는 『민간기록물 수집업무에 관한 규정』제3조에는 ‘공공기록물의 결락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민간 기록을 수집한다고 명시되어 있다(정회경 등, 2022: p.140).

한편 NFSA는 수집에 대한 우선순위 또한 명시하고 있는데, 해당 기준은 ‘기증 대상 매체의 문화적 중요성’, ‘현재 수집된 대상과의 정합성’, ‘수집될 자료의 물리적 상태’, ‘추후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있다(정회경 등, 2022: p.144). NFSA의 수집 대상을 결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은 <표 2-3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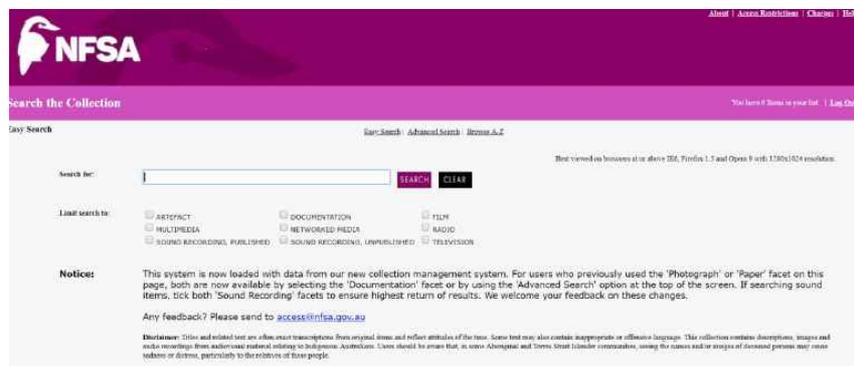
그 외에 호주 정부는 NFSA에 국비 5천 5백만 호주달러를 지원하는 『NFSA 디지털화 전략 2018-2025』을 추진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와 관련해 우선 지난 2019년, 호주 국가기록원은 호주 원주민들의 언어가 남아있는 테이프 대략 12만여 시간의 분량을 2025년까지 디지털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ROSEMARY BOLGER, 2019.7.14). 그리고 다음 해인 2020년에는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시청각 기록 11만 7천여 시간의 분량을 디지털화한다고 발표했다(Sally Whyte, 2020.7.21).

이러한 결정에는 2025년까지 비디오 매체를 디지털화하지 않았을 때 그 콘텐츠를 보존하고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에 기반한 대내외 합의가 바탕이 되었다. 실제로 전 세계 방송사 및 영상 아카이브 관련 기관에서는 아날로그 매체에 기록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Mike Casey, 2015). 이에 NFSA는 소장하고 있는 아날로그 매체 중 훼손 가능성이 크거나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자료, 또는 공공의 수요가 높은 자료를 중심으로 디지털화 작업 대상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이에 NFSA는 매년 4만여 건의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있으며, 현재 대략적으로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대상은 호주 방송을 대표할 텔레비전 방송과 보도 영상, 멜버른 컵과 같은 스포츠 경기, 호주 대표 음악을 담은 라이브 공연이나 마스터 테이프 등이다(정회경 등, 2022: pp.162-163; Steve Evans, 2020.7.30).

5) 아카이브 활용 현황

NFSA는 일반인들에게 그들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개방하기 위한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전시, 문화제, 세미나 등의 방법들이 그것이다. 그 외 호주 내 주요 도시에서 열람 공간을 마련하고 있으며, 연구 및 전시 등 비영리적 목적으로 이를 활용하고 싶은 이들은 NFSA에 개인 문의가 가능하다. DVD, VHS 테이프 등의 매체에 기록된 자료들은 사전에 예약한 후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했을 때 방문 후 시청할 수 있으며, 또한 방문해서 열람한

자료 중 추가 활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동의 및 자체 규정에 따라 대여 및 복사 등을 할 수 있다. 추가로 NFSA는 홈페이지에 온라인 검색 서비스 및 큐레이터 기반 온라인교육 자료 등을 제공 중이다(정회경 등, 2022: p.151).



* 자료: NFSA(2022)

[그림 2-22] NFSA 소장자료 검색화면(키워드 검색)

특히 교육용 콘텐츠의 경우에는 별도의 검색엔진 서비스(Digital Resource Finder)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데, 큐레이터가 콘텐츠를 선별해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학교의 소재지, 학년 및 과목 등의 분류를 기준으로 교육용 콘텐츠를 검색, 시청, 필요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영상정보, 태그 및 영상에 대한 요약설명 등 메타데이터(45)를 함께 제공 중이다(정회경 등, 2022: pp.152-153).

45) 서비스 메타데이터 : 제목/부제, 교육활용 정보(교육지역, 학년, 교과목, 세부주제), 클립별 시놉시스, 제작년도, 영상길이, 관련태그, 배경설명(Background Information), 교육활용방법(Classroom Activities), 연관콘텐츠(Further Resources)(정회경 등, 2022: pp.152-153).



GLOBAL WARMING

National / Year 7 & 8 / Australian Geography - Global issues and the role of citizenship - Search Again

This is a printer friendly page
Free for educational use



Video clip synopsis - Is the rate of present day consumption enslaving future generations?
Year of production - 2007
Duration - 2min 46sec
Tags - energy, environment, Learning Journey
Energy, resources, slavery, see all tags

- ON THIS PAGE**
- About the video clip
 - Curriculum Focus
 - Background Information
 - Classroom Activities
 - Further Resources

How to Download the Video Clip

To download a free copy of this Video Clip choose from the options below. These require the free Quicktime Player.

- Premium MP4
globwarm_pr.mp4 (20.4MB).
- Broadband MP4
globwarm_bb.mp4 (9.6MB).

ABOUT THE VIDEO CLIP top

Talkback Classroom is a forum program run by the Education section of the National Museum of Australia. Each year a series of forums are held. At each forum a panel of three secondary students, selected from schools Australia-wide, interview a leading decision-maker on an important current issue. The panel participate in a 'learning journey' to explore

* 자료: NFSA(2022)

[그림 2-23] NFSA 교육용콘텐츠 개별 콘텐츠 열람 화면 기본정보

그 외 NFSA에서 소장하고 있는 콘텐츠에 대한 영리적 목적의 활용 또한 가능한데, 이는 교육 및 연구부터 상업적 활용 등 그 목적에 따라 이용가격을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 이용가격을 산정에는 요청한 자료의 수량, 해당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 규모, 저작권 이슈, 요청의 시급성의 정도, 해당 자료에 대한 보존 및 복원 등 기술 처리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한다(정희경 등, 2022: pp.155-156). 또한 저작권자와 계약을 맺은 사항에 따라 해당 이용료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저작권자들에 분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사실상 해당 이용료는 대부분 NFSA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에 해당해, 초기에 저작권자들과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NFSA와 수익을 배분하는 등의 계약 방식을 권장하지 않는 편이다(정희경 등, 2022: p.157).

Usage and licence fees – commercial use	Single medium up to 10 years (30 second minimum)	Two media up to 10 years (30 second minimum)	Multiple media use up to 10 years (30 second minimum)
Footage - Single Country	\$30 per second	\$45 per second	\$60 per second
Footage - World	\$50 per second	\$65 per second	\$90 per second
Audio - Single Country and World	50% of footage usage or licence fee	50% of footage usage or licence fee	50% of footage usage or licence fee
Stills - Publishing Single Country	\$130 per image	\$180 per image	\$230 per image
Stills - Publishing World	\$250 per image	\$350 per image	\$450 per image
Whole Program Screening (NFSA watermarked) - Single Country	\$175 per title	\$275 per title	\$400 per title
Whole Program Screening (NFSA watermarked) - World	\$350 per title	\$550 per title	\$700 per title

* 자료: NFSA(2022).

[그림 2-24] NFSA 이용료 및 라이선스비 요율표

NFSA는 방송사 등 다른 미디어 사업자들과의 협업 체계를 통해 ‘Newscarf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데, 이는 각 미디어사업자들이 보유하는 콘텐츠 중 공공 활용을 목적으로 일부 콘텐츠를 선별해 제공하는 대국민서비스이다. 2018년에 시작된 해당 프로젝트에는 공영방송사 ABC, SBS 외에 다른 민간 방송사 및 외주제작사 등도 참여 중이며, 호주 내 역사적인 사건사고를 다룬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들을 입수해 무료로 방송 자료를 제공 중이다(정회경 등, 2021: pp.158-159). NFSA는 이와 같은 미디어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고품질의 호주 뉴스 모음집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정회경 등, 2021: p.160).

ABC	FOX Sports Australia
Imparja	NBN
Network Ten	Nine Network
NITV	Prime7 Network
SBS	Seven Network
Sky News Australia	Southern Cross Austereo
WIN Network	

* 자료: NFSA(2022).

[그림 2-25] NFSA NewsCaf 프로젝트 참여 사업자

5. 소결

이번 절에서는 해외에서 운영 중인 공공 아카이브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해당 사례들을 통해 국내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시사점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프랑스는 방송·영상산업에 대한 의무제출제도를 운영 중인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인데, 1992년 ‘방송납본제’를 도입, 199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의 방송영상 자료 납본 기관인 INA는 방송 및 영상 콘텐츠 관련 국립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기관으로서 세계 여러 국가들에 참고할 만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 같은 프랑스 사례에서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법적 토대가 강력한 수준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점으로 꼽을 수 있다. 방송납본제를 위한 근거 외에도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나아가 공공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국내 공공 방송 아카이브 구축에 있어 법제 차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 외에도 프랑스 INA의 사례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참고 모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프랑스 사례는 특히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영국은 TNA를 설립해 공공 기록물에 대한 아카이브 규제 체계를 구축, 운영할 정도로 국가적으로 기록물 수집, 보관, 활용 등에 관심이 높은 편이다. 특히 미디어의 공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공영 및 민영 방송사들의 영상물을 아카이브화하는데 BFI가 힘을 쓰고 있다.

영국 사례에서 주목해볼 만한 점은 방송 영상 콘텐츠에 대해 영국 정부가 갖고 있는 관점이다. 영국은 방송 영상 콘텐츠에 대한 공익적 가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고 그러한 가치, 또는 철학에 기반해 (특히 국영방송사를 중심으로)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영국이 오랜 시간에 걸쳐 견고한 제도화를 이뤄낸 결과, 시대의 변화 또한 빠르게 반영해오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효율적인 공공 방송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영국처럼 별도의 기관을 신설하기 보다는 기존 조직(가령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기구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을 통해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을 수행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함께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정회경 등, 2022: p.96).

한편 미국은 방송콘텐츠의 수집과 보관과 관련해 정부가 수행 주체로 전면에 위치하기 보다는 의회도서관이 이를 수행하고 있고, 납본보다는 기획 수집의 형태로 이뤄지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방송콘텐츠의 경우 방송사들의 사적재산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기록물에 대한 수집 범위 및 방식에 있어 제공자들의 자율적 판단에 비교적 많이 의존하고 있는 편이다.

국내 아카이브 구축 관련 공적 논의가 기존 법제와의 충돌 문제, 그리고 방송 사업자들 간의 의견 불일치 등으로 인해 다소간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유연한 방식으로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 또한 참고할만한 지점이 존재한다. 가령 무리하게 법제간 충돌을 감안하면서 제도를 마련하기보다는 방송사를 규율하는 주체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세칙에 기반해 방송사업자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이 의회도서관이 정부를 대리하여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의 경우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기구(가령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에 이를 맡기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겠다(정희경 등, 2022: p.79).

끝으로 호주의 NFSA는 NAA와 함께 호주 내 시청각 분야의 기록관리 정책기구로서 기능하고 있다. 해당 기구는 각국의 공공 방송통신 콘텐츠(영화, 방송영상, 멀티미디어, 구술 채록 녹음자료 등) 영구보존 및 대국민 접근성 보장과 함께, 관련 정책 총괄 역할을 함으로써 공공 아카이브 주요 역할을 수행 중이다.

호주의 사례에서는 아카이브 구축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 간 신뢰가 매우 두텁다는 점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사실상 호주는 콘텐츠에 대한 의무 제출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콘텐츠를 선별해 적극적으로 기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정부의 제작지원사업이 아카이브 수집과 연계되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에서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을 통해 제작 지원을 받고 있는 콘텐츠들을 이 아카이브 시스템과 함께 연계하여 수집, 보존, 나아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제 3 장 방송사 아카이브 실사결과

제1절 방송사 아카이브 관리 공통 특징

본 연구에서 수행한 방송사 아카이브 실사 결과는 크게 주요 공영방송(KBS, EBS) 및 지역 방송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KBS 및 EBS는 2010년대 중반 보도 및 편성 부문에서 HD급 디지털제작시스템을 구축하며 아날로그 매체 디지털화 및 디지털아카이브를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디지털제작 지원 및 중장기 콘텐츠 관리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편이다. 그러나 공영방송사로서 주어지는 공적 책무에 비해 공공서비스 제공 및 콘텐츠 재난안전관리 대책은 여전히 미비한 편이다.

반면, 지역방송사는 이러한 시스템 구축의 후발주자로서 대체로 2010년대 후반부터 보도 부문을 중심으로 디지털제작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면서 디지털아카이브를 도입하고 있다. 디지털 제작 지원 및 아카이브 스토리지 용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안정적인 백업 및 콘텐츠 재난안전관리 대책, 단기 및 중장기 아카이브 운영 정책 등이 미비하다. 이 절에서 다루는 방송사 아카이브 관리의 공통적인 특징은 주로 지역방송사 조사결과에 기반을 둔 분석임을 미리 밝힌다.

1. 아카이브 관리 조직 및 인력

본 조사에서 방문한 모든 지역 방송사에는 아카이브(구. 영상자료실) 전담 인력 및 조직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대부분 경영 또는 기술 관련 부서에서 자료관리를 겸직하는 체제이나 자료관리보다는 주 업무에 집중하다 보니 자료관리는 방치되고 있다. 문제적 상황을 각 사에서도 인식하고 있지만 회사에서 전담인력 배치를 위해 별도 재원을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다.

2. 아카이브 관리 영역별 이슈

디지털 제작 환경에서 지역사의 아카이브 관리 영역은 크게 ‘매체 자료 관리’와 NPS(Network Production System)시스템과 연계된 ‘데이터 관리’로 구분할 수 있다. ‘매체 자료관리’는 SD 또는 HD급 테이프 매체를 비롯하여 그 이전 세대의 매체인 유매틱(3/4인치)테이프(1970년대), 2인치 및 1인치 헬리컬 비디오테이프(1960년대)⁴⁶, 16mm필름(1960년대) 등의 관리를 지칭한다. ‘데이터 관리’는 디지털제작시스템에서 뉴스 및 편성 부문 제작에 필요한 스토리지 관리, 중장기적인 라이브러리(ODA, LTO) 관리를 말한다.

1) 매체 자료 관리

(1) 자료 방치

지역사마다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보도 부문의 테이프 매체는 디지털화(파일변환)가 된 상태이나 편성 부문에서는 SD 및 HD급 테이프 형태로 보관되어 있다. 향온향습 시설 없이 테이프만 서가에 배가된 경우가 많아 테이프의 열화로 인해 재생 불가 자료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1] 전주MBC 테이프자료 관리
(지하공조실에 위치)



[그림 3-2] 강원영동MBC테이프 자료서가
(사용하지 않는 라디오 녹음실에 위치)

46) 2인치/1인치 헬리컬 비디오 테이프란 폭이 2인치 또는 1인치인 비디오 테이프를 사용하는 헬리컬 주사 방식의 비디오 테이프를 지칭한다. 2인치가 먼저 등장했고, 기기가 소형화되면서 1인치가 등장했다. 테이프를 원통(drum)에 a형으로 감는 방식과 Ω형으로 감는 방식 등을 구분한다. 즉, 자기(마그네틱) 매체로 된 비디오 테이프가 원통에 필름처럼 감겨있는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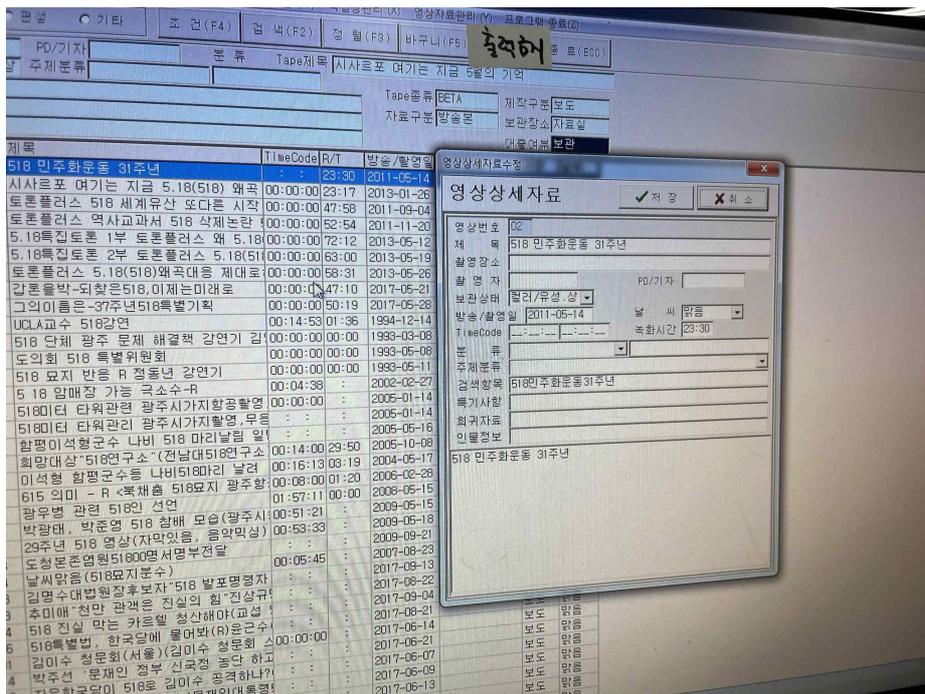
(2) SD/HD 방송테이프 VCR 장비 부족

테이프 자료를 보유한 회사 내에도 이를 재생할 VCR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많은 지역사에서 디지털제작시스템에서 테이프 자료를 활용하거나 보관된 테이프 자료에 대한 디지털화 작업을 당장 진행하지 않아 테이프 자료를 서가에 배치해두고 있다. 향후 이를 디지털화하기 위해서는 중고 장비를 매입해야 하는 회사가 많다. 일부 회사에서 불용장비 매입이 가능하지만, 국내에서 방송용 VCR 장비 수리, 부품 구입, 장비 운용 등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해외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를 대비하여 아날로그 매체 전량 디지털화 작업에 긴급 예산을 마련해 진행해왔다. 프랑스는 정부가 국비 추경을 통해 1999년부터 소장 아날로그매체 전량 디지털화를 착수하여 2019년 완료했다. 미국과 호주 정부도 긴급 추경을 통해 각 사 테이프자료 디지털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3) 테이프 자료 목록 및 DB미비

대부분 지역에서 테이프 자료를 검색하기 위한 별도의 DB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일부 지역사에서는 1990년대 자료실 DB(MS엑세스 기반)가 구축되어 있어 해당 DB에서 검색이 가능하지만, 제작진들은 해당 DB를 자주 활용하지는 않는다. DB검색 PC가 자료실에 1대 별도로 있거나 전혀 없는 경우도 있다. 테이프 자료 디지털화가 안 된 상태이므로 테이프 자료는 실제 제작에 활용되고 있지 않다.



[그림 3-3] 광주MBC 테이프자료 검색DB (검색PC가 없는 곳이 더 많음)

소장 테이프 자료를 전량 디지털화 완료한 사례는 본 조사에서 방문한 곳 중 춘천MBC와 안동MBC이다. KBC광주방송의 경우 회사 2018년 이전 시 디지털화 작업 없이 테이프 자료 폐기되었다. 강원영동MBC에서 삼척MBC 회사 이전 시 80%이상 테이프 자료가 폐기되었다. OBS경인tv의 경우 2007년 개국 당시부터 디지털제작시스템으로 구축되어 테이프 자료가 없다. OBS경인tv 설립(2012) 이전 iTV경인방송의 테이프 자료는 디지털화 작업 없이 폐기된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 부산MBC, 목포MBC, 제주MBC 등 신사옥 이전을 앞둔 회사에서는 테이프 자료 디지털화가 타 사에 비해 시급한 과제이다.

2) 디지털제작시스템(NPS시스템) 내 데이터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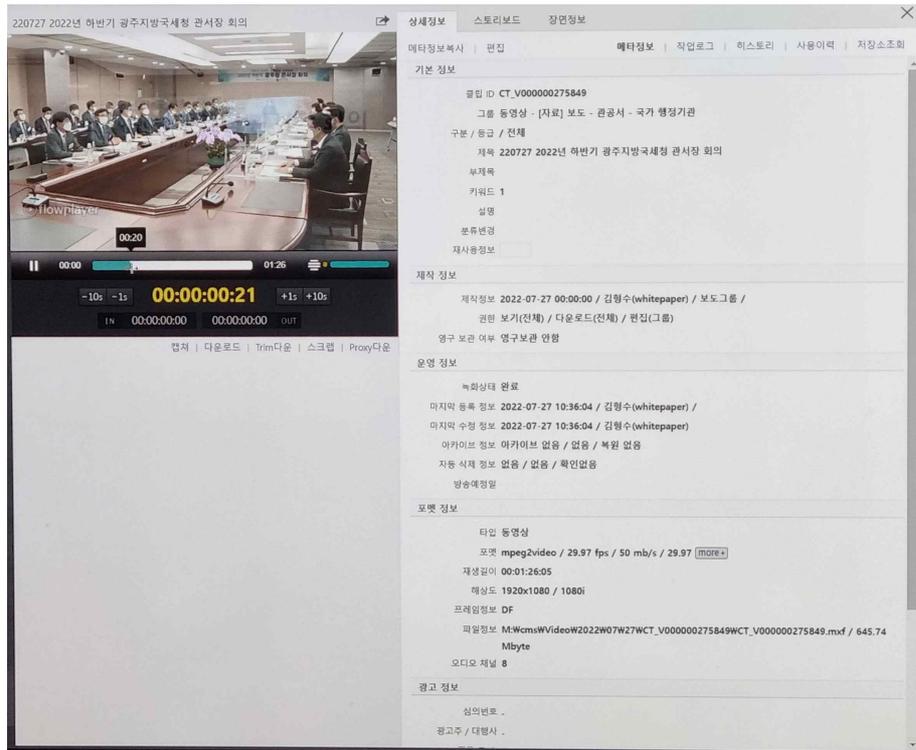
(1) 데이터 관리 정책 부재

2018년을 전후하여 네트워크 기반 제작시스템(NPS)을 구축한 지역사에서는 디지털아카이브를 일부 구축했다. 제작용 또는 아카이브용 스토리지에는 보도 부문 테이프자료 디지털화 파일, 디지털 제작 방송본 파일, 클린본 파일, 소재자료(보도 부문) 파일 등을 보관한다. 그런데 데이터 관리 정책이 부재하기 때문에 어떤 자료가 등록, 영구 보존되어야 하고, 어떤 자료는 일정 기간 지나면 폐기해도 되는지 등의 정책이 수립된 곳은 한 곳도 없다.

(2) 메타데이터 부실 및 관리 부재

보관된 파일(테이프 자료 디지털 변환 파일, 디지털제작으로 축적된 방영본/클린본/소재자료)의 메타데이터는 제목 외에는 영상정보 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부 회사에서는 ‘메타데이터 입력 지침’ 등이 있긴 하지만 해당 지침을 준수하여 입력되고 있는 곳은 별로 없다. 이는 KBS, EBS, MBC 등 디지털아카이브를 비교적 일찍 구축한 주요 지상파 방송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디지털제작시스템을 구축한 주요 방송사에서는 이처럼 디지털제작시스템 구축 속도와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는 이용자들의 시스템 적응 속도 차(Gap)로 인한 여러 문제점이 누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보유한 시스템 구축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활용의 효율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대한 분량의 영상이 매일 입수되고 이에 따른 메타데이터가 입력되지만 대부분 방송사 MAM(Media Asset Management) 시스템에서 방송프로그램이 제작·송출된 이후에는 사후 관리가 절차화되어 있지 않다⁴⁷⁾.

47) 각 방송사에서는 뉴스MAM 구축에 따라 아날로그 뉴스제작 환경에서 디지털 뉴스제작 환경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뉴스 제작에 필요한 자료 검색을 비롯해 현장 취재 이후 취재영상 입수 및 취재내용 정리, 이를 기초로 한 영상편집, 기사녹음, 편집완본 제작 등에 이르기까지 취재에 필요한 정보 검색 및 정보 등록의 방식이 급격하게 변화했다. 하지만 뉴스MAM 이용자, 즉 보도국 구성원들은 이러한 시스템 및 제작방식 변화를 빠른 속도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구축한 뉴스MAM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그림 3-4] KBC광주방송 CMS시스템 내 아이템 단위 기술 현황

- 제목(220727 2022년 하반기 광주지방국세청 관서장 회의) 외 다른 메타데이터 입력 사항 없음
- 등장 인물, 촬영장소, 회의 내용 또는 인터뷰 내용, 키워드 등 영상의 내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은 거의 입력하지 않음

상황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디지털제작시스템을 구축한 주요 방송사에서는 이처럼 디지털제작시스템 구축 속도와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는 이용자들의 시스템 적응 속도 차(Gap)로 인한 여러 문제점이 누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보유한 시스템 구축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활용의 효율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효진 외. (2022). p.125.)

(3) 백업 및 이중화 부재

디지털화 작업을 완료한 지역사의 경우 대부분 소니(Sony)社 Optical Disc Archive(ODA)⁴⁸⁾디스크(블루레이 디스크 11개 분량, 1개당 3.3TB)에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다. 소니 사(社)에서는 각 지역사의 NPS 구축 단계에서 방송장비 납품 시 테이프 자료 디지털화 및 ODA라이브러리를 도입하도록 유도하여 많은 회사가 ODA디스크에 영구보존 대상 데이터를 장기보관하고 있다. 많은 지역사에서는 NPS시스템에 연계된 온라인 스토리지 외에 ODA디스크에 1차 백업을 하는 셈이며, 해당 백업본에 대한 이중화⁴⁹⁾·소산(이원화) 정책이 있는 회사는 방문한 지역사 중 한 곳도 없었다.

48) 소니(Sony)에서 개발한 Optical Disc Archive는 장기보존용 아카이브 저장 매체의 하나로, 2013년 1세대(1.5TB) 개발 이후 2016년 2세대(3.3TB) 개발하면서 효율적인 방송·영상 데이터 저장 방식으로 많은 화제를 모았다. 뛰어난 호환성을 가지고 있어 별도의 마이그레이션 작업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카트리지는 기온과 습도 변화에 강한 디스크를 사용하여 외부영향으로 인한 손상을 최소화한다는 장점으로 많은 방송사에서 아카이브 저장 방식으로 채택한 바 있었다(방송과 기술, 2016.11.3.).

하지만 소니사가 지난 2020년 전후하여 생산 중단을 선언한 이후로 ODA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를 다른 매체에 이관시켜야 하는 이슈가 있다.

49) 데이터 이중화란 '같은 데이터센터'에서 원 서버의 내용을 복사해 두는 개념이다.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백업, 그리고 업계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서버 이중화(HA·High Availability)가 대표적인 이중화 기법이다. 백업은 여러 서버의 내용을 1개 백업 서버에 저장하는 반면, HA는 1개 서버의 내용을 1개 백업 서버에 저장한다. 원 서버 훼손 시 백업 서버는 복구에 1~2시간이 걸리는 데 반해 HA는 서버를 1대1로 복사했기 때문에 5분 이내로 복구가 가능하다. 이중화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이 바로 이원화다. 이중화는 서버 내용을 복사할 순 있지만 같은 데이터센터 내에서 작업이 이뤄진다는 한계가 있다. 지난 2022년 10월 카카오社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와 같이 데이터센터 전체에 전원 공급이 차단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원 서버가 있는 데이터센터에서 15km 이상 떨어진 곳에 별도의 백업 데이터센터를 짓는 '이원화' 개념이 탄생한 것이다. 천재지변 등 재해로부터 손상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인 재해복구(Disaster Recovery)센터가 바로 이원화의 대표적인 방식이다(매일경제 2022.10.31.)

SONY

Sony Korea Corporation
23F, One IFC, 10 Gookjegeumyoong-Ro, Yeouido-Dong, Yeungdeungpo-Gu, Seoul, Korea

문서 번호: 2205-31430
일 자: 2022년 5월 31일
발 신: 소니코리아㈜ 프로페셔널 사업부
수 신:
제 목: Sony Optical Disc Archive 생산 및 공급 중단의 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Professional Solutions 제품 군을 수입 및 판매하는 Sony의 한국 공식 법인으로서 Sony Optical Disc Archive 제품의 공급 중단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3. Sony Imaging Products and Solutions (이하 SIPS)은 데이터 아카이브를 위한 제품과 서비스 공급에 최선을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Optical Disc Archive (이하 ODA) 제품의 단종으로 인하여, 한국 시장에서의 ODA 하드웨어 제품 공급은 2023년 3월 31일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ODA 하드웨어 제품의 최종 주문은 2022년 12월 16일까지 가능하며, 고객 서비스(수리 부품 포함)은 하기와 같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대상 제품	고객 서비스 기간
ODS-D55U	2025년 3월 31일까지
ODS-D77U/D77UA/D77F	2028년 3월 31일까지
ODS-D280U/D280F	2028년 3월 31일까지
ODS-D380U/D380F	2030년 3월 31일까지
ODA Library	2030년 3월 31일까지

4. ODA 카트리지 (Optical Disc Archive Cartridge)는 하드웨어 서비스 지원 기간까지 공급될 예정입니다.
5. 귀사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끝 -

Komine, Hideki
Professional Solutions Division Company Head
Sony Korea Corporation

[그림 3-5] 소니 사 ODA디스크 제조 중단 알림 공문

(4) 소니 ODA 디스크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이슈

소니 ODA디스크는 소니사가 생산 중단을 선언한 매체로서 향후 10년 이내 다른 매체 (LTO테이프나 하드디스크 등)로 데이터 이관을 반드시 해야 한다. 데이터 이관 및 신규 매체 도입에는 큰 규모의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사에서 쉽게 이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못하다. KBC광주방송, OBS경인tv가 LTO테이프를 라이브러리 보관을 하는 사례 외에는 방문조사한 회사 대부분 ODA디스크에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그림 3-6] 경남MBC ODA디스크



[그림 3-7] KBC광주방송 LTO테이프

3. 소장 콘텐츠 관리 현황

1) 본(Born) 디지털 데이터 100% 제작 및 보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한 지역사 중 디지털 제작 및 송출에 의해 디지털데이터만 보관하고 있는 방송사는 지역MBC 중에는 춘천MBC 및 안동MBC가 있고, 지역민영방송사로는 OBS, KBC광주방송이 있다. 춘천MBC와 안동MBC는 소장하였던 테이프자료를 전량 디지털화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안동MBC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차에 걸쳐 소장한 1만 2천여 개유매택, 베타캠SP, 디지베타, HDCAM 등 아날로그 및 SD/HD급 테이프자료를 모두 디지털화했다. 춘천MBC는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3월까지 소장자료 약 2만여 개 테이프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약 267TB 분량의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다. OBS는 2007년 개국 당시부터 디지털제작시스템을 구축하여 파일 기반 제작 및 송출을 하면서 디지털아카이브를 구축하였고, KBC는 2019년 신사옥으로 이전하면서 테이프자료는 모두 폐기하고 현재 디지털제작시스템 및 디지털아카이브만 관리하고 있다. KBC는 2019년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4~5년 전 방송된 프로그램이 보관된 테이프자료 중 약 10%만 남기고 모두 폐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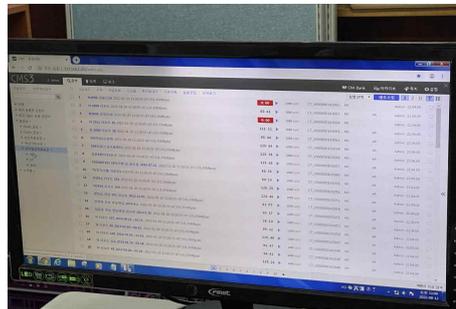
디지털파일로만 제작 및 데이터 보관을 하는 지역사들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지역사는 장기보존용 저장매체로 소니의 ODA디스크를 이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방송사에서는 제작편집프로그램(NLE)에 연계된 온라인스토리지(하드디스크) 외에 데이터의 중장기보관을 위한 오프라인스토리지로서 LTO테이프라이브러리 또는 ODA디스크를 이용한다. 본 조사에서 확인한 지역사들은 민영방송사인 OBS, KBC 외에는 대부분 ODA디스크로 보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각 사에서 데이터 이관 작업과 관련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조사의 생산 중단 문제 외에도 ODA디스크의 보관 방식과 관련해서도 사후 대책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지역사는 ODA디스크를 편집실 등의 수납공간에 ‘스탠드 얼론(Stand-Alone)’ 방식⁵⁰⁾으로 보관하며, 사내 이용자가 개방형 서고와 같이 필요한 자료

50) 소니 사에서는 한국어 번역으로 ‘독립형 옵티컬 디스크 아카이브’로 지칭하였다. 이에 상응하는 ‘페타사이트 옵티컬 라이브러리(Petasite Optical Library)’ 솔루션은 표준랙(Rack)에 복수의 ODA디스크를 설치하여 라이브러리 형태로 165TB에서 최대 2.9PB까지 데이터 보관 용량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이다. 국내 지역사에서는 대부분 독립형으로 구축해서 이용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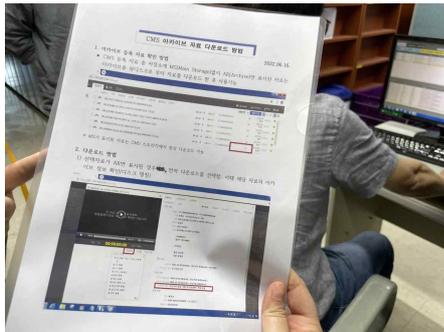
를 ODA드라이브에서 자체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용한다. 이러한 보관 및 이용방식으로 인해 디스크 및 데이터 분실 문제가 우려된다. 대부분 지역사에서 특정 담당자(일반적으로 편집 관련 부서 직원 1명)를 해당 공간 및 디스크 관리자로 지정하고 있지만, 해당 직원 외에도 여러 직원이 ODA드라이브를 드나들며 자료를 찾는 과정이 지속되면 보안 관리 측면에서 불안정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별도 백업 또는 이중화가 필요하다. 조사한 지역사에서는 ODA디스크에 보관한 데이터를 일종의 ‘백업’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에 대한 데이터 이중화 및 소산 정책이 있는 회사는 한 곳도 없었다.



[그림 3-8] 춘천MBC 아카이브 검색대



[그림 3-9] 춘천MBC 아카이브 검색 화면



[그림 3-10] 춘천MBC 아카이브 사용 가이드



[그림 3-11] 춘천MBC 보도 및 제작 부문 ODA디스크

2) 아날로그 매체 및 디지털 데이터 혼재

본 조사에서 살펴본 지역사회 대부분은 아날로그 매체 및 디지털 데이터를 모두 보관하

https://pro.sony/ko_KR/products/optical-disc/product-range

고 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NPS시스템 및 CMS, 디지털아카이브를 구축한 대부분의 지역사가 이러한 형태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NPS시스템이나 NLE프로그램과 연계된 CMS에 제작 영상을 등록하는 지역사에서는 대체로 소재자료(취재원본 또는 촬영원본), 편집완본 클린본, 자막 등이 있는 방영본(온에어본) 파일을 CMS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회사에 따라 데이터 관리 정책이 약간의 편차가 있지만, 대체로 보도 부문에서는 소재자료, 편집완본을 모두 관리하고, 제작 부문에서는 편집완본만 관리한다. 제작 부문에서 각 프로그램의 촬영원본은 데이터 용량 부담으로 인해 CMS에 등록을 못하고 있다. 보도 및 제작 부문 모두 자막 등이 있는 방영본은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 실시간 스트리밍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유튜브 영상을 일종의 아카이브로 여기는 지역사가 대부분이다. 즉, 데이터 용량 부담으로 인해 방송용 마스터영상은 별도 관리를 하는 회사는 매우 극소수이다.

매체 자료의 경우, 대체로 보도 부문 SD/HD급 테이프 자료는 디지털화를 완료한 편이지만 해당 작업을 수행하지 못한 방송사도 있다(강원영동MBC, 제주MBC, 울산MBC 등). 대부분 오래전부터 지속된 지역사들의 경영 악화로 인해 이용률이 크지 않은 테이프 매체를 비롯한 아날로그 매체 디지털화는 예산 투자 및 작업을 보류하고 있다.

대부분 지역방송사가 SD 및 HD급 테이프자료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TV 및 라디오 도입의 역사적 원형(原形)을 확인할 수 있는 16mm필름, 2인치 및 1인치 헬리컬 비디오, 유매틱 비디오 등 구 매체를 보유한 방송사도 몇 군데 있었다. 대부분 지역에서 이러한 구 매체는 아날로그 베타(베타캠SP) 테이프 또는 디지털 테이프에 매체 이관을 한 형태로 보관해왔으며, 해당 테이프를 디지털화하였기 때문에 SD급 해상도(720*480)형태의 파일로 제작에 활용한다. 구 매체 가운데 필름 매체는 최근 2K 및 4K/UHD급 디지털화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 사가 보관하고 있는 필름매체를 다시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기술적 요소 외에도 구 매체에 보관된 자료의 역사적 가치 차원에서도 장기보존(Preservation) 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테이프 자료 보유량만 약 7만여 점 보유한 부산MBC에는 1960년대 4.19혁명 당시 취재한 영상 등 16mm필름 및 2인치, 1인치 헬리컬 비디오를 다수 보유(구 매체 목록은 별도로 없음)하고 있는데 해당 자료는 KBS나 서울MBC 등에서 보유한 자료보다 시기적으로 더 오래되고 역사적 사건사고를 기록한 자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2] 부산MBC 16mm필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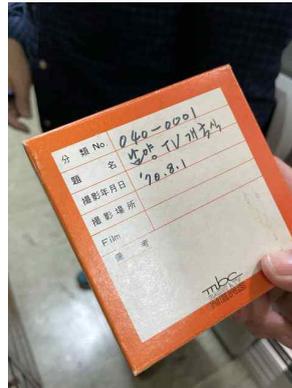


[그림 3-13] 부산MBC 1인치헬리컬비디오

TV방송 테이프 외에도 라디오 방송을 기록한 릴테이프, LP, CD 등 다양한 형태의 아날로그 매체를 각 사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별도의 통계는 대부분 조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영상 및 음성자료 외에도 지역의 사진관 등에서 기증한 사진자료, 문헌자료 등 다양한 매체를 보관하고 있는 지역사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3) 아날로그 매체 폐기 위기

이번에 조사한 방송사 가운데 신사옥 이전 계획이 있는 방송사들은 디지털화 작업 여부와 상관없이 아날로그 매체가 폐기를 고려하고 있는 곳도 있었다. 제주MBC는 구체적인 이전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사옥 이전을 앞두고 있는데, 필름 및 테이프 자료, 슬라이드 필름 등의 전수조사 및 목록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창고에 방치되어 있다. 목포MBC도 2023년 사옥 이전 계획이 있어 아직 디지털화 하지 않은 제작 부문 테이프 자료 약 1만 2천여 점의 디지털화 작업을 선행하고, 디지털화 이후 테이프 자료 폐기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2023년 6월 사옥 이전을 앞둔 부산MBC는 보유 중인 7만여 점 테이프 자료 중 아직 디지털화를 하지 않은 약 1만여 점의 테이프자료와 일부 구 매체(필름, 헬리컬비디오, 유메틱) 외에는 모두 폐기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진행한 인터뷰에서 공영 아카이브를 구축하게 되면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여 보유한 자료를 공공 차원에서 공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했다.



[그림 3-14] 제주MBC 슬라이드 필름 및 16mm필름 자료

라. 통계자료 제공 불가능한 곳

이번 조사에 참여한 지역사 중 많은 지역사가 그간 확인한 소장자료 통계를 제공했지만, 일부 지역사는 통계자료가 미비한 곳도 있었다. 상술한 제주MBC를 비롯하여 전주MBC, 대전MBC, 울산MBC 등 일부 지역MBC 계열사와 지역 민영방송사들은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었다. 통계를 제공한 지역사에서도 이전부터 사내에서 전해지는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정확도 내지 신뢰도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하였다. 특히 필름 등 디지털화 작업을 시급히 진행해야 하는 구 매체의 소장현황은 이번에 조사한 지역사 대부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 필름이나 테이프 매체 외에도 디지털아카이브를 관리하는 지역사에서도 전체적인 데이터 용량만 파악할 뿐 제작부서별, 주제별, 출처별, 파일 유형별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

4. 아카이브 외부 개방

이번 조사에 참여한 지역사가 자사가 보유한 자료를 외부에 어느 정도로 개방하는지 질문하였다. ‘개방’의 범위는 자사 홈페이지에 방송 다시보기,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의 방송다시보기 및 ‘클래식콘텐츠’ 활용 콘텐츠 업로드를 포함하여 콘텐츠 판매, 문화예술 사업이나 학술연구 등을 위한 공익적 활용 여부 등 포괄적으로 보았다.

1) 콘텐츠 판매 내규에 따라 판매

조사 결과, 많은 지역사들이 자사 콘텐츠 판매 내규에 따라 개인 및 기업, 단체, 공공기관 등에 콘텐츠 사용 용도나 요청 분량, 사용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콘텐츠를 판매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지역MBC의 콘텐츠 판매 내규는 회사마다 약간씩 다른데 서울MBC의 기본적인 틀을 준용하여 만든 규정이다. 원칙적으로 외부에는 각 사의 자료를 유료로 제공하지만, 이번에 만난 지역사 관계자들은 PD나 기자 등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자료를 무상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MBC나 지역MBC 계열사 사이에서는 대체로 자료를 무상 협조하는 방식이고, 타사에서 자료요청이 들어오면 유상 제공한다. 지역민영방송사들은 SBS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해당 지역의 사건사고 관련 자료 요청이 간혹 들어오면 이에 자료를 협조한다.

외부에서는 유튜브 채널에 올린 클립이나 지상파 방송 등을 시청하고 해당 프로그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요청한다. 대학이나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 활용 요청, 지역 박물관이나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활용 등을 위해 자료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지 질문하였는데, 이러한 요청을 받은 지역사는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자주 요청이 들어오지는 않지만, 학술연구, 교육, 문화예술 활용, 영상 창작 활용 등을 목적으로 외부에서의 자료를 요청하면 대체로 내규에 따라 판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홈페이지나 별도 검색 플랫폼을 구축하여 자사의 영상자료를 외부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본 지역사는 현재까지는 없었다. 그러나 유튜브에 업로드된 자사의 자료를 보고 자료구입 문의 등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상자료 개방 공유를 위한 동영상 공유 플랫폼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편이었다.

2) 자사 및 타 플랫폼 활용 공개

조사에 참여한 모든 지역사들은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에 방송 다시보기 클립을 올려두고 있었다. 각 사가 보유한 과거 영상자료를 활용해 유튜브 콘텐츠를 별도로 만드는 지역사는 강원영동MBC와 경남MBC가 대표적이었다. 강원영동MBC는 유튜브 채널 ‘옛날티브이’를 운영하여 자사가 1970-1980년대에 촬영한 유매틱 비디오 테이프의 디지털화 자료를 재편집하여 주제별로 클립을 업로드한다. 경남MBC는 최근 피아니스트 임윤찬의 과

거 모습을 담은 ‘통영국제음악제’ 콩쿠르 출전 영상을 유튜브 공식 채널에 업로드하여 네티즌들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통영국제음악제’는 경남MBC가 지속적으로 행사 녹화를 해온 행사로 음악제 녹화영상은 재능있는 음악인들의 초기 활동 모습을 담은 기록으로 볼 수 있다.



차가 가는데 바퀴가 돌지 않는다..? 눈길도 두렵지 않은 8-90년대 드라이버들의 활약상! | 옛날티브이 고전영상 옛날영상
MBC강원영동 · 조회수 3.2만회 · 2개월 전
#옛날영상 #눈길운전 #눈길 S자 운전이 여기서 나오네... 영상으로 옛보는 그때 그 시절 📺! #옛날티브이는 매일 업로드 됩니다 ☺ 재생목록...



M1카빈 지고 다니는 경찰아저씨.. 🚔 80년대 파출소 영상! | 옛날티브이 고전영상 옛날영상
MBC강원영동 · 조회수 3.8천회 · 1개월 전
#80년대 #파출소 #80년대경찰 걸리면 아주 혼나는 거여~ 영상으로 옛보는 그때 그 시절 📺! #옛날티브이는 매일 업로드 합니다 ☺ 재생목록...



[7번국도] 옛날 티브이 - 그때 그 시절, 눈 구경 가요! / MBC 강원영동 210130 방송
MBC강원영동 · 조회수 2.9만회 · 1년 전
7번국도를 따라 흐르는 지역의 새로운 소식들 ▶ <https://bit.ly/2UpJGZM> MBC강원영동 예능 보러가기 ▶ <https://bit.ly/2MMGMe0> MBC강원영동 오늘의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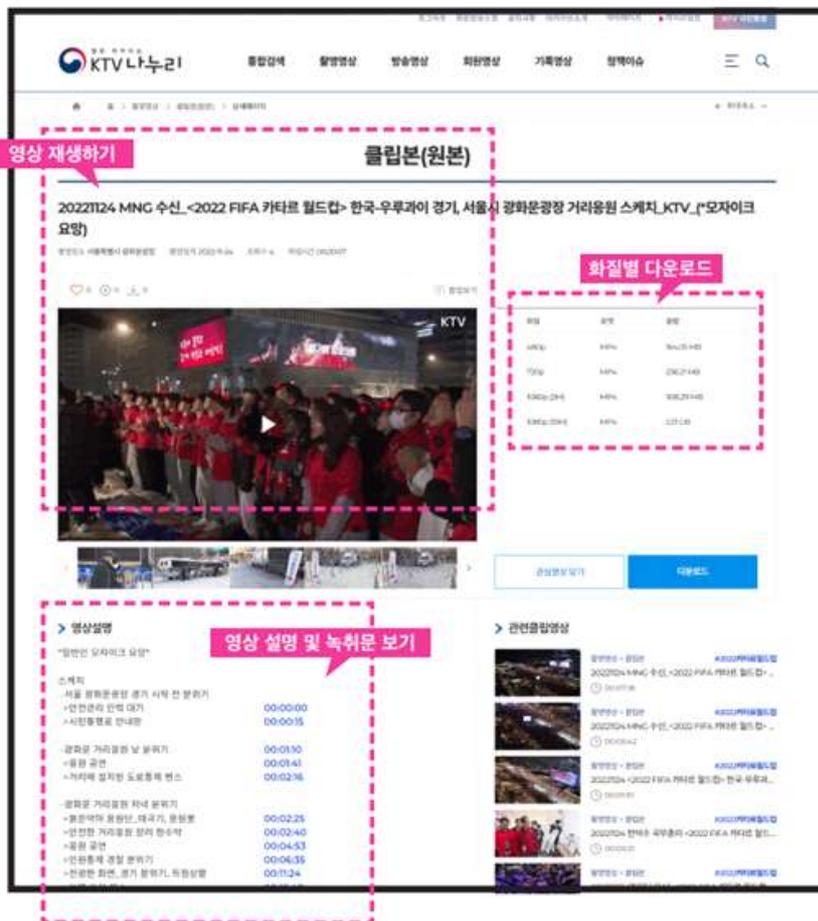
[7번국도] 옛날 티브이 - 예전 설 풍경 / MBC 강원영동 210214 방송
MBC강원영동 · 조회수 6천회 · 1년 전
7번국도를 따라 흐르는 지역의 새로운 소식들 ▶ <https://bit.ly/2UpJGZM> MBC강원영동 예능 보러가기 ▶ <https://bit.ly/2MMGMe0> MBC강원영동 오늘의 뉴스...

[그림 3-15] 강원영동MBC 유튜브 채널 ‘옛날티브이’ 재생목록 디지털화 영상 활용 유튜브 콘텐츠 제작 및 업로드

5. 외부 콘텐츠 활용

이번 조사에 참여한 모든 지역사에서는 외부의 콘텐츠 활용을 간혹 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대체로 ‘유튜브’에서 필요한 자료를 검색하여 타 방송사 등에 판매 문의를 하는 형태이다. 지역에 CMS가 잘 갖추어지지 않은 방송사에서는 외부의 콘텐츠를 검색하는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찾은 자료를 유상으로 구입하여 제작에 활용하기도 하고, 무상 다운로드를 하여 사용한다. 최근에는 KTV의 <나누리> 포털을 통해 ‘대한뉴스’ 등을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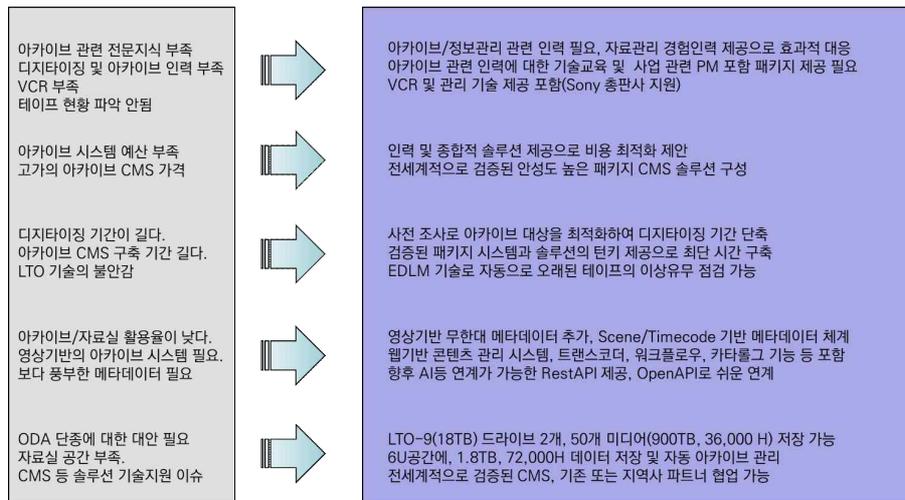
롯데 과거에 촬영된 정책영상을 무상 다운로드 받아 사용한다. 지역MBC계열사와 지역민 방협회 회원사들은 <나누리> 기관 회원으로서 해당 사이트의 검색 및 다운로드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를 위해 질문한 ‘공영 아카이브의 모델’에 대해 일부 지역사에서는 <나누리>와 비슷한 기능요건을 갖추고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구축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충북MBC에서는 ‘KTV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나누리포털과 같은 형식으로 공유하는 모델이 좋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쉽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림 3-16] KTV <나누리> 포털 개별 아이템 단위 열람 화면

제2절 방송사 아카이브 공적 지원 방향

‘(가칭)공영 디지털 방송콘텐츠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의견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다양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세부 항목은 정부의 역할(시스템 구축 지원, 필름 및 테이프 디지털화 지원, 메타데이터 표준 마련 등), 기대되는 점, 우려되는 점 등으로 구성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국내 방송사 아카이브 구축 이슈 및 해결 방안을 정리하면 [그림 3-106]과 같다.



[그림 3-17] 국내 방송사(중소지역방송사)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이슈 및 해결방안

1. 아날로그 매체 디지털화 지원

조사한 방송사 중 극히 일부(춘천MBC, 안동MBC)를 제외하고는 아날로그 매체 디지털화 작업을 진행한 곳이 적다. 대부분 보도 부분 영상자료는 디지털화하였고, 제작 부문은 테이프 자료 및 구 매체 디지털화가 필요하다. 부산MBC, 목포MBC, 제주MBC 등은 사옥 이전 계획에 따라 기존 아날로그 매체 자료 보관을 위한 공간 마련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해당 자료를 폐기할 계획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날로그 매체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작업에 무엇보다 큰 공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화가 필요한 테이프매체 인코딩(파일변환) 및 구 매체 디지털화 작업을 위한 재원, 장비, 기술, 인력, 공간 지원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 각 사마다 지원이 필요한 요소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지원 요소는 각 사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전담 부서 및 인력이 지역사 내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디지털화 및 DB화하지 못한 아날로그 매체들이 각 사 사내 곳곳에 방치되고 있다. 일부 지역사에서는 자사가 보유한 아날로그 매체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곳이 있었고, 통계자료를 제공한 곳에서도 정확한 통계는 아니어서 재조사가 필요한 곳도 있었다.

이번에 방문한 지역사들 대부분 항온항습시설 등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공간에 테이프 자료가 보관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오랫동안 재생되지 않고 보관된 테이프 자료의 물리적 훼손 및 손상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MBC 및 제주MBC 등 필름을 보유한 기관의 자료는 보유한 자료의 필름 스캐닝(2K급 이상)을 진행하고, 해당 자료를 필름 보존시설 기준에 맞는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하는 환경⁵¹⁾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료의 물리적 노후화가 더 진행되기에 앞서 각 사의 아날로그 매체 디지털화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한편, 방대한 분량의 테이프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만 VCR재생기기가 없거나 수리가 필요하여 디지털화 작업이 어려운 지역사도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다른 디지털화 관련 시설 및 장비가 미비하거나 디지털화 작업 과정에서 장비 유지보수나 수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지역사가 디지털화 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자체 예산 및 인력이 부족하다. 자사의 자료 디지털화를 진행한 곳은 부산MBC 한 곳뿐이었으며, 대부분 지역사들은 테이프 매체 디지털화 작업을 보류한 상태이다.

많은 지역사에서 1960년대 이후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촬영된 필름이나 2인치/1인치 헬리컬 비디오, 유매틱 비디오 등은 그 이후 세대의 테이프자료(아날로그/디지털 베타테이프)에 매체 이전을 한 자료를 디지털화하면서 디지털영상으로 변환되어 있는 편이다. 그러

5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준 (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 기준) 온도 - 2~2℃, 습도 25~35%

나 필름 자료의 경우 SD급 화질보다 고화질 디지털화가 가능한 포맷이므로 재작업이 필요하다. 이 자료들에는 해당 지역의 사건사고, 자연, 언어, 문화 등 오래된 역사를 기록한 자료들로서, 공공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보존 및 공공 활용 전략을 고민하여야 한다.

2. 디지털아카이브 운영 지원

2010년대 후반 이후로 NPS시스템 및 콘텐츠관리시스템(MAM 등), 디지털아카이브를 구축해온 지역사들이 많다. 그런데 이러한 신규 시스템에는 아날로그 매체자료의 디지털화 결과물이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테이프 자료를 별도로 검색할 수 있는 MS엑세스 기반의 DB자료와 연동되어 있지 않다. 한편 일부 지역사에서는 장기보존 포맷인 ODA디스크에 저장된 영상 다운로드를 별도의 PC에서 반도록 설계되어 있다. 많은 지역에서 이처럼 디지털제작시스템과 연계된 디지털아카이브 운영 표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복수의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지 않은 지역사 등에는 보다 효율적인 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한 상시 컨설팅 활동도 공공 부문에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디지털아카이브를 구축하여 활용하는 회사에도 영상 정보(메타데이터, 방송사에서는 통상 ‘인덱스’라고 지칭) 기술(Description)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는 대부분 ‘제목’만 간단한 약어 등으로 입력하는 형태인데, 제목이나 내용에 대한 구체적 기술, 타임코드(T.C.)에 기반한 내용 정보 기술, 향후 체계적 메타데이터 정리 및 기술을 위한 가이드라인/등록지침 마련 등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부산MBC, 전주MBC 등에서는 메타데이터 입력 등과 같은 작업 표준을 공공 차원에서 마련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3. 장기보존 포맷에 저장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지원

이번에 조사한 지역사 대부분이 소니 ODA디스크에 데이터 영구보관을 하고 있었다. 제작NLE와 CMS에 연계된 스토리지의 용량 관리 차원에서 CMS에 등록된 데이터를 미리보기(프록시)영상 및 메타데이터만 남기고 대부분 ODA디스크에 주기적으로 이관을 하고, 해당 데이터를 이른바 ‘아카이브’로 지칭한다. 소니는 ODA디스크 제조 중단을 선언한 상태이고, 향후 약 10년 정도 유지보수를 할 계획이므로 장기적으로는 ODA디스크에 보관된 방대한 분량의 데이터 이관을 위한 대비를 해야 한다. 각 사가 자체적으로 예산과 인력,

시간을 들여 데이터 이관을 진행하는 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 즉 하드디스크나 LTO테이프라이브러리 등 타 매체 이관을 지원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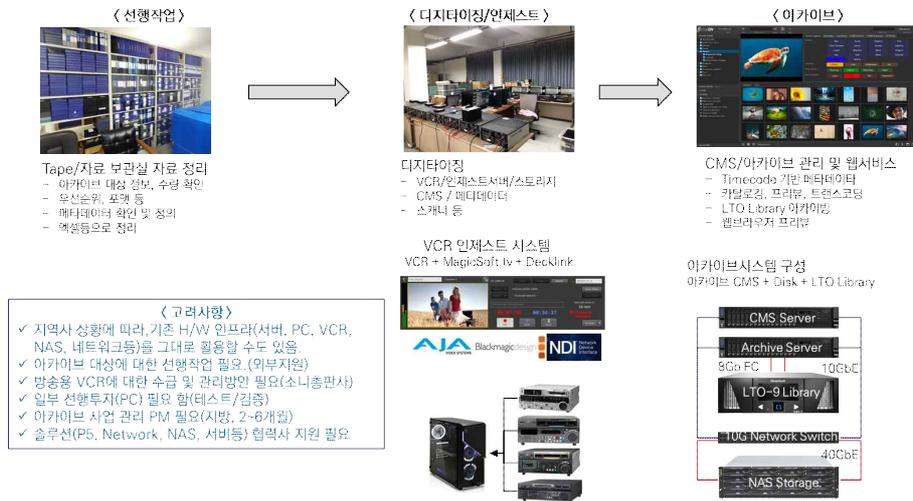
4. 이중화, 재난복구(Disaster Recovery, DR)시스템 구축

이번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 지역사가 이중화, 2개 사본(copy) 백업, DR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정부가 구축하는 ‘공영 방송콘텐츠 아카이브’는 지역사가 자사 아카이브 운영 과정에서 데이터 장기 보존 및 이중화를 지원하는 DR센터로 운영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관리는 서로 다른 매체에 3개 사본(Copies) 이상 복사하여 저장하는 것을 데이터 백업 원칙이지만, MBC 외 국내 방송사에서 이를 준수하는 방송사업자는 없다. 이른바, ‘데이터 백업 3-2-1’ 원칙에 따라 데이터를 관리해야 한다. 즉, 3개의 복사본, 2개의 백업 형식(클라우드, 타 저장장치), 1개의 원격백업 (다른 지역에 백업)이 필요하다. 이는 공공 부문 외에도 기업, 개인의 경우에도 권장되는 원칙이다. 공공기록물 중 중요기록물의 이중보존, 분산보존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⁵²⁾. 방송사업자의 방송콘텐츠가 법적인 의미의 ‘공공기록물’은 아니지만, 영구보존 대상으로 방송사업자의 콘텐츠 관리를 지원한다면 현행법의 관리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5. 아카이브 인프라 공유

지역사마다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상황이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카이브를 구성하는 인프라를 공공 차원에서 구축한 후 각 사가 필요한 인프라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토리지 용량이 비교적 작은 규모로 구축한 사업자는 스토리지 용량을 제공하고, CMS가 구축된 지 오래된 경우에는 CMS계정(데이터 접근권한 설정 전제)을 제공하여 CMS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52) 『공공기록물법』 제21조. 영구보존으로 분류된 기록물 중 중요한 기록물은 복제본을 제작하여 보존하거나 보존매체에 수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중보존하는 것이 원칙. 보존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은 국가기록원 등에 보존매체 사본 송부



[그림 3-18] 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절차

6. 아카이브 운영 정책 수립 및 활용 컨설팅

각 사가 편차를 두고 아카이브 구축을 하고 있지만 등록 대상 아이템(소재자료, 편집안본, 방영본) 선정, 메타데이터 정리 기술 방법, 중장기 보관 주기, 백업 주기, 아카이브 구축 이후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정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는 아카이브 관리를 전담하는 별도 조직이 부재해서이기도 하지만, 각사에서 경영진 차원에서 아카이브 활용에 대한 뚜렷한 방침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적인 차원의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사명(Mission)과 비전(Vision)이 부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방송사의 아카이브는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지원이 가장 큰 운영 목적이지만, 과거에 제작된 방송자료의 공적 활용을 위해서는 각 사 아카이브가 해당 지역에서 갖는 위상과 사회적 역할, 유관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방안 등을 고려하여 좀더 포괄적인 의미의 사명과 비전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각 사가 이러한 사명과 비전을 수립하고 중장기적인 아카이브 관리 및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공영 아카이브에서 컨설팅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7. 지역 공공영상 데이터 관리 거점 운영

일부 지역사에서는 자사에서 체계적인 아카이브 관리 환경을 구축하고 정책을 수립하면, 이를 자사 촬영원본 또는 방송본 관리에 활용하는 것은 물론,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공 영상데이터(지자체 시정 영상, 홍보영상, 지역민 소장 영상 자료 등)를 관리하는 지역 영상데이터 거점 센터의 역할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공공 부문 영상데이터 관리는 사실상 방치된 상태(광역 및 기초 지자체 기록관에서는 주로 행정 문서 관리에 집중. 국가기록원에서는 이와 관련한 대안이 현재는 없음)이므로 전국 각 지역의 공공 영상데이터 관리 정책을 마련하는 데 지역사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8. 공영 방송콘텐츠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의견

본 조사에 참여한 지역사들은 공영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효율적인 공공 플랫폼 사용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각 사가 보유한 콘텐츠 중 수익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를 판매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정보 제공, 미리보기, 과금, 주문 등의 기능요건을 갖춘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가. 기존의 플랫폼과 차별화된 공공 플랫폼 구축 가능성에 회의적

무엇보다 검색 플랫폼 기능으로서는 유튜브나 KTV <나누리>포털을 통해 다른 방송사의 방송프로그램이나 영상자료 검색을 비교적 쉽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3의 검색 플랫폼 구축이 필요성이 있을지 회의적인 의견이 많았다. 즉, 이미 많은 방송사들이 자사의 유튜브 채널에 모든 콘텐츠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공영 아카이브를 다시 구축하는 것이 어떤 활용도가 있을지 의문을 제시했다.

한편, 각 사의 경영 및 수익창출과 관련하여 해당 공공 플랫폼이 각 사의 IP관리를 지원하는 기능을 하는지 궁금해하기도 하였다. KBS, EBS, MBC 등 전국권 방송사와 달리 각 지역사는 해당 지역의 사건사고나 사회문화, 자연환경, 인물 등 지역성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독창적인 콘텐츠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에서는 해당 자료의 IP를 활용한 수익창출을 크게 기대하고 있으므로, 공공 차원에서 설립된 아카이브는 이러한 수요를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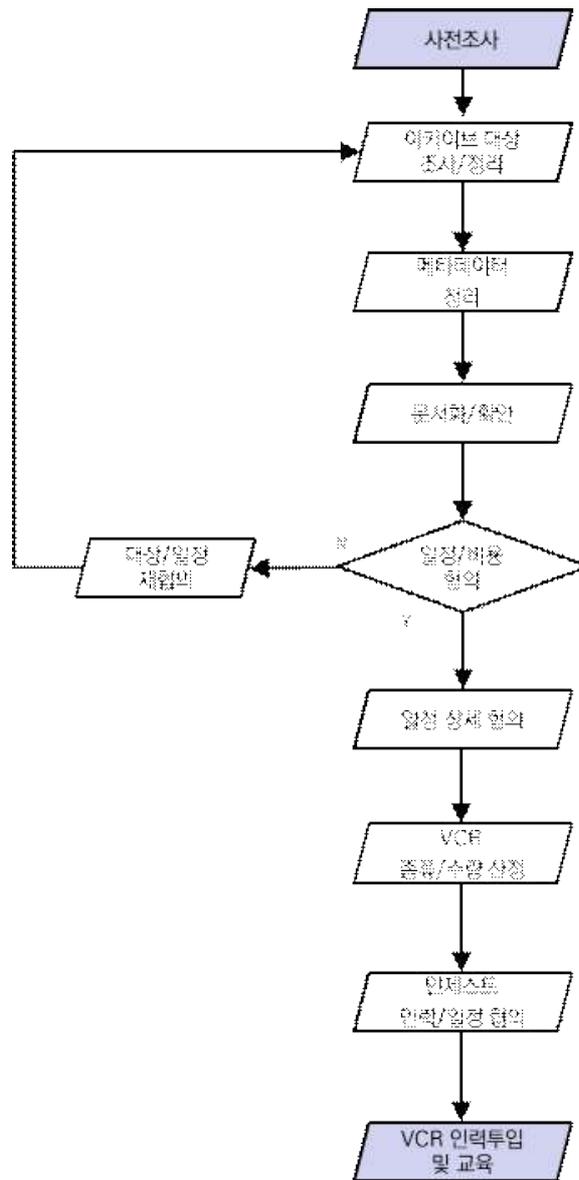
하여 설계해야 할 것이다. 이른바 ‘플랫폼(Platform)’의 어원을 살펴보면 ‘구획된 땅’이라는 의미를 가진 ‘플랫(Plat)’과 ‘형태’의 뜻을 가진 ‘폼(Form)’의 합성어로, ‘구획된 땅의 형태’를 의미한다. 즉, 경계가 없던 땅이 구획되면서 계획에 따라 집이 지어지고 건물이 생기고 도로가 생기듯이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단어이다(노규성, 2014, p.6). 공공 아카이브 플랫폼은 이처럼 플랫폼 주 이용자인 방송사가 해당 플랫폼을 찾는 ‘용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최근 10년 간 국내에 설립된 공공 부문의 아카이브는 이러한 수요가 반영되지 못한 채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구축되었다.

나. 이용자 수요를 충족하는 효율적인 플랫폼 구축 필요성에 공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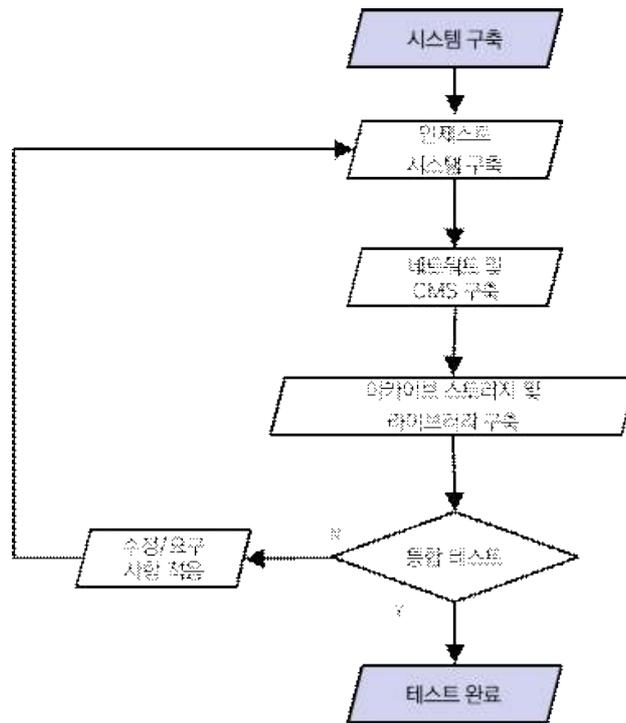
대부분의 지역사들은 공영 아카이브에서 각 사가 보유한 자료의 정보와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통합적으로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검색한 자료의 영상 미리보기를 할 수 있는 정도가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공공 차원의 아카이브가 없어서 타 사가 보유한 영상이 어떤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던 영상을 찾아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정도면 충분하다는 의미이다. 이용자로 하여금 어떤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해서 해당 자료의 관리자에 자료구매를 문의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사에 잠재되어 활용가치 없는 영상을 수면 위에 띄우는 데까지가 공영 아카이브의 역할이라고 보았다. 한편 춘천MBC와 같이 이미 자사 테이프자료 디지털화를 마친 지역사에서는 디지털 영상을 효율적으로 미리보기 공개를 하여 이용자가 편리하게 검색, 주문, 과금을 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비교 대상으로서 이용자 편의성을 크게 고려한 KTV의 <나누리>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공개된 영상자료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메타데이터 모델이 필요하고, 해당 영상을 뉴미디어 제작, 방송제작, UHD/4k급 영화제작 등 용도에 따라 이용자가 필요한 해상도로 다운로드하여 바로 편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편리함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아카이브 플랫폼은 다양한 영역의 행위자들이 만나서 교류하는 물리적 또는 가상의 공간으로서, 행위자들의 교류 양상이나 적극성에 따라서 플랫폼 자체가 ‘공론장’ 역할을 할 수 있다(최효진, 2021, p.345). 이러한 ‘공론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민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다시보기 해야 할 이른바 ‘공공영상’을 각 사가 선별하여 대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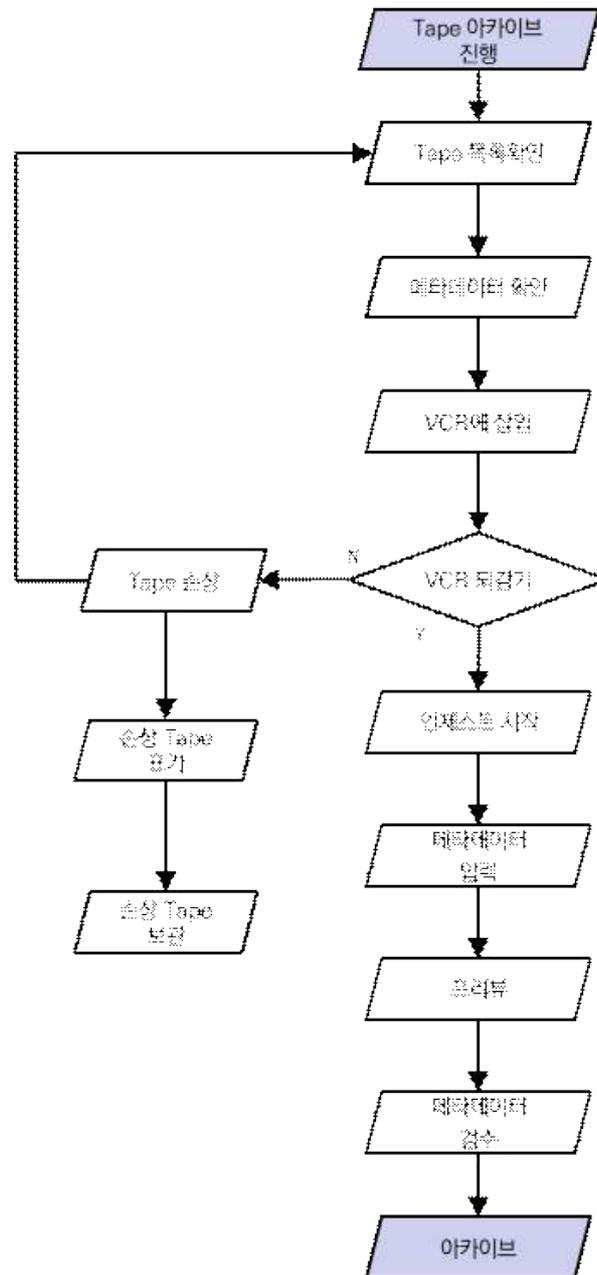
공개하도록 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영 방송콘텐츠 아카이브의 컬렉션 수집 과정에서 각 권리자(방송사)와 ‘공공영상’ 으로 공개할 영상의 제공방식도 고려해야 한다. 협의에 따라 아카이브 운영재원으로 각 사의 ‘공공영상’ 대상 자료를 유상 구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한편, 지역사에서는 공영 아카이브에 이관할 ‘공공 방송콘텐츠’ 선별과 표준 메타데이터에 맞게 정리. 기술을 지원할 인력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림 3-19] 디지털아카이브 전환 프로세스 1 - 사전조사



[그림 3-20] 디지털아카이브 전환 프로세스 2 - 시스템 구축



[그림 3-21] 디지털아카이브 전환 프로세스 3
- 테이프 자료 아카이브 구축

제4장 아카이브의 단계적 구축방안 및 운영 가이드라인

제1절 구축 및 운영방향

1. 목표와 전제사항

방송콘텐츠 아카이브 구축의 목표는 방송사·저작권자-창작자-이용자 간 가교역할을 통해 방송사 보유콘텐츠의 공익적 가치와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이다.

구축방향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방송콘텐츠 아카이브는 복합문화공간인 라키비움(Larchiveum)이나 글램(GLAM) 형태로 구축한다. 라키비움은 도서관(Library)+아카이브(Archive)+박물관(Museum), 글램은 갤러리(Gallery)+도서관(Library)+아카이브(Archive)+박물관(Museum)의 합성어로, 아카이브가 단순 아카이브 기능 이상을 수행함을 뜻한다. 그 공간이 결국 광범위한 이용자를 위한 것임을 나타내기도 한다. 둘째, 수집·보존이 우선이고, 분류·활용은 원하는 사업자에 한해 나중에 행한다. 셋째, 콘텐츠 제공주체, 관련 산업종사자, 대중 모두에게 도움이 가는 방식으로 구축한다. 첫째 방향이 아카이브의 최종 지향점과 관련된다면, 둘째와 셋째 방향은 보다 많은 사업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참여를 꾀하는 것과 연결된다.

구축을 위해 전제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 사업자들에게 되도록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수집한다. 수집 제반 비용을 최대한 정부가 지원하고, 추후 법·제도 마련을 통해 수집방식 등을 확정한다. 둘째, 사업자 동의 콘텐츠들에 한해서만 활용한다. 저작권 자체보유, 타 기관들에 기 제공한 콘텐츠 등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사업자 니즈에 맞춘 접근방식을 견지한다. 보존·보관, 복원, 활용 등 사업자별 니즈를 충족시키는 복합형 아카이브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넷째, 앞서 라키비움과 글램 논의를 했지만, 디지털과 아날로그 인프라가 함께하는 아카이브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는 일단 보존·보관, 복원, 시스템 관리, 메타데이터 입력을 위한 공간을 우선 마련하고, 갤러리, 박물관, 기타 문화시설 등을 차츰 갖춰나간다.

2. 아카이빙 방식

국내외 기존 아카이브 사례를 분석해보면, 아카이빙 방식은 크게 납본형, 선별 구입형, 온-에어(On-Air) 녹화형, 포털형으로 나뉜다. 납본형은 프랑스, 스웨덴 등에서 발견되는 형태로, 국가관리, 의무납본, 자료납본의 법제도가 특징이다. 선별 구입형은 말 그대로 선별기준에 따라 방송콘텐츠를 구입하는 아카이브를 가리키며, 방송사 외부에 별도의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본, 영국 아카이브가 대표적인 선별 구입형이다. 온-에어 녹화형은 대상 방송물을 24시간 녹화하는 방식으로 호주에서 이 방식을 사용한다. 자료 수집·녹화를 법제도화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포털형은 방송사 외부에 별도의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포털형 아카이브 센터와 방송사 아카이브를 연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선별기준에 따라 방송콘텐츠를 구입하기도 한다.

네 가지로 구분을 하기는 했지만 이 기준은 배타적이지도 망라적이지도 않다. 한국형 아카이빙 방식은 기본적으로 포털형이나, 라키비움이나 글램 모델을 취한다고 했을 때 나머지 방식도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이상적일 듯하다.

<표 4-1> 방송콘텐츠 아카이브의 아카이빙 방식

구분	사례	특징
납본형	프랑스, 스웨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관리, 의무납본, 자료납본의 법제도화 ·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납본
선별 구입형	일본,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별기준에 따라 방송콘텐츠를 구입 · 방송사 외부에 별도의 아카이브 구축
On-Air 녹화형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방송물을 24시간 녹화 · 자료 수집/녹화의 법제도화
포털형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사 외부에 별도의 아카이브 구축 · 포털형 아카이브 센터와 방송사 아카이브 연계 · 선별기준에 따라 방송콘텐츠를 구입

지금부터는 본 아카이브의 흐름에 대해 정리하도록 한다.

아카이빙의 목적은 크게 복원, 보존·보관, 분류·활용으로 구분된다. 모든 참여사에게

보존·보관은 의무고, 복원과 분류·활용은 필요 시 선택하는 것으로 한다. 복원 콘텐츠의 경우는 ‘디지털’ 보존·보관만 의무로 하고, 물리적 보존·보관은 선택으로 한다.

물리적 인프라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디지털아카이브는 폐쇄형+포털형의 방식으로 시작한다. 여기서 폐쇄형이란, 참여사만, 그리고 협의한 참여사끼리만 아카이브 이용이 가능함을 나타낸다. 이는 저작권 문제 등으로 방송콘텐츠의 활용이 수월하지 않은 상황에서 구축 초기 참여 사업자들을 우선시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그리고 자료를 보관만 한다 해도 보안성에 대해 사업자들의 우려가 큰 바, 블록체인 기반 보안체계 마련을 통해 아카이브 센터뿐 아니라 방송사/저작권자도 콘텐츠 입출을 확인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또, 여기서 포털형은, 아카이브가 없는 참여사의 경우 신규구축하고, 기구축 참여사의 경우 아카이브 센터 시스템과 연동해, (폐쇄적) 검색과 활용이 가능케 함을 나타낸다.

활용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대상을 구분한다. 분류·활용 시 참여사의 니즈와 의지에 따라 일부 개방형(협의한 참여사 간, 연구 등 공익적 이용에 한함), 완전 개방형(대중)으로 구분한다. 이용자는 크게 ① 참여사 내부구성원, ② 참여사 업무관련 외부인원(외주제작사 등), ③ 연구자 등 관내열람자, ④ 일반 대중으로 구성된다. 참여사에 따라, 콘텐츠에 따라 각 이용자에 맞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 도서관, 박물관+갤러리 역할을 더함으로써 ③, ④ 이용자를 늘려갈 수 있을 것이며, 디지털만이 아닌 아날로그 아카이브를 어떻게 전시·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도 연결지을 필요가 있다.

제2절 운영 가이드라인

1. 복합문화공간(라키비움) 조성

최근 아카이브 패러다임이 자료의 단순 수집·보관공간에서 복합문화공간으로 이동해 감에 따라, 라키비움이나 글랩에 대한 관련주체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김영주·장은미, 2019; 곽승진·이정미, 2018). 그런 점에서 본 연구가 주목하는 방송콘텐츠 아카이브가 복합문화공간을 지향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라키비움은 전술한 바와 같이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기능을 통합하는 수집기관 유형으로, 그 세부 기능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4-2> 복합문화공간(라키비움)의 세부 기능

구분	내용	핵심 요소
기록관	· 기록 관리 업무 프로세스 · 아키비스트의 기록물 관리	· 기록 관리 프로세스
도서관	· 자료의 수집/조직/보존/열람/검색/제공 · 교육 및 연구	· 서고, 사서/열람/대출/정보서비스 등
박물관	· 박물관 보존과 전시 · 전문 학예사 연구/사무	· 자원별 박물관 보존 및 전시 공간

* 출처: 김영주·장은미 (2019); 최영실(2012)에서 재구성

라키비움은 다양한 자료 및 정보를 집약적으로 수집, 보존, 이용 및 활용할 수 있게 해 줄 가능성을 갖는다(오정훈·이용봉, 2014). 특히 디지털 매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방송 영역의 경우, 기존에 전통적인 차원에서 서로 분리되어 온 이 세 영역을 통했을 때, 대량의 정보·콘텐츠를 수집 및 관리하고 이용 및 활용하는 데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Michalko, 2007).

라키비움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여러 주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다(오정훈·이용봉, 2014; Michalko, 2007). 현 시점에도 생산 중인 오늘날 방대한 방송자료들을 단일한 기관이 확보하고 관리하고 제공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 및 방송 사업자, 그 외 여러 참여 주체들이 모여 긴밀한 협력을 이뤘을 때 실효성 있는 방송 아카이브를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당 복합문화공간 구성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용자이다. 방송콘텐츠 관련 아카이브, 도서관, 박물관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포괄함과 동시에 이용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대중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곽승진 · 이정미, 2018).

즉, 본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방송콘텐츠 아카이브가 단순히 방송콘텐츠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기억기관으로 기능하는 것을 넘어서서 복합문화공간으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활발한 참여, 또는 이용이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겠다.

2. 인프라 구축 · 운영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 기능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을 지향하는 아카이브 센터의 인프라는 물리적 인프라(시설 · 공간 · 장비 등)와 디지털 인프라(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모두를 갖춰야 한다. 물론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도 하드웨어를 보관하기 위한 공간이 당연히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예산 확보수준에 따라서는 새로운 운영주체를 만들고 물리적 인프라를 갖추는 것보다, 물리적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는 기관을 운영주체로 지정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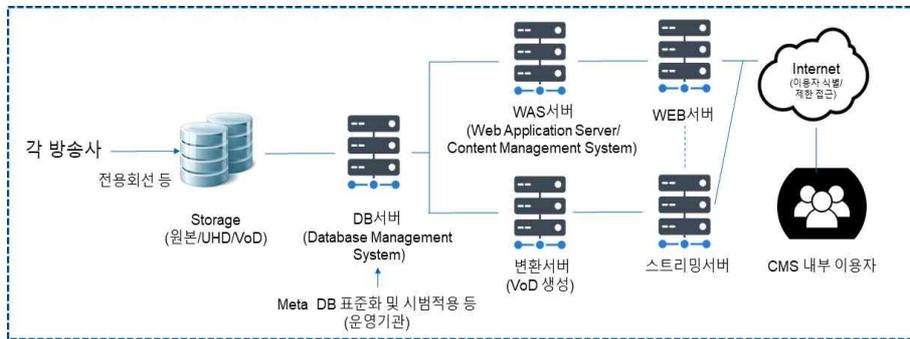
물리적 인프라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복원 · 저장 · 관리 · 데이터 입력시설이다. 특히 초기에 복원장비를 우선적으로 갖춰야 한다. 필름용 복원장비로는 필름 검수테이블(리와인더), 필름스캐너, 편집장비, 색보정 · 마스터링 장비가 있고, 테이프 디지털 변환장비가 따로 요구된다. 이 인프라는 향후 참여 사업자와 저장자료가 늘수록 확대 · 확장되어야 하며, 수요에 따라 적절한 소요파악과 조절이 뒤따라야겠다.

저장 · 관리시설의 점진적 확대와 함께,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 기타 문화시설을 갖추는 것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저장된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사업자들이나 소수의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것이지만, 복합문화공간을 이용하는 일차적 주체는 대중들이므로 아카이브 센터의 위치 또한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는 곳이어선 안 될 것이다. 복합문화공간 내 세부 공간도 최대한 이용자 편의를 보장하며, 누구나 쉽게 와서 즐길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디지털아카이브를 위해서는 수집자료 검색 · 열람 정보체계를 구축한다. 수집자료 검

색·열람 정보체계는 다양한 포맷의 디지털 방송콘텐츠를 보존하고, 보존 콘텐츠를 특정 기준에 맞춰 분류하며, 목적에 따라 검색·열람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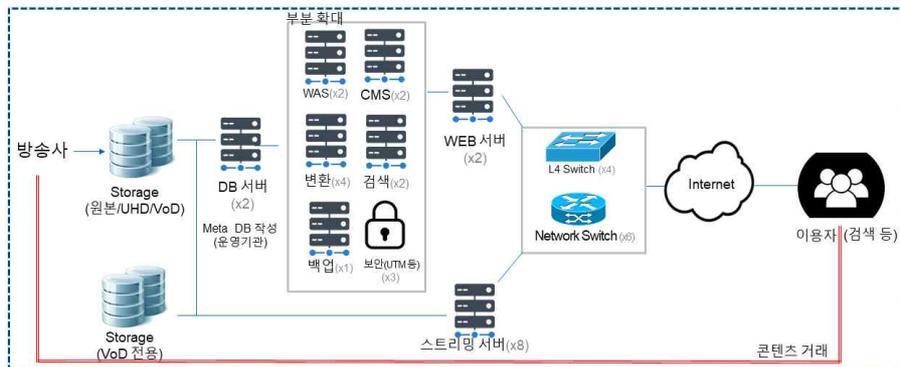
1단계로는 방송사 제공 콘텐츠를 저장하고 메타데이터를 시범 적용한다. 이 단계에서 아카이브 운영기관은 스토리지와 DB서버에 메타데이터 표준을 적용하는 등 관계자 내부 시스템을 시범 구축한다. 메타데이터는 일단 기본적인 내용(제작일시, 회차정보, 장르, 제작/출연진 등의 정보)만을 저장하면서, 별도의 연구를 통해 표준화를 꾀한다.



[그림 4-2] 디지털 방송콘텐츠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흐름: 1단계

* 자료: 남승용 등(2020), p.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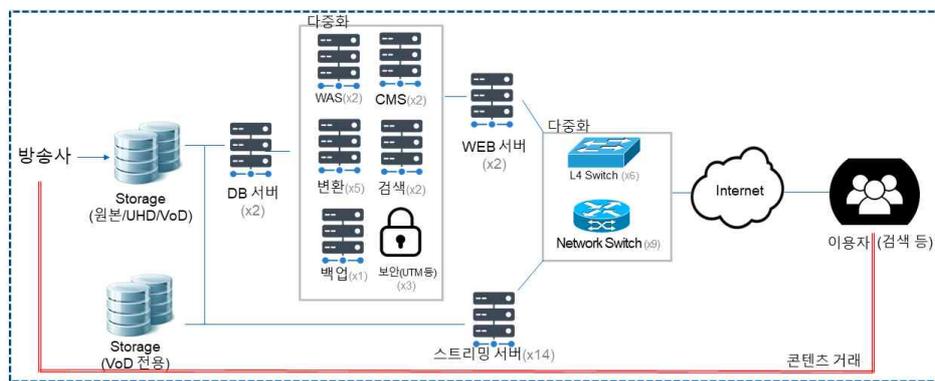
2단계로는 원스톱 검색 및 소재 파악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현한다. 대상 사업자 및 보존 콘텐츠를 확대하면서, 포털형+선별구매+중개거래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메타데이터 시스템을 확대한다.



[그림 4-3] 디지털 방송콘텐츠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흐름: 2단계

* 자료: 남승용 등(2020), p.85.

3단계에서는 이용자 규모를 고려해가며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이용자 및 콘텐츠 확대에 따라 서버의 이중화 및 스토리지 용량 확대가 이뤄져야 하며, 수집된 방송콘텐츠의 메타 데이터를 작성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림 4-4] 디지털 방송콘텐츠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흐름: 3단계

* 자료: 남승용 등(2020), p.86.

물론 여기서 각 단계별 시스템 구축 흐름도에 있는 복수의 서버들(WEB서버, CMS서버, 스트리밍서버, DB서버 등)을 소프트웨어 형태의 단일 가상화 서버(VM웨어)로도 구현 가능하다. 이는 저사양 물리적 서버 1대 외에, 클라우드에 고성능 서버를 구축하는 형태라고도 할 수 있다. 단, 이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엔 구축 흐름 일부에 변경이 필요하다.

1990년대부터 특정 물리적 매체에 특정 방식으로 콘텐츠를 저장하는 이른바 ‘수록매체 기반 포맷’에서, 컴퓨터 환경에서도 이용 가능한 ‘데이터 파일 포맷’으로의 전환이 이뤄졌다. 하지만 수록매체 기반이든 파일 기반이든 영구히 재생 가능한 포맷은 존재하지 않는다. 계속 유지보수해야 함은 물론이고, 특정 시점이 지나면 기존 포맷의 유지보수조차 불가능해질 수 있다. 물론 재생 장비의 예비 부품, 서비스 매뉴얼, 단종이 예상되는 부속품 등을 잘 비축하거나 장비 유지 및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면 실질적인 저장기한이 연장될 수도 있다.

2016년 기준 전세계 시청각 아카이브 관련 기관들은 마그네틱 매체에 담겨져 있는 시청각 콘텐츠를 디지털로 보존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에서 15년정도 남았다고 보았다. 실제로 MII 비디오와 같은 일부 마그네틱 기반 포맷의 경우 콘텐츠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2030년경에는 대부분의 아카이브에게 있어 일반적인 마그네틱 매체의 디지털화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질적인 아카이브 운영에 있어 중장기적으로 저장 방식과 저장 포맷의 유지·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아카이브는 특정 콘텐츠에 대한 여러 개의 사본을 보유할 수 있다. 만약 2개 이상의 복사본을 보유한 경우, 자료를 포맷하기 전에 당연히 더 좋은 상태의 것을 선택해야 한다. 마그네틱 또는 파일 기반 녹화본의 경우, 아카이브가 각기 다른 목적에 따라 여러 형태의 자료(예를 들어 마스터 버전이나 배포를 위한 복사본 등)를 갖고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재포맷 전에 적절한 사본을 선택해야 한다. 또, 신호 검색이나 재생성을 최적화하기 위해 적절한 복원 절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원본 매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장 및 재생 장비는 전문적인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관리 및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지원하고 새로운 문제를 진단하려면 가능한 경우 특히 재생 장비에 적합한 보정 매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직하다. 디지털 전송매체 기반의 포맷들은 서로 다른 플레이어 또는 판독기로도 동일한 매체에서 데이터를 검색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매번 성공적으로 전송을 위한 비트스트림을 생성하지는 못한다. 해당 문제를 감지하고 분석하려면, 실시간 재생 중에 오류를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복사본에 복구 불가능한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문서화해야 한다.

기존 아카이브 형식에서 새로운 아카이브 형식으로의 전송은 가능한 가장 유사하고 근접한 대응물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필름의 노이즈나 그레인을 제거하는 등 주관적으로 자료를 변경하거나 개선해서는 안 된다. 주관적 변경은 이를 수행하는 운영자의 관점에 따라 역사적 자료를 수정하는 것으로 자료 보존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서 벗어난다.

소음이나 왜곡 등 의도하지 않은 사용 흔적 또한 시청각 자료의 일부다. 그것이 기록 기술의 한계로 인해 발생했는지, 취급주의나 스토리지 불량으로 인해 발생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어떤 경우에는 자료를 디지털화할 때 재생 매개변수를 조정해 최적화된 신호를 검색함으로써 불완전하게 기록된 자료가 수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신호와 사용 흔적 모두 최고의 정확도로 보존되어야 한다. 원본 자료의 동적 범위, 주파수 응답 혹은 이미지 해상도를 전송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다. 또한 전송 과정에서 채택된 모

든 매개변수와 절차들을 세세하게 문서화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장기 보존을 위해 원본 아날로그 혹은 선형 디지털 녹화물에서 인코딩할 때 데이터 축소 방법을 채택한 포맷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소위 ‘손실코덱’은 용량을 줄여 저장 혹은 전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나, 원래의 정보를 복구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데이터를 축소한 결과물이 이전의 것과 유사하게 들리거나 보일 수 있지만, 데이터를 축소한 신호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료의 주요 내용이 손실될 우려가 상존한다 (남승용·이순환·최민정, 2021).

3. 방송콘텐츠 수집

‘방송자료수집위원회(가칭)’가 독립적으로 각 시대 및 주제에 걸맞는 대표적 콘텐츠를 다양하게 수집한다. 여기서 독립성은 외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방송콘텐츠를 선정하고, 전담기관에서 수집·보존함을 말한다. 다양성은 방송평가 결과(『방송법』 제31조 관련), 방송사·협회 및 단체·전담기관 추천 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수집대상 풀을 구축하고, 방송자료수집위원회에서 수집하는 일과 관련된다. 대표성은 국내 제작·방송된 사회적·역사적 가치 등 시대적 대표성을 갖는 방송콘텐츠를 수집하는 것을 가리킨다.

수집시기는 일정시기(예: 매년 9~10월)에 수집위원회에서 수집·보존 대상을 정하도록 한다(연 1회, 구체적인 시기는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에서 정함). 절차는 방송사업자의 추천 및 자체평가 등을 통해 전담기관에서 대상 풀을 정하고, 수집위원회에서 의결절차를 통해 수집·보존대상을 확정한다.

수집기준은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사건·사고·인물 등과 관련되거나, 역사적 보존 필요성이 큰 방송콘텐츠를 최우선으로 한다. 초기와 이후의 수집대상을 다르게 가져가는데, 초기에 수집할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제작·방송기간이 상당히 지난 콘텐츠: 구체적인 기간·주제·장르 등 수집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대상 콘텐츠를 시행령으로 규정한다. 텔레비전 방송이 시작된 1961년부터 현재까지의 방송콘텐츠 중 수집·보존대상을 정하되, 수집위원회가 10년 단위로 시기를 정해 대상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방송사업자 등이 기증한 방송콘텐츠: 보도 > 교양 > 오락장르 순으로 한다. 수집·보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저작권을 크게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중·장기 수집·활용대상 방송콘텐츠는 크게 세 종류다. ①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 받은 방송콘텐츠: 지원 시 서류에 단서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아카이빙이 가능하다. ② 합의에 의해 콘텐츠를 제공하기로 한 방송사업자의 방송콘텐츠. ③ 기타 방송통신위원장이 수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방송콘텐츠.

방송콘텐츠 수집·제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아카이브 주체가 지원한다. 참여사에서 해당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 경비 등을 지원 범위로 산정(사업자와의 협의 전제)하고, 방송콘텐츠 등 자료제출 이후 90일 이내에 참여사로 하여금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4. 방송콘텐츠 복원·보존

기존 방송콘텐츠의 복원 및 화질개선은 아주 큰 과제다. 아날로그 방송콘텐츠의 디지털 전환 및 업스케일링 후 아카이브 시스템에 보존·축적하는 것이 세부내용이다.

이를 위해 먼저 복원장비와 소모품을 구입해야 한다. 복원장비에 필름 검수테이블, 필름 스캐너, 편집장비, 색보정/마스터링 장비, 테이프 디지털 변환장비 등이 필요하다면, 소모품에는 필름 접합기, 보수 테이프 등이 요구된다.

보존·관리와 활용방식을 분리한다. 재원절약을 위해서다. ‘보존·관리’에는 저장에 큰 비용이 들지 않지만 활용에 큰 비용이 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채택한다. 이때 다음 네 가지를 고려한다: ① 클라우드 서버(16vCPU, 64GB, 50GB Disc), ② NAS(500TB): 데이터 양이 늘면서 SnapShot 용량도 증가, ③ 네트워크 사용: 매월 실 사용량이 다를 수 있음, ④ Management: 구조변경, 보안설정, 실시간 서버 관리 등.

‘활용’은 저장에 큰 비용이 들지만 일단 구축하면 활용 자체에는 비용이 들지 않는 물리적 스토리지를 기반으로 삼는다. 다시 말해 물리적 스토리지를 통해 활용하는 것은 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함이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우, 나중에 디지털 아카이브 이용량이 증가할 경우 네트워크 사용료가 천정부지로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

복원·보존 시 콘텐츠 수록매체의 수명을 연장하지 못한다 해도 가능한 한 사용가능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 매체기반 콘텐츠의 경우 수록매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목적에 적합한 환경 내의 저장소가 필요하며, 1차 정보와 2차 정보 소스를 분리하

고 필요에 따라 관리 및 유지 보수를 수행해야 한다. 유지 보수 시 아날로그 매체가 이용 가능하다면 기준 신호 및 프레임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디지털 매체의 데이터 완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또한 관리 및 재생에 사용되는 장비는 수록매체의 물리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보존에는 이용(접근) 가능한 복사본을 만드는데 원본을 사용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도 포함된다.

수록매체의 기대 수명과 하드웨어의 가용성이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자료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매체나 시스템에 콘텐츠를 복사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아날로그 영역의 경우 1차 정보를 복사할 때마다 품질 저하가 일어나지만 디지털 정보는 수정하거나 옮길 때 손상 없이 복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아날로그 매체에 담긴 자료는 장기 보존을 위해 디지털 매체로 옮기는 것이 필수적이다.

1차 정보를 본래 수록되어 있던 매체에서 분리시키면 차후에 음향이나 이미지 인종 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향후 사용자는 파일 기반의 사본 형태의 시청각 자료만 이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2차 혹은 상황맥락적 정보가 더 중요해진다. 영상자료의 테이프 박스, 디스크 슬리브 혹은 라벨에 나타나 있는 자료들을 시각적으로 잘 보존해야 하며 이들 정보는 아카이브 자료 보관 기준에 따라 문서화해야 한다. 원본 형식에 대한 설명과 같은 정보들은 메타데이터 형태로 되어있을 수 있다. 따라서 체계적으로 기록되어야 하며 1차 정보와 함께 접근 가능하도록 해야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남승용·이순환·최민정, 2021).

5. 실시간 방송콘텐츠 수집

기 저장된 방송콘텐츠 외에 아카이빙 협약 후 생산되는 콘텐츠의 실시간 자료수집 방식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실제 방송사 투입비용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방송콘텐츠를 수집할 수 있다. 다만 수집 방식에 따라 관련 비용과 효과가 상이하게 발생된다. 물론 수집 범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가령 지상파, 종합유선방송, IPTV 등에서 방송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방송사에서 아카이브 운영기관까지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비용과 그것들을 보존하는 스토리지, CMS(Content Management System)를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비용 등이 매년 큰 폭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수

집된 프로그램과 관련 추가 정보 생성 비용 역시 수집자료의 양에 비례해 증가한다.

국내에서 전체 방송되는 프로그램을 수집하는 방법으로는 아카이브 운영기관에서 실시간으로 녹화하거나 방송사로부터 직접 납본받는 식을 떠올려볼 수 있다. 실시간 방송콘텐츠 수집방식은 크게 ① 전용회선을 통한 연계, ② 에어 캐치(Air catch), ③ 재송신 방송분 녹화로 구분된다. 전용회선을 통한 연계는 방송사 구조실을 통해 방송콘텐츠를 송출받는 방식이다. 에어 캐치는 아카이브센터에서 방송콘텐츠를 직접 수신해 보존하는 방식이다. 방송사 측에서는 별도의 수고가 들지 않고 수신장비에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 않으나, 대용량 스토리지 확보, 재방송 및 구조자막 녹화, 방송사고에 따른 아카이빙 실패 등의 문제가 있다. 재송신 방송분 녹화는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 통해 재송신 방영분을 녹화하는 방식이다. 특히 IPTV 셋톱박스(STB)의 경우 지역방송 프로그램 녹화가 용이(지역방송마다 별도 채널을 부여하기 때문)하나, 대용량 스토리지 확보, 재방송 및 구조자막 녹화 등의 문제가 상존한다.

<표 43> 실시간 방송콘텐츠 수집방식

구분	특징
전용회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사 구조실을 통해 방송콘텐츠를 송출받는 방식 · 위성방송, IPTV 송출방식 · (지상파)방송사 구조실 내 인코더 장비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파 표준을 위성방송·IPTV 표준으로 전환 · 장점: 가장 안정적으로 수집 가능, 방송분에 대한 별도 (자막)편집 가능 · 단점: 방송사 내 공간임대 필요, 전용선 사용료 발생 (월 30MB bps당 200만원)
에어캐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카이브센터에서 방송콘텐츠를 직접 수신해 보존하는 방식 · 케이블TV 송출방식 · 온에어 신호를 직접 수신 및 재송출 · 장점: 방송사 내 별도의 장비 구축 불요 · 단점: 방송분에 대한 별도 (자막)편집 불가, 이 방식만으로 저장 불가
재송신 방송분 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IPTV를 통해 재송신 방영분을 녹화하는 방식 · HD방송의 경우, TV 수신카드로 쉽게 녹화 가능 · 그러나 UHD 방송의 경우, 암호화되어 있어 콘텐츠 보호 인증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UHD 전용 삼성전자·LG전자 TV만 가능 - 인증을 위해 모델당 대략 5천만원 소요 · 장점: 특히 IPTV STB의 경우 지역방송 프로그램 녹화가 용이 (지역방송마다 별도채널을 부여하기 때문) · 단점: 대용량 스토리지 확보, 재방송 및 구조자막 녹화 등의 문제 상존

각각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전용회선 통한 연계 > 에어 캐치 > 재송신 방송분 녹화 순으로 한다. 다만 전용회선 통한 연계를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면서, 보도프로그램 등에 한해 에어 캐치나 재송신 방송분 녹화를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서의 논의는 지상파방송을 중심으로 한 것이며, PP(Program Provider)의 경우 재송신 방송분 녹화만 가능하다. 향후 콘텐츠 제공주체를 넓혀간다 했을 때엔 보다 다양하면서도 효율적인 방식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작사와 같은 저작권자에 한해서는 실시간 방송콘텐츠 수집방식이 염두에 둘 사항이 아니다.

6. 데이터 관리

데이터는 방송콘텐츠 아카이브 서비스 구축·운영 전반에 활용된다. 수많은 방송콘텐츠에 의해 발생하는 데이터는 방송콘텐츠 보존, 재형식화, 분석, 활용 등에 폭넓게 쓰인다. 하지만 축적된 데이터는 그 자체로는 쓸모가 없으며, 그 안에서 의미를 캐낼 때 쓸모가 발생한다.

데이터를 분석해 사용하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공익을 위해서다. 말그대로 많은 사람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서다. 상품이나 서비스 데이터 분석을 통해 더 나은 상품·서비스 제공의 발판을 마련한다. 이용자들의 욕구나 경향의 변화를 포착하고, 그에 기반해 적절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해 이용자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많은 기업이 이용자들의 다양한 개인정보와 활동정보를 보유하고자 노력하는데, 이들 정보를 원료로 상품·서비스 개발을 구상하거나 사업전략을 결정하려는 것이다. 셋째, 국가·기관이나 권력에 의한 추적을 위해서다. 특히 보안이나 안전을 위해 국가·기관은 시민들의 개인정보와 활동내역을 추적하기도 한다(김상민, 2016). 방송콘텐츠 아카이브에서의 데이터 분석·사용은 첫 번째 목적과 두 번째 목적 사이에서 조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 가능하다.

데이터를 구분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합의되지 않은 여러 유형으로 나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데이터 구조와 출처에 따른 유형이다. 먼저, 데이터는 그 구조에 따라 구조화된(정형) 데이터와 비구조화된(비정형) 데이터로 이뤄진다. 구조화된 데이터는 대체로 정량 데이터로 분류되며 변하지 않는 것들,

명확하게 정의되고 검색되고 분석돼오던 것들을 말한다. 비구조화된 데이터는 대체로 정형 데이터로 분류되는데, 상황과 맥락에 따라 변하는 것들, 기존의 도구와 방법을 통해 처리·분석되기 어려운 것들을 말한다. 다음으로, 데이터는 출처에 따라서도 유형화가 가능한데, 이는 콘텐츠 차원과 이용자 차원으로 이뤄진다. 두 기준을 교차해서 그 안에 포함되는 것들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4-4> 데이터의 유형

구분		데이터 출처에 따른 유형	
		콘텐츠 데이터	이용자 데이터
데이터 구조에 따른 유형	구조화된 데이터	· 제목, 장르, 시놉시스, 등장인물 등 · 분위기, 유머코드 등	· 성별, 연령, 지역 등 · 신용, 건강, 교육수준 등
	비구조화된 데이터	· 회차별·시퀀스별·신별 줄거리, 배경, 등장인물 행동·발언 등	· 성격, 감정, 느낌, 생체리듬 등 · 이용시간·양·횟수, 이용습관 등

* 자료: 이광석(2020); Big Data Framework(2019.1.9.); Weglarz(2004) 등을 참고해 구성.

덧붙여, 메타데이터도 있다. 메타데이터는 말 그대로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로, 특정 데이터 세트에 대한 추가정보를 제공한다. 가령, 특정 콘텐츠에서 메타데이터는 제작시나 장소 같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 별도의 데이터 구조는 아니나, 데이터 분석과 활용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방송콘텐츠의 메타데이터 관련해서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표준(방송콘텐츠 유통 메타데이터 구성요소 및 형식, 표준번호: TTAK.KO-10.0730)이 존재한다. 해당 표준은 방송콘텐츠 유통 워크플로에서 각 시스템과 플랫폼이 공유해야 하는 메타데이터와 그것을 정의하는 방법을 규정한다. 메타데이터 정의를 위해서는 한글·영문 메타데이터 표기법, 메타데이터 그룹 표기법, 데이터 타입, 공유되어야 하는 메타데이터 공통 요소 등을 규정한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 방송사의 메타데이터는 TTA 표준을 따르고 있지 않으며, 많은 인력이 관련정보를 직접 입력한다. 사실상 합의되지 않은 기준에 의거, 방송사에 따라, 입력자에 따라, 기타 여러 상황과 맥락에 따라 메타데이터들이 생성되는 셈이다. 그래서 일부 방

송사는 자사가 작성·운용하는 메타데이터 또한 인접저작권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는 향후 방송사별로 보유하고 있는 메타데이터 공유가 여의치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TTA 표준이 2014년에 만들어졌음을 감안하면, 최근 방송환경과 각 방송사 상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방송콘텐츠 아카이브가 고유의 메타데이터 마련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앞서 살펴본 미국 의회도서관 공공 방송 아카이브 프로젝트(AAPB)의 2022년 기준 콘텐츠 카테고리도 참고할 만하다.

다만, 방송사 프로그램을 아카이브 운영기관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방송사별 메타데이터를 일부(공통 부문) 공유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아카이브 운영에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운영기관은 방송사와 아카이브의 메타데이터를 통합 혹은 매핑(mapping)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 인력을 투입할 수도 있고 인력을 대체, 이를테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처리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는 아카이브 운영기관에서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업자에게 표준을 강제한다 해도, 기 구축된 메타데이터를 표준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메타데이터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도 역시 AAPB 사례를 참고할 수 있겠다. AAPB는 메타데이터 및 색인 기능을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이용자들에게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계학습 및 인공지능 기반 오픈 소스와 워크 플로우를 개발하고, 프로그램별 세부 메타데이터를 캡처하는 툴도 활용 중이다. 그에 기반해 250만여 건(2017년 기준)에 달하는 소장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자료에 대한 열람 및 시청, 그리고 저작권 문제가 없는 콘텐츠들의 경우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까지 하고 있다.

제3절 단계적 구축방안

이 절에서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눠 방송콘텐츠 구축방안을 논의한다. 각 단계별로 기본 구축방식, 필요 인프라, 주 대상사업자를 살피고, 아카이빙의 목적(수집, 복원·보존, 분류·활용)에 따른 내용을 제시한다.

1. 1단계: 기본 인프라 구축(1년 소요)

1) 방식, 인프라, 주 대상사업자

포털형+폐쇄형으로 시작하고, 기본 인프라 구축과 복원에 초점을 맞춘다.

필요한 인프라는 ① 복원·저장·관리·데이터 입력시설, ② 복원장비: 필름(필름 검수 테이블, 필름스캐너, 편집장비, 색보정/마스터링 장비), 테이프(디지털 변환장비), ③ 보존 자료 저장·관리 솔루션 등이다.

주 대상사업자는 아카이브 구축이 절실한 지역방송사와 기타 희망사업자다.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KBS나 EBS의 경우는 기공개자료 일부만 아카이빙한다.

2) 수집

자료수집의 대상은, ① 참여사 제공 방송콘텐츠 일부(기공개자료 등), ② 복원 지원 콘텐츠, ③ 기금 제작지원 콘텐츠다.

원활한 아카이브 구축·운영 및 향후 참여 사업자 확대를 위해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협의체를 운영한다. 지상파, 중편, 보도채널, 지역방송 담당자 등이 대상이다. 위원은 20명 내외로 하고, 분기 1회 위원들을 소집한다.

참여 방송사의 모든 콘텐츠를 아카이빙하긴 어렵다. 이에 수집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은 10~15명으로 하고, 마찬가지로 분기 1회 위원들을 소집한다.

관련연구도 수행한다. 크게 법·제도 정비방안(수집·보존·활용안, 저작권 등), 수집자료 열람·검색서비스 구축방안이 이에 포함된다.

3) 복원·보존

복원콘텐츠에 대해서는 수집위원회가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참여자 제공 콘텐츠를 저장하고, 보안 및 이원화(혹은 삼원화) 대책을 강구한다.

4) 분류·활용

메타데이터 시스템을 구축·입력한다.

CMS 외 중개거래 시스템을 폐쇄형으로 구현해 참여사들 위주로 시범 운영한다.

이 때 메타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연구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기존에 아카이브를 구축한 방송사들의 일치되지 않는 메타데이터를 모아 카테고리화하고, 대부분의 참여사들 콘텐츠를 분류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형식을 추출한다. 연구결과는 바로 다음 단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2. 2단계: 보존대상 확대(2~3년 소요)

1) 방식, 인프라, 주 대상사업자

포털형+폐쇄형에서 선별구입형과 녹화형을 추가, 복합형 아카이브로 나아간다. 이 단계에서는 인프라 확장, 복원 및 수집대상 확대에 초점을 맞춘다.

1단계에 이어 ① 저장·관리시설을 확대한다. ② 저장·관리장비는 서버와 스토리지를 중심으로 확대하고, 녹화시스템을 새롭게 갖춘다. ③ 본격적인 라키비움·클램으로서의 인프라를 2단계부터 갖춘다. 갤러리, 박물관, 기타 문화시설을 확보한다.

주 대상사업자는 1단계 대상사업자에 더해 보도PP, 기타 희망사업자들이다.

2) 수집

자료수집의 대상은, ① 참여사 제공 방송콘텐츠 일부(확대), ② 복원 지원 콘텐츠(계속), ③ 기금 제작지원 콘텐츠(계속)다.

사업자 협의체의 경우 1단계와 마찬가지로 운영한다.

수집위원회 또한 1단계와 마찬가지로 운영한다.

법·제도 정비방안(수집·보존·활용안, 저작권 등) 연구도 지속한다. 2단계에서는 구체적인 법·제도 마련을 통해 3단계의 방송콘텐츠 아카이빙 본격화를 준비한다.

3) 복원·보존

1단계와 마찬가지로 복원콘텐츠에 대해 수집위원회가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2단계에서는 참여사 제공 콘텐츠 저장을 확대하고, 녹화형 채택시 참여사 콘텐츠의 실시간 수집·저장을 시작한다.

4) 분류·활용

메타데이터 입력을 확대해나간다.

참여사와의 협의하에 중개거래 시스템 일부를 개방형으로 구현하고, 관내 열람, 연구 등 수집자료에 대한 공익적 이용을 허용한다.

1단계 표준화된 메타데이터 연구결과를 통해 적용된 메타데이터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2단계에서 실시한다.

3. 3단계: 본격 운영

1) 방식, 인프라, 주 대상사업자

기존 포털형+폐쇄형+선별구입형+녹화형에 납본형을 추가한다. 3단계의 주된 내용은 복원·수집대상 확대, 제도 안정화, 활용 시작이다.

2단계에 이어 ① 저장·관리시설을 확대한다. ② 저장·관리장비는 서버와 스토리지를 중심으로 확대하고, 유지보수를 해나간다. ③ 본격적인 라키비움·클랩으로서 문화시설을 고도화해나간다.

주 대상사업자는 2단계 대상사업자에 더해, 마련된 법제도를 토대로 KBS, EBS, 종합편성채널을 추가하고, 방송사업자만이 아니라 방송영상제작사와 같은 다양한 저작권자도 포함해나간다.

2) 수집

자료수집의 대상은, ① 참여사 제공 방송콘텐츠 대부분, ② 복원 지원 콘텐츠(계속), ③ 기금 제작지원 콘텐츠(계속)다.

사업자 협의체의 경우 1, 2단계와 마찬가지로 운영한다.

수집위원회 또한 2단계와 마찬가지로 운영한다.

법·제도 정비방안(수집·보존·활용안, 저작권 등) 연구를 완성한다. 3단계부터는 운영 성과 및 향후 발전방안 연구도 함께 실시한다.

3) 복원·보존

1, 2단계와 마찬가지로 복원콘텐츠에 대해 수집위원회가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2단계에 이어 참여사 제공 콘텐츠 저장을 더욱 확대하고, 실시간 콘텐츠 수집·저장도 확대해나간다.

4) 분류·활용

메타데이터 입력을 더욱 확대해나간다. 메타데이터 활용 신규서비스도 개발한다.

참여사와의 협의하에 중개거래 시스템 일부의 개방형 구현을 확대한다. 콘텐츠 소개 및 방송사에 구매자 정보를 활발히 중개한다. 안내 열람, 연구 등 수집자료에 대한 공익적 이용도 지속한다.

구분	기본 인프라 구축(1단계)	보존대상 확대(2단계)	본격 운영(3단계)	
방식	포털형(폐쇄형)	복합형: 포털형+선별구입형+(녹화형)	복합형: 포털형+선별구입형+(녹화형)+납본형	
	기본 인프라 구축과 복원에 초점	인프라 확장, 복원 및 수집대상 확대	복원 및 수집대상 확대, 제도 안정화, 활용 시작	
인프라 (추가분만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원·저장·관리·데이터 입력시설: 한국광고문화회관 복원장비 -필름: 필름 검수스테이션(리와인더), 필름스캐너, 편집장비, 색보정/마스터링 장비 -테이프: 디지털 변환장비 보존자료 저장·관리 솔루션(폐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장·관리시설 확대 저장·관리장비: 서버, 스토리지+녹화시스템 등 갤러리, 박물관, 기타 문화시설: 한국광고문화회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장·관리시설 확대 저장·관리장비 확대, 유지보수 문화시설 고도화 	
주 대상사업자	지역방송사 + 기타 희망사업자 * K, E의 경우 기공개자료 일부	기존 + 보도PP + 기타 희망사업자	기존 + KBS, EBS + 종편 + 기타 희망사업자 + (저작권자)	
수집	자료 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자 제공 방송콘텐츠 일부(기공개자료 등) 복원 지원 콘텐츠 기금 제작지원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자 제공 방송콘텐츠 일부(확대) 복원 지원 콘텐츠(계속) 기금 지원 제작콘텐츠(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자 제공 방송콘텐츠 대부분(납본) 복원 지원 콘텐츠(계속) 기금 지원 제작콘텐츠(계속)
	협의체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협의체 운영: 지상파+종편+보도+지역 등 위원 20명 내외, 월 1회 운영 	좌동	좌동
	수집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 10-15명, 연 4-6회 운영 	좌동	좌동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제도 정비: 수집·보존·활용안, 저작권 등 수집자료 열람·검색서비스 구축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제도 정비(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제도 정비(계속) 운영성과 및 발전방안 연구
복원 / 보존	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지역)사 디지털화를 위한 별도계획 수립·추진 수집위가 우선순위 결정 	좌동	좌동
	콘텐츠 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자 제공 콘텐츠 저장 보안 및 이원화 대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자 제공 콘텐츠 저장(확대) (녹화형 채택시) 참여사 콘텐츠 실시간 수집·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자 제공 콘텐츠 저장(확대) 참여자 콘텐츠 실시간 수집·저장(확대)
분류 / 활용	메타데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메타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메타데이터 입력(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메타데이터 입력 메타데이터 활용 신규서비스 개발
	중개거래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개거래 시스템(폐쇄형)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개거래 시스템(일부 개방형) 구현 관내 열람, 연구 등 공익적 이용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콘텐츠 소개 및 방송사에 구매자 정보 중개 관내 열람, 연구 등 공익적 이용 허용(계속)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자료 정보체계(메타데이터) 표준화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자료 정보체계 개선방안 연구 	.

[그림 4-5] 방송콘텐츠 아카이브 구축 로드맵

제4절 법제도 개정방향

방송콘텐츠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서는 현행 법령에 근거가 명확해야 하지만, 그간 직접적인 근거 법령은 부재했다. 다만 국가 주요기록물에 해당하는 방송영상자료는 『공공기록물법』에 의거해 보존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방송콘텐츠 자체를 하나의 문화유산이라는 인식 하에 보존의 대상으로 삼는 개별 법률과 근거 조문은 없었다. 영화나 도서의 경우에도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근거 법령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 이에 2022년 4월 우상호 의원 대표발의로 ‘한국방송자료보존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세 법률안은 한국방송자료보존센터의 설립 근거, 재원, 방송저작물 수집·보존에 따른 저작권의 보호 근거를 담고 있다. 이 절에서는 각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련해 제기될 수 있는 이슈들, 그리고 혹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 방향을 논의해본다.

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22. 4. 21. 우상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5355)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화·비디오물 관련 콘텐츠의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영상자료원을 설립하여 수집·보존하고, 자료를 체계화·디지털화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일부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만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보존·관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존·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방송사업자들이 방송제작 목적으로 보존하고 있는 자료의 경우에도 통합적 메타데이터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연구자들이 보존된 자료를 열람하기 어려워 연구목적 등에 이를 활용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사회적·역사적 보존가치가 큰 방송프로그램 및 관련 방송자료를 통합적·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한국방송자료보존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안 제93조의2 및 제93조의3 신설)이다.

2) 이슈들

첫째, 제9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방송자료보존수집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자료로서 역사적·사회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방송자료의 수집·보존 여부를 심의하는 자문위원회로 판단되며, 국내 방송자료의 수집 및 수집된 방송자료의 보존복원 사업 등은 개정안 제93조3에 따라 별도 법인으로 ‘한국방송자료보존센터’를 설치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련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 위원회를 포함한 방송자료 수집·보존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방송자료보존센터’의 내부규정 마련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유사사례로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문체부 산하 한국영상자료원의 ‘자료수집위원회’(한국영상자료원 『자료관리규정』 §7)가 있다.

둘째, 한국방송자료보존센터를 법인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위탁 혹은 위임하는 기관(아니면 위탁 혹은 위임하는 기관의 부설센터)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볼 수 있다.

셋째, 방송자료 제공 사업자에 대한 지원재원을 국고가 아닌 기금에서 조달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3) 개정방향

첫째, 반드시 별도의 센터를 설립할 필요는 없다. 법인의 형태가 아닌 독립적인 운영주체를 만들고, 실질예산은 정부 기관(방송통신위원회 일반회계나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을 통해 사용 가능하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부설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운영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

둘째, 아카이브 운영 시 발생할 필요경비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필요한 경비/예산을 지원한다” 등)이 필요하다.

셋째, 단순 보존을 목적으로 할 경우, 아카이브 구축관련 별 법안 제(개)정 없이 보존 가능하다는 의견제기가 가능하다.

넷째, 모든 방송콘텐츠를 보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어떤 자료를 보관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위해 방송자료수집위원회 구성은 불가피하다. 단, 반드시 방송통신위원회 내 특별위원회일 필요는 없으며, 아카이브센터 내부규정 마련을 통해서도 해결 가능하다. 수집위 구성에서 주요쟁점은 방송사업자들의 참여여부인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완벽하게 공적이고 독립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사업자들이 참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고, 방송사업자는 수집기준에 사업자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수집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2.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356)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일부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만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보존관리하고 있고, 방송사업자들이 방송제작 목적으로 보존하고 있는 자료의 경우에도 통합적 메타데이터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사회적·역사적 보존가치가 큰 방송프로그램 및 관련 방송자료를 통합적·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방송법』에 마련하고,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안 제26조제1항제4호의2 신설).

2) 이슈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내 기금 용도를 나열한 부분에 방송자료보존센터 구축·운영 내 용을 포함하는 것이 관건이다. 만약 포함이 어렵다면, 방송통신발전기금 외 다른 예산(일반·특별회계)이나 기금 등에서 경비를 조달할 수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3) 개정방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해진 방발기금을 나눠 사용하고 있다 보니,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기금한도에서 어느 정도 만큼을 조정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통상적으로 기금 대신 일반회계 예산을 확보한 후에 기재부에서 요청이 있을 시 기금 용도로 옮기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357)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자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영상자료 등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보존 및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방송프로그램 등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에 한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수집대상 방송프로그램으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있는 바,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한 중요한 방송자료의 수집·보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역사적 보존가치가 큰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한 방송자료의 수집·보존 및 전시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한국방송자료보존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이에 『방송법』에 따라 설치되는 한국방송자료보존센터는 조사연구 또는 자체보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지는 방송사업자로부터 수집한 방송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가 한국방송자료보존센터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방송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송저작물의 수집·보존에 따른 저작권의 보호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안 제 34조의2 신설).

2) 이슈들

저작권자와 이용허락계약을 통해 방송프로그램 등을 수집할 수 있음에도, 사업상 편의를 위해 저작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 또한, 관련 국제조약에 따라 저작재산권 제한 시 충족해야 하는 3단계 테스트(① 일정한 특별한 경우에 ②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저촉되지 않고, ③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않을 것)를 위반하여 WTO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 한미 FTA 등 위반에 따른 국제분쟁을 야기

할 수 있다.

영화와 방송 모두 본질이 영상저작물로서, 창작에 기여한 자가 다수이며 계약에 따라 권리 귀속이 다양하므로 양자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 또한 방송저작물의 저작권(복제권, 공연권, 전송권, 방송권, 디지털동시송신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을 제작사 등이 보유하고, 방송사업자는 “방송할 권한”(방송권)만을 갖는 경우도 많음에도, 한국방송자료보존센터로 하여금 방송사업자에게만 지원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수집된 방송저작물의 복제·전송 등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

유사기관인 한국영상자료원도 권리와 이용허락계약 등을 체결하여 영화 등의 수집·보존·열람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저작권 보호의 국제적 균형과 통일을 위해 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유사한 저작권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저작권법』 제31조가 대표적이다. 이에 반해, 개정안과 같이 특정 사업을 위해 저작권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해외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

또한 『저작권법』 제31조는 도서 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될 때 그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용 방법, 동시 열람 이용자 수 제한 등 거래시장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저작권자 이익을 아울러 고려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적용요건에 특별한 제약이 없어 저작물 시장대체 효과가 크고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

3) 개정방향

첫째, 『저작권법』 개정 관련해서는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신중히 접근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콘텐츠 저작권자에게 유상 보상시, 국가차원의 이용계약서 체결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표준)계약서 마련시,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개정 문제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이 가능하다. 현재 『저작권법』에 아카이브 관련 특례·예외 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문체부 등) 관련 정부부처의 반발을 살 수 있다. 이에 입법전략상 기본 『저작권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에서 출발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아카이브 구축 시, 방송 사업자와의 이용허락 관련계약 체결은 필수다. 특히

문제부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방송콘텐츠 활용에 대한 금전보상 보다는 공익적 목적에 방점을 두어 『저작권법』 예외를 두는 등의 사업추진을 해야 한다.

둘째, 공영방송사들의 협조를 구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외 법안을 일괄적용하기 어려운 예외상황들이 있다.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민영방송사의 경우뿐 아니라, 국내 방송사에서 해외에 저작권이 있는 영상을 방영할 경우에도 국제분쟁 발생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실상 공영방송사들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중소지역방송사들은 현실적으로 독립적인 아카이브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해당 사업제안에 협조적인 부분도 존재한다.

셋째, 아카이브 사업이 『저작권법』 중 예외·면책조항에 해당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보존할 경우에 『저작권법』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아카이브센터 관련규정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하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법』 이슈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활용할 수 있다.

넷째, 해당 사업에서 아카이브 자료의 활용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는 가장 낮은 단계의 활용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4. 소결

이상에서 2022년 4월 기 발의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련 이슈들, 그에 따른 개정방향을 살펴보았다. 방송콘텐츠 보존을 목적으로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 근거 법령이 존재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강제적인 납본제도에 의하지 않는 아카이브 구축·운영을 할 경우 법적 근거가 필수요소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해외 사례들을 비추어봤을 때, 국내에서는 방송콘텐츠의 문화유산적 가치보다 사유의 대상으로서 가치 인식이 더 큰 편이다. 하지만 법적 근거 마련이 방송사업자들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목적을 주로 삼아서는 곤란하다. 방송콘텐츠 보존이 우리 사회에서 왜 중요한지를 밝히고, 지속가능한 보존을 위한 것일 필요가 있다.

즉, 법제의 필요성 측면에서는 방송콘텐츠가 시대적 기억과 창의적 제작자의 생산요소

로서 자료의 축적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축적된 자료를 통해 사회적 차원에서 창조적인 해독 및 활용이 가능해지며, 새로운 것을 재창조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데 중점을 둔다. 프랑스, 미국, 일본 등은 법에 근거하여 방송된 대부분의 방송콘텐츠를 체계적으로 보존(아카이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방송콘텐츠를 정부 차원에서 수집·보존·활용하고, 그것을 위해 근거 법령을 마련하는 일은 자연스럽다. 따라서 현재 발의된 법안을 다듬어 시행될 수 있게끔 하는 후속노력이 요청된다(남송용·이순환·최민정, 2021).

하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방송콘텐츠가 주요한 국가 기록물 자원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점 변화다. 프랑스나 영국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방송콘텐츠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가치와 철학, 그리고 아카이빙을 제도화하기 위해 관련 법제와 기관을 정비하고 시대와 미디어 환경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데 있다. 방송콘텐츠는 한 문화의 동시대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적 유산의 중요한 한 축이고, 그렇기에 방송콘텐츠의 수집·보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 확대가 사회 내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변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행정비용이 요구되기 때문에, 프랑스나 영국과 같은 법적·제도적 정비와 함께, 비교적 단기간 내 변화를 실현하기 위한 대안이 요청된다. 대표적으로, 방송콘텐츠의 공적 저장소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별도로 만드는 것보다는 적합성이 높은 기존 조직을 통해 해당 기능을 추가 수행하게끔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정희경·김희경·최효진, 2022).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내용 요약 및 제언

1. 연구내용 요약

이 연구에서는 방송콘텐츠의 체계적 수집·관리를 위한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의 의미를 도출하고, 대중뿐 아니라 관련 산업주체에게도 도움이 되는 아카이브 운영모델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연구방법을 설정하고, 국내 아카이브 구축 사례, 그리고 해외(프랑스, 영국, 미국, 호주) 현황을 분석해 한국형 아카이브 구축·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그리고 국내 방송사 아카이브 실사결과를 분석했다. 방송사 아카이브 관리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은 무엇인지, 각사별 이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내용을 토대로 방송사 아카이브의 공적 지원방향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아카이브의 단계적 구축방안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크게 세 단계(아카이브를 어떻게 구축·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인프라 구축·운영, 방송콘텐츠 수집, 데이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로 나눠 논의했다.

그 결과로 정리해볼 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방송사 17개 아카이브에 대한 실사결과다. ① 아카이브 관리 조직 및 인력 차원에서는 방문한 모든 지역 방송사에서 아카이브 전담 인력 및 조직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았다. 문제적 상황임을 각사에서 인식하고 있지만 회사에서 전담인력 배치를 위해 별도 재원을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다. ② 매체 자료관리에 있어서는 자료 방치, SD/HD 방송테이프 VCR 장비 부족, 테이프 자료 목록 및 DB 미비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디지털제작시스템(NPS) 내 데이터 관리의 경우, 데이터 관리 정책 부재, 메타데이터 부실 및 관리 부재, 백업 및 이중화 부재 등이 문제로 꼽혔다. ③ 소장 콘텐츠 관리와 관련해서는, 아날로그 매체 및 디지털 데이터 혼재, 아날로그 매체 폐기 위기, 통계자료 미비 등이 발견됐다. ④ 아카이브 외부 개방에 있어서는 방송사에 따라 크게 콘텐츠 판매 내규에 따른 판매, 자사 및 플랫폼 활용 공개의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향후 공적 지원 방향으

로는, ① 아날로그 매체 디지털화 지원, ② 디지털아카이브 운영 지원, ③ 장기보존 포맷에 저장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지원, ④ 이중화, 재난복구 시스템 구축, ⑤ 아카이브 인프라 공유, ⑥ 아카이브 정책 수립 및 활용 컨설팅, ⑦ 지역 공공영상 데이터 관리 거점 운영 등을 꼽을 수 있다.

둘째, 구축 및 운영방향이다. 구축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방송콘텐츠 아카이브는 복합문화공간인 라키비움(Larchiveum)이나 글램(GLAM) 형태로 구축한다. ② 수집·보존이 우선이고, 분류·활용은 원하는 사업자에 한해 나중에 행한다. ③ 콘텐츠 제공주체, 관련 산업종사자, 대중 모두에게 도움이 가는 방식으로 구축한다. 구축을 위해 전제할 사항으로는 ① 참여 사업자들에게 되도록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수집, ② 사업자 동의 콘텐츠들에 한해서만 활용, ③ 사업자 니즈에 맞춘 접근방식을 견지, ④ 디지털과 아날로그 인프라가 함께하는 아카이브 구축을 꼽을 수 있다. 아카이빙 방식은 기본적으로 포털형이나, 라키비움이나 글램 모델을 취한다고 했을 때 나머지 방식도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이상적이다.

셋째, 운영 가이드라인으로, 이는 다시 여섯 차원으로 나뉘볼 수 있다. ①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 기능을 통합하는 복합문화공간(라키비움) 형태로 아카이브를 조성한다. ② 인프라 구축·운영이다.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 기능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을 지향하는 아카이브 센터의 인프라는 물리적 인프라(시설·공간·장비 등)와 디지털 인프라(하드웨어·소프트웨어) 모두를 갖춰야 한다. ③ 방송콘텐츠 수집이다. ‘방송자료수집위원회(가칭)’가 독립적으로 각 시대 및 주제에 걸맞는 대표적 콘텐츠를 다양하게 수집한다. 수집시기와 기준 등은 별도로 정한다. ④ 방송콘텐츠 복원·보존이다. 기존 방송콘텐츠의 복원 및 화질개선은 아주 큰 과제다. 방송사 소장 아날로그 방송콘텐츠의 디지털 전환 및 업스케일링 후 아카이브 시스템에 보존·축적하는 것이 세부내용이다. ⑤ 실시간 방송콘텐츠 수집이다. 기 저장된 방송콘텐츠 외에 아카이빙 협약 후 생산되는 콘텐츠의 실시간 자료수집 방식에 대해서도 결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전용회선 통한 연계 > 에어 캐치 > 재송신 방송분 녹화 순으로 한다. ⑥ 데이터 관리다. 방송사별로 보유하고 있는 메타데이터 공유가 여의치 않을 수 있으므로, 최근 방송환경과 각 방송사 상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방송콘텐츠 아카이브가 고유의 메타데이터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

2. 제언

제언은 실제 아카이브 구축 로드맵 1단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고민과 관련된다.

아카이빙 방식은 일단 포털형(폐쇄형)을 기본으로 한다. 소규모, 낮은 수준에서 사업에 착수, 점차 확장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 당연히 기본 인프라 구축과 지역방송사 콘텐츠 복원·보존에 초점을 둔다. 1단계까지는 실시간 방송분을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기보관 중인 테이프를 받아오는 정도로만 한다.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카이브센터에서 참여사(지역방송사 위주)의 아날로그 자료현황을 파악(훼손여부 등)하고 복원·보존대상을 분류한다. 실사 결과 지역방송사 당 평균 1.5~2만여 개의 테이프를 보유(부산MBC만 6만여 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불안정한 보관상태로 훼손에 따른 재생 불가 자료들이 많을 수 있으며, 각 사별 자체 현황 파악조차 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둘째, 디지털화 과정을 위한 인건비, 물류비, 장비 확보·수리비 등의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보존공간을 우선 마련한다. 이들이 장기적으로 들어갈 예산은 아니므로, 지역자료 보존논리를 통해 지역자치단체의 지원을 함께 받는 방안에도 고려 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화 관련장치를 확보하고, 지역자치단체는 지역방송사 아날로그 자료 확보 및 복원을 하는 식이 대표적이겠다.

셋째, 방송자료수집위원회가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복원·보존한다. 단, 이 때는 콘텐츠의 가치만이 아니라 물리자료의 훼손정도, 보존공간 등도 고려한다. 테이프의 경우, 디지털화 작업에 테이프 재생시간과 거의 동일한 시간이 소요된다. 화질 업스케일링도 어려우며, 기존화질 그대로 변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필름은 프레임 단위 스캔 시, 상당시간이 소요(1초당 2프레임)되며, 업스케일링이 가능하다.

넷째, 다른 한 편으로는 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 참여사의 복원 콘텐츠 및 기변환 디지털 콘텐츠를 함께 보존한다.

그 밖에, 공공사업 특성상 1단계부터 관내열람 등 이용자들이 현장에서 아카이브 영상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함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역방송사 콘텐츠들 중심으로 아카이브를 초기 구축할 경우, 센터 소재지가 서울이므로 해당 콘텐츠를 전국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찾아가는 아카이브 서비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지역사무소 활용 등) 마련도 고려해봄직하다.

제2절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이 연구의 의의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그간 대부분의 연구가 기존 관련연구와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그에 기반해 다소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방송콘텐츠 아카이브 구축방향을 제시했다면, 이 연구에서는 실사에 기반해 국내 방송사 아카이브의 현재와 한계를 드러내고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발전적인 아카이브 구축방향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기존 아카이브 논의의 외연을 확장함은 물론이고, 향후 본격적이면서도 실질적인 공영 방송콘텐츠 아카이브 기획·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기초자료로 기능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둘째, 정부 차원에서 방송콘텐츠 아카이브 구축·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단계적 방안, 그리고 고려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방송사 아카이브에 대한 현실 직시를 바탕으로,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과 의미, 구축·운영방향에 대해 사업자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아카이브를 향한 다양한 사업자들의 니즈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아카이브 상을 제시해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논의를 진행했다.

그럼에도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노정하는데, 이는 동시에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이 될 수 있을 듯하다.

첫째, 기존 연구에 비해 진일보한 단계적 구축방안과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당장 실제로 방송콘텐츠 아카이브를 구축한다 했을 때 1년차부터 구체적으로 누가(아카이브 센터 운영주체) 어디에(장소) 어떤 사업자들의 어떤 콘텐츠들을(대상)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범위) 어떻게(방법) 수집·보존·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까지는 연구결과에 담지 못했다. 사업 실현을 목표로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법적 검토, 운영방향 가시화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바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아카이브 공간을 꾸리고, 아카이브 참여를 확정된 대상 사업자와 협의하고, 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사업자와 설계도를 논의하는 등의 단계로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만약 후속연구가 이뤄진다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주된 내용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둘째, 해외사례에 비교적 최신 정보들을 담고자 했음에도 기존 연구들에서 많이 소개됐던 국가들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진 감이 있다. 프랑스, 영국, 미국, 호주만이 아니라 공공 차원의 아카이브를 활발히 구축·운영하고 있는 여러 국가들이 존재하는 바, 이후 연구에

서 보다 다양한 국가들의 아카이브 사례가 소개돼야 할 것이다. 꼭 이 연구만의 문제라 보기 어려우나, 해외사례 조사 시 해당국가가 특정 정책이나 사업들을 펼치게 된 맥락을 오롯이 담을 수 없어, 아무리 사례가 우수하다 해도 그것들을 국내 상황에 단순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겠다. 대표적인 것이 납본제다. 수십년 전부터 사회적 인식과 함께 방송콘텐츠를 납본해 온 아카이브 사례를, 지금 우리 맥락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점들이 너무나 많다.

무엇보다, 방송콘텐츠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이 요구된다. 논리는 그동안 충분히 확보돼왔다. 관련 종사자들 아니든 공적 방송콘텐츠 아카이브가 갖는 의미 자체에 대해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물론 그것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 말이다. 하지만 관련 주체의 니즈를 우선 충족하는 아카이브가 성공적으로 만들어지고 나면, 그것이 방송산업과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도 없을 터다. 분명한 것은, 방송콘텐츠가 우리 사회 차원에서 안전하게 보존되고 유지되고 전승돼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향후 정책과 구체적인 사업 논의에서 초점을 맞춰야 할 부분은 정부가 방송콘텐츠 아카이브를 어떻게 더 늦기 전에 사업자와 일반 이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구축할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구축한 아카이브가 방송산업과 우리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여야 한다.

부록 - 방송사업자 아카이브 현황조사용 사전질문지

방송사업자 아카이브 현황 사전 질문지

'22. 7. 11.(월) / KOBACO 미디어데이터팀

안녕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 위탁연구 '디지털 방송콘텐츠 아카이브 단계적 구축방안 및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의 연구를 하고 있는 강신규(책임연구원), 최효진(공동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아카이브 시스템 활용도 제고를 위한 아카이브의 체계적 운영모델 및 가이드라인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귀사를 비롯하여 국내 방송사업자의 아카이브 현황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국내 디지털 방송콘텐츠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귀사에서 제공한 정보는 본 연구에만 사용되며 임의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연구에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신규, 최효진 배상

강신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광고산업진흥국 미디어광고연구소 연구위원

전화 011-3479-7364 메일 ksh@kobaco.co.kr

최효진

한국외대 정보기록학연구소 연구원

전화 020-4296-4811 메일 chyojin@naver.com

(아카이브 기본 정보)

1. 귀사의 아카이브(영상자료실) 기본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성격(공공기관/공영방송/민영방송 등)
- 아카이브(영상자료실) 관련 조직 및 인력 현황 (부서명, 해당부서 인력 규모)
- 아카이브(영상자료실) 장비 및 시설 (장비목록)
- 아카이브 운영 관련 재원 (유지보수비, 인건비 등)
- 외부 개방 여부 (시청자 서비스, 유튜브 공개 등)

2. 귀 사의 유형별 소장 콘텐츠 현황을 알려주세요.

- 영상자료, 음성자료, 사진, 문헌, 도서 등
- 기관별 집계된 통계(자료관리 대장 등)가 있다면, 통계자료를 제공해주셔도 됩니다.
- 자세한 통계가 없다면 대략적으로 알려주세요. (영상자료실 규모, 모빌렉 수, 보존상자 수 등)

2-1. 귀사에서 보관 중인 아날로그 형태(필름, 테이프 등)로 방송자료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 보관 중인 아날로그 매체 유형, 수량, 보존상태, 디지털화 및 DB화 여부 등

(아카이브 시스템)

3. 귀사에서는 소장콘텐츠를 어떻게 검색하시나요?

- 사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
- 엑셀 목록 등 기존 소장콘텐츠 대출 대장 사용
- 특별한 목록 관리 없이 개방형 영상자료실 서고를 운영

(아카이브 외부 개방)

4. 귀사에서는 소장콘텐츠를 외부에 개방하고 있습니까?

-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여 영상자료 공개
- 홈페이지 등 별도 검색 플랫폼을 구축하여 연구자 및 시청자들에 공개
- 공개 안함

4-1. 귀사에서는 학술연구자나 지역민들이 귀사의 소장콘텐츠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귀사의 콘텐츠를 외부에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까?

- 지역 대학, 연구소 학술 연구자 연구자료 제공
- 초/중/고 각 급 학교 교육 활용 지원
- 박물관 및 도서관 문화예술 관련 행사 지원
- 지역 영상창작자 영상제작 지원

(외부 콘텐츠 활용)

5. 귀 사에서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타 방송사 등 외부 콘텐츠를 검색할 때 주로 방식을 이용하시나요? (일반적인 경향을 말씀해주세요)

- 유튜브, KTV 나누리 포털, 타 방송사 홈페이지, 해외사이트(게티 등) 등
- 타 방송사 또는 외주제작사 등에 직접 문의

(공영 디지털 방송콘텐츠 아카이브)

6. 국내에 '(가칭) 공영 디지털 방송콘텐츠 아카이브'를 설립하는 의견에 대해서 귀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정부의 역할(시스템 구축 지원, 필름 및 테이프 디지털화 지원, 메타데이터 표준 마련 등), 기대되는 점, 우려되는 점 등 다양하게 의견 주세요.

참고문헌

- 강병규 (2020, 11월). <공공콘텐츠로서 지역방송사의 아카이브 활용전략: 지역MBC와 KT V MOU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 자료.
- 강진아 (2021, 10, 12). 양승동 KBS 사장 “수신료 인상은 방송 공공성 위기 검토. <뉴스스>. Retrieved from https://news.v.daum.net/v/20211012155623661?fbclid=IwAR2dstjPwML7hHyojVlkVdMvnqSd_YmMMTqDspF52zclAbBgSLroqseYpqI
- 곽승진·이정미 (2018). 복합문화시설로서 도서관의 라키비움 도입전략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9(3), 339-359.
- 국가기록원 (2009). <방송·영화 기록관리 해외사례 조사보고서>.
- 김민태 (2021, 2월). 온라인 유료 강의 전성시대, 지상파 구독 모델은 성공할까? EBS <클래스>. <신문과 방송>, 602, 56-59.
- 김상민 (2016). <디지털 자기기록의 문화와 기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수정 (2018, 2, 26). 양승동 KBS PD, KBS 새 사장 후보로 선임돼. <노컷뉴스>, Retrieved from <https://www.nocutnews.co.kr/news/4930973>
- 김영주·장은미 (2019). <뉴스미디어 박물관: 역사, 체험, 교육의 복합문화공간 설립방안 연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김윤상 (2020, 6, 15). 모든 영상 콘텐츠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 <오마이뉴스>. Retrieved from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50114
- 김은총·김수정 (2017). 지역방송국 기록관리 현황과 개선 방안. <정보관리학회지>, 34(4), 293-320.
- 노규성 (2014). <플랫폼이란 무엇인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매일경제 (2022.10.31.). ‘쌍둥이 데이터센터’ 있었다면…초유의 카톡 먹통 막았다. Retrieved from <https://www.mk.co.kr/news/it/10509448>
- 박춘원·강진욱 (2021, 10월). <대중문화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메타데이터 구축

의 현재와 미래 방향-영상자료를 중심으로>. 한국 대중문화아카이브 구축: 기술, 제도, 추진전략 세미나. 시흥: 서울대 시흥캠퍼스.

방송과 기술 (2016.11.3.) 소니코리아, Optical Disc Archive Gen2 출시. Retrieved from <http://tech.kobeta.com/%EC%86%8C%EB%8B%88%EC%BD%94%EB%A6%AC%EC%95%84-optical-disc-archive-gen2-%EC%B6%9C%EC%8B%9C/>.

방송통신위원회 (2021, 12월).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Retrieved from <https://kcc.go.kr/user.do?page=A02020100&dc=>

방송통신위원회 (2021, 12, 17). 방통위, 방송 100주년 준비 간담회 개최.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Retrieved from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115>

보안뉴스 (2013.12.2.). 한성SMB, 차세대 카트리지 타입 장기보관 스토리지텐드버그 RDX 출시. Retrieved from <https://www.boanews.com/media/view.asp?idx=38764>.

새전북신문 (2008.11.23.). JTV ‘전북의 발견’ 방송문화진흥회 지역프로그램 대상 특별상. Retrieved from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1920>.

세계법제정보센터 (2022, 11, 25). Retrieved from <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연합뉴스 (2017, 2, 17). [게시판] KBS-국립중앙도서관 업무협약. <연합뉴스>. Retrieved from <https://www.yna.co.kr/view/AKR20170227140900033?input=1195m>.

오정훈·이용봉 (2014). 전문도서관 라키비움 구축에 관한 연구: 원자력 라키비움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5(2), 229-246.

이광석 (2020). <디지털의 배신>. 서울: 인물과사상사.

전북일보 (2008.2.28.). JTV 전주방송 ‘피우자 민들레’ ‘한국PD대상’ 작품상 선정. Retrieved from <https://www.jjan.kr/article/20080227259809>.

전북일보 (2011.4.7.) JTV 전주방송 ‘전북의 발견’...민영방송대상 우수상. Retrieved from <https://www.jjan.kr/article/20110406391899>.

전북일보 (2012.7.16.). JTV전주방송 ‘피우자 민들레’...한국 YWCA ‘좋은 TV 프로그램상’ 특별상. Retrieved from <https://www.jjan.kr/441938>.

전자신문 (2019.7.13.). 제머나이소프트, 광주MBC 보도제작 시스템 구축 완료. Retrieved

from <https://www.etnews.com/20190723000322>.

- 정희경·김희경·최효진 (2022). <방송통신 콘텐츠의 공적 활용 방안>. 서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정희경·박춘원·유영식·최효진 (2019). 국내 공공 방송·영상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해외 사례 분석. <미디어, 젠더 & 문화>, 34(3), 297-337.
- 최영실 (2012).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복합 기능을 구현한 라키비움의 공간 기능에 관한 연구. <문화산업연구>, 12(2), 53-80.
- 최효진 (2018). 국내 공공영상아카이브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과제: 프랑스 INA FRAME 영상아카이브 국제연수 참가를 통해 살펴본 해외 동향 분석. <기록학연구>, 58, 95-145.
- 최효진 (2021). <‘공공영상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방안 연구: 방송영상컬렉션 수집 및 활용 방향>. 한국외대 대학원 정보·기록학과 박사학위논문.
- 최효진, 박춘원, 김수영, 송정아, 박예진, 신봉승, 지선호, 선상원 (2022). 방송사 보도영상관리시스템 운영 현황분석과 개선안 연구 - KBS 디지털뉴스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3(3), pp.123-155.
- 취재대행소 앵 (2020, 7, 14).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를 왜 볼 수 없게 된 걸까?’. Retrieved from <https://www.youtube.com/watch?v=na3Abe2AdE4>
-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 11, 25). <해외저작권정보>. Retrieved from <https://www.copyright.or.kr/kcc/koreacopyright/guide/france/france.do>
- American Archive of Public Broadcasting. (2022, 11, 25). Retrieved from <https://americanarchive.org/>
- American Television and Radio Archives Act*
- Bergit Kofler. (1997). Legal Issues facing audiovisual archives, In *Audiovisual Archives: A Practical Reader*, UNESCO.
- BFI. (2020). *BFI 2020*.
- BFI. (2022, 11, 25). Retrieved from <http://www.bfi.org.uk/>
- Big Data Framework (2019. 1. 9). *Data types: Structured vs. unstructured data*. URL: <https://www.bigdataframework.org/data-types-structured-vs-unstructured-data/>

Broadcasting Acts

Broadcasting Service Act

Claude Mussou. (2018, 8, 30). < ‘디지털 시대의 공공 영상아카이브를 위한 정책 세미나’ 초청 컨퍼런스 질의응답>, 서울: 프레스센터.

Copyright Act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s

Edmonson, Ray. (1997). Nature of the AV Media In Helen P. Harrison (Ed.). *Audiovisual Archives: A Practical Reader*. Paris: General Information Programme and UNISIST,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Edmondson, Ray. (2016). *Audiovisual Archiving: Philosophy and Principles*(Third Edition). Bangkok: UNESCO Bangkok.

FIAF. (2022). *FIAF Code of Ethics*. Retrieved from <https://www.fiafnet.org/pages/Community/Code-Of-Ethics.html?fbclid=IwAR2RA7R3Bs3QZQ7j2iBO10GX2dldIRWHBZgZv3ZJSOJr7EVWoKLWBQwfm0c>

IASA. (2022, 11, 25). Retrieved from <https://www.iasa-web.org/legal-deposit/register?page=1>

INA. (2020). *Rapport d'activité*.

INA. (2022, 11, 25). Retrieved from <http://www.inatheque.fr>

INA Madelen. (2022, 11, 25). Retrieved from <https://madelen.ina.fr/>

IASA Technical Committee. (2017). The Safeguarding of the Audiovisual Heritage: Ethics, Principles and Preservation Strategy.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ound and Audiovisual Archives*, Retrieved from <https://www.iasa-web.org/tc03/ethics-principles-preservation-strategy>

Kofler, Birgit. (1997). Legal Issues facing audiovisual archives, In Helen P. Harrison (Ed.). *Audiovisual Archives: A Practical Reader*(pp. 43-54). Paris:General Information Programme and UNISIST,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La Loi no 92-546 du 20 juin 1992 relative au dépôt légal.

La Loi n° 86-1067 du 30 septembre 1986 relative a la liberte de communication.

Le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Le Code de Patrimoine.

Library of Congress. (2022, 11, 25). Retrieved from <https://www.loc.gov/>

Library of Congress. (2019). *Annual Report 2019.*

Library of Congress. (2020). *Annual Report 2020.*

Lumni. (2022, 11, 25). Retrieved from <https://enseignants.lumni.fr/>

Mason, J. (2022). *Qualitative researching (2nd edition)*. 김두섭 (역) (2010). <질적 연구방법론>. 나남.

Michalko, James (2007). Libraries, Archives, and Museums: Archiving Scale and Relevance in the Digital Age. *A Journal of Rare Books, Manuscripts, and Cultural Heritage*, 8(1), 75-79.

Mike Casey. (2015, January). Why Media Preservation can't wait the gathering storm,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ound & Audiovisual Archives Journal*, 44.

Murdock, G. Media, culture and economy :critical interrogations. 임동욱 외 (역) (2011). <디지털 시대와 미디어 공공성 :미디어, 문화, 경제>, 파주: 나남.

Murdock, G. (2005). *Building the digital commons: public broadcasting in the age of the Internet*. Retrieved from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54750526_BUILDING_THE_DIGITAL_COMMONS_PUBLIC_BROADCASTING_IN_THE_AGE_OF_THE_INTERNET.

National Film and Sound Archive Act

NFSA. (2020). *NFSA Collection Policy 2020.*

NFSA. (2022, 11, 25). Retrieved from <https://www.nfsa.gov.au/>

Public Records Acts

Ray Edmondson. (2016). *Audiovisual Archiving: Philosophy and Principles* (Third Edition). Bangkok: UNESCO Bangkok.

Rosemary Bolger. (2019, 7, 14.). The race against the clock to save rare recordings of Indigenous languages. SBS News, Retrieved from <https://www.sbs.com.au/news/the>

-race-against-the-clock-to-save-rare-recordings-of-indigenous-languages?fbclid=IwAR09L-nH_ymDovgHdS3RDbCREhRq4Q6IRwKeG5J7478tUx3-5GWerjZYcf0

Sally Whyte. (2020, 7, 21). 'There's no way we can save it all': National Archives says audio-visual records will be lost. *Tenterfield Star*, Retrieved from https://www.tenterfieldstar.com.au/story/6841386/theres-no-way-we-can-save-it-all-archives-say-records-will-be-lost/?cs=7&fbclid=IwAR3AHEv6gKU8uVQdYoI93JQ9G0emGvvyUOoRn0nSZq7f8bDw_4PT0ivodZk

Steve Evans. (2020, 7, 30). National Film and Sound Archive receives funding to digitise collection. *The Canberra Times*, Retrieved from https://www.canberratimes.com.au/story/6813140/tv-and-radio-treasures-preserved-for-nation/?cs=14264&fbclid=IwAR2VPbbHEegPxOgdBIwrNX_qPVY_7sHVlxRGNv1FeKoUXOH9bID8CpSFG8Q#gsc.tab=0

Strauss, A. & Corbin, J. (1990). *Basic of qualitative research*. 신경림 (역) (1996). <근거이론의 이해>. 한울.

Weglarz, G. (2004). Two worlds of data unstructured and structured. *DM Review*, 14(9).
URL: <https://www.proquest.com/openview/df0b14d6f4fb72fb3f3f3c5ccc053d2e/1?pq-origsite=gscholar&cbl=51938>

저 자 소 개

강 신 규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연구위원
-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박사
- 한양대학교 연극영화학과 학사

최 효 진

- 새공공문화유산정책포럼 상임이사
-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학 박사
- 프랑스 국립시청각연구소 석사
-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학사

이 지 연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장
-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
- 한국외국어대학교 서반아어 학사

김 의 영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차장
- 연세대학교 심리·불어불문학과 학사

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22-27

디지털 방송콘텐츠 아카이브의 단계적 구축방안 및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2022년 12월 31일 인쇄

2022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발행처 방송통신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TEL: 02-2110-1323

Homepage: www.kcc.go.kr
